

2010 청소년상담연구 • 157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개발

책임 연구자 : 배 주 미

공동 연구자 : 정 익 중

김 범 구

김 영 화

청소년상담연구 157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개발

인 쇄 : 2010년 12월

발 행 : 2010년 12월

저 자 : 한국청소년상담원

발 행 인 : 차 정 섭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원

(100-882)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T. (02)2250-3073 / F. (02)2250-3005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아름기획

비매품

ISBN 978-89-8234-467-1 93330

ISBN 978-89-8234-001-7(세트)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개발 / 책임연구자: 배주미 ; 공동연구자: 정익중, 김범구, 김영화. --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원, 2010 p. ; cm. -- ((2010) 청소년상담연구 ; 157)

참고문헌 수록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

ISBN 978-89-8234-467-1 93330 : 비매품

ISBN 978-89-8234-001-7(세트)

청소년 복지[靑少年福祉]

338.5-KDC5

362.7-DDC21

CIP2010004517

간행사

‘출생에서 자립까지’ 장기적 관점으로 청소년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정책적 흐름 속에 청소년 자립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환경적, 심리적 취약성을 지닌 취약 청소년의 경우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만으로는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취약 청소년이 성인기로의 전환에 실패하여 다시 빈곤층으로 전락한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 또한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취약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및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 논의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취약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나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취약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적 정책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원에서는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체계적, 종합적 서비스 모형을 구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국내외의 자립지원 정책, 제도 현황에 대해서 분석, 정리하였으며, 기존에 중요하다고 여겨진 자립지원 서비스 영역과 취약 청소년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후 일반 청소년 및 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생활기술, 진로발달수준, 심리적 특성 등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취약 청소년의 자립준비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센터, 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취약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는 무엇인가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문헌 연구, 청소년 특성조사, 델파이 조사에서 수집된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 구성요소들을 2차의 자문회의를 거쳐 자립지원 모형으로 구상하였습니다. 자립지원 모형의 경우 공통적, 차별적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양육시설·그룹홈·가정위탁 자립지원 모형과 가출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학업중단청소년 자립지원 모형을 각각 제시하였습니다. 각 모형에서는 9가지 자립지원 영역(주거, 일상생활기술 및 건강관리, 심리·정서, 사회성 발달, 학업, 진로(취업), 경제기술, 자원활용, 원가족과의 연계)을 각

서비스 대상에 맞춘 차별적 단계로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자립지원 연구들을 종합하고, 실제 청소년의 특성조사 및 현장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기반을 둔 자립지원 모형 구성요소를 파악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형들은 청소년의 자립이라는 궁극적 목적 달성을 실현하는 데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자립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부디 본 연구가 취약 청소년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작은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연구를 수고를 아끼지 않은 본원의 배주미 박사, 이화여자대학교의 정익중 교수, 본원의 김범구, 김영화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서울시대안교육지원센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전국 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그룹홈, 쉼터, 대안학교,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협력해 주시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아낌없이 제안해주신 학계, 현장전문가와 자문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전합니다.

2010년 12월

원 장 차 정 섭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초 록

청소년의 문제를 전생애적인 장기적 관점 하에서 다루고자 하는 청소년 정책의 흐름 속에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자립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적, 환경적 취약성이 이러한 자립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취약 청소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립지원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취약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체계적 자립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을 제안하였다. 특히 기존의 자립지원 정책의 주요한 정책적 대상으로 여겨지던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청소년과 더불어 유사한 환경적, 심리적 취약성을 지닌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또한 취약 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통적, 차별적 서비스 모형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국내의 자립지원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고, 취약 청소년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문헌 조사를 하였다. 또한 취약 청소년 대상의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자립생활기술 및 진로발달수준, 심리적 특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자립지원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자립지원 서비스의 구성요소를 도출해내었다. 문헌연구, 특성조사, 델파이 조사에서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립지원 모형 초안을 개발한 뒤, 2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모형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대상 특성조사에는 인문계·전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631명과 취약 청소년 580명이 참여하였으며, 자립생활기술, 진로성숙도, 진로장애, 자아존중감, 사회적 낙인, 사회적지지, 청소년 자기행동평가(YSR)의 전체 혹은 부분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실시한 후 일반청소년과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쉼터, 학업중단 청소년을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비교하고,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결과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인문계 고등학생과 양육시설 청소년들이 자립생활 기술 수준, 정서적 안정감, 자아존중감, 진로성숙수준, 사회적지지 영역 등에 있어 다른 집단의 청소년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그룹홈, 가정위탁 청소년의 경우 정서적 안정감, 자아존중감, 진로성숙수준 및 정보지지 등의 측면에서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낮

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학업중단청소년, 가출청소년이 상대적으로 가장 자립생활기술이 부족하고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부터 다양한 자립기술 훈련이 제공된 양육시설 청소년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립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유사한 발달적 배경을 지녔으나 자립지원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그룹홈, 가정위탁의 경우 양육시설 청소년보다 자립준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자립지원 서비스가 가장 열악한 가출청소년 및 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낮은 자립역량 및 심리적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향후 자립에 있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총 72명의 현장전문가가 참여한 델파이 조사에서는 취약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 14개 항목 75개의 문항의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가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적 측면에 있어 자립지원 정책강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후관리 강화, 자립지원 실무자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자립정착금 지원의 개선, 주거공간 지원 확대와 개선, 법률 및 의료 지원 강화, 친부모 관련 대응 강화 등이 요구되었다. 이와 함께 자립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립준비 프로그램의 체계적 구축 및 운영,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서비스의 강화, 학업지원의 강화, 사회기술 역량 함양, 경제교육 강화 등의 내용이 제안되었다.

문헌연구, 특성조사,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모형의 구성요소를 9가지의 자립지원 서비스 영역과 5단계의 자립지원 단계로 구조화하고, 9가지 영역, 5단계의 기본모형을 근거로 자립지원 대상에 따라 3단계로 축소되는 형태의 차별화된 모형을 구상하였다. 9가지 자립지원 영역은 주거, 일상생활기술 및 건강관리, 심리·정서, 사회성 발달, 학업, 진로(취업), 경제기술, 자원활용, 원가족과의 연계로 구성하였으며, 자립준비 기초단계, 자립준비 심화단계, 생활전환단계, 준독립생활단계, 독립생활단계의 5단계로 각각의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제안하였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서비스 지원이 감소하여,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이고 자기충족적 생활단계에 이르도록 구상하여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집중적·직접적 서비스 제공에서 점차 간헐적·간접적 연계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례관리 모형을 제안하였다.

특성조사, 델파이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양육시설·그룹홈·위탁가정의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전달체계의 중복성 및 유사성으로 인하여 공통적인 단계의 지원이 적용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양육시설·그룹홈·위탁가정 청소년의 자립지원 모형은 하나

의 모형으로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개별적인 모형으로 구상하여 특성조사에서 나타난 심리적, 발달적 취약성에 대한 개별적·맞춤형 지원을 강조하였고, 연령순이 아닌 가출 발생시점 또는 학업중단 시점부터 자립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취약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체계적 방식을 제안하여 공통적인 자립지원 서비스와 차별적인 지원형태 및 단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둘째, 국내외 문헌연구, 다양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조사, 각 대상 청소년들의 특성 조사 등에서 모형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취약 청소년에게 지원되어야 할 9가지 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각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양육시설·그룹홈·가정위탁 청소년에게는 5단계의 지원을, 가출청소년에게는 4단계의 맞춤형 지원을,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는 3단계의 맞춤형 지원을 제안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청소년 특성조사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이들 청소년의 자립을 위하여 안정적인 주거 지원과 심리정서적 지원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즉, 본 연구는 향후 취약 청소년의 자립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객관적 기초 자료와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I.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1
2. 연구 과제3

II. 이론적 배경 | 4

1. 취약 청소년 및 자립지원의 정의4
2. 국내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법규 및 정책, 기관지원 현황5
3. 국외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현황14
4.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선행연구37

III. 연구방법 | 54

1. 연구대상54
2. 연구방법54

IV. 취약 청소년 특성조사 | 58

1. 취약 청소년 특성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58
2. 연구대상58
3. 측정도구60
4. 자료분석66
5. 연구결과67
6. 특성조사 결과 요약 및 논의79



V.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에 대한 현장전문가 의견 조사 | 83

| | |
|----------------------------------|-----|
| 1. 현장전문가 의견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83 |
| 2. 연구대상 | 84 |
| 3. 연구절차 | 85 |
| 4. 자료분석 | 86 |
| 5. 연구결과 | 86 |
| 6. 현장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103 |

VI.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 106

| | |
|--|-----|
| 1. 모형 개발의 절차 | 106 |
| 2.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 107 |
| 3.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개발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128 |

| | |
|------------|-----|
| 참고문헌 | 135 |
|------------|-----|

| | |
|-----------|-----|
| 부 록 | 141 |
|-----------|-----|



| 표

| | |
|------------------------------------|----|
| 표 1. 국내 자립지원 현황(기관별) | 9 |
| 표 2. 미국 자립지원 현황 | 30 |
| 표 3. 영국 자립지원 현황 | 33 |
| 표 4. 독일 자립지원 현황 | 34 |
| 표 5. 일본 자립지원 현황 | 34 |
| 표 6.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영역 | 50 |
| 표 7. 연구대상 집단 별 성별 분포 | 59 |
| 표 8. 연구대상 집단 별 학년 분포 | 59 |
| 표 9. 취약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내용 | 60 |
| 표 10. 자립생활기술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 61 |
| 표 11.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하위요인 | 62 |
| 표 12. 진로성숙도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 64 |
| 표 13. 진로장애검사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 65 |
| 표 14.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 66 |
| 표 15. 자립생활기술의 집단 간 차이 검증표 | 68 |
| 표 16. 자기행동평가 척도의 집단 간 차이 검증표 | 70 |
| 표 17. 자아존중감 검사의 집단 간 차이 검증표 | 71 |
| 표 18. 사회적 낙인 검사의 집단 간 차이 검증표 | 72 |
| 표 19. 진로성숙도 검사의 집단 간 차이 검증표 | 73 |
| 표 20. 진로장애검사의 집단 간 차이 검증표 | 75 |
| 표 21. 사회적지지 검사의 집단 간 차이 검증표 | 77 |
| 표 22. 자립지원 요구조사의 집단 간 차이 검증표 | 78 |
| 표 23. 부정적인 생활사건의 집단 간 차이 검증표 | 79 |
| 표 24. 델파이 참여자 집단 별 분포 | 84 |
| 표 25. 델파이 조사 내용 및 응답률 | 85 |



| | |
|---|-----|
| 표 26.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87 |
| 표 27. 자립지원 정책 강화 | 91 |
| 표 28.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후관리 | 92 |
| 표 29. 자립지원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 93 |
| 표 30. 자립정착금 지원의 개선 | 93 |
| 표 31. 주거공간 지원의 확대 및 개선 | 94 |
| 표 32. 법률, 의료 지원 강화 | 96 |
| 표 33. 친부모 관련 대응 강화 | 96 |
| 표 34. 자립준비 프로그램 체계 구축 및 운영 | 97 |
| 표 35.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 98 |
| 표 36.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서비스 강화 | 99 |
| 표 37. 학업 지원 강화 | 99 |
| 표 38. 사회기술 역량 함양 | 100 |
| 표 39. 경제교육 강화 | 101 |
| 표 40. 직업준비 및 취업지원 시스템 강화 | 102 |
| 표 41. 9가지 자립지원 영역별 목표 및 지원 서비스 | 108 |
| 표 42. 양육시설 · 그룹홈 · 가정위탁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 110 |
| 표 43. 가출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 118 |
| 표 44. 학업중단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 124 |



| 그림

| | |
|---------------------------------------|-----|
| 그림 1. 연구절차 모형 | 55 |
| 그림 2. 모형 개발의 절차 | 106 |
| 그림 3. 양육시설·그룹홈·가정위탁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 109 |
| 그림 4. 가출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 117 |
| 그림 5. 학업중단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 124 |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출생에서 자립까지’ 청소년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전연령 단계에서 다음 연령까지 정책효과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다음 세대를 이어받아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문제는 그 연속선상에서 논의되고 정책이 정립되어야 하며, 특히 그 관심 영역이 청소년기의 문제로 끝나기 보다는 이들이 무사히 ‘건전한 성인기’로 이행되어 가느냐의 ‘자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청소년의 건전한 성인기로의 이행 및 ‘자립’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시사되는 대상은 그들의 개인적, 환경적 취약성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발달과정만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취약 청소년’들로 보여진다. 즉,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을 비롯하여,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가출청소년 등의 취약계층 청소년들은 학업부족·심리적 문제 및 지원체계 등의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고통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시사된다. 따라서 이들 취약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이행하기 위해 이들의 자립준비를 할 수 있는 전문적 도움이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신혜령, 2001).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가출 및 노숙청소년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of 2008), 위탁보호자립지원법(Foster Care Independence Act of 1999), 학교-직업 이행 기회법(School-to-Work Opportunities Act of 1994),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of 1998) 등의 법령 하에 전환생활프로젝트(Transitional Living Project)나 교육훈련바우처(Educational Training Voucher), 유스빌드(Youth Build), 잡코프스(Job Corps)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이 실행되고 자리를 잡아오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이들 취약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서적, 교육적, 경제적 및 주거지원을 대상의 특성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 청소년들이 그들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건전한 성인기로 순탄하게 이행하여 자립을 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이들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등에 이러한 청소년 자립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청소년, 가출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디딤씨앗통장 등의 경제지원, 자립지원시설을 통한 주거지원이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 노동부의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서비스 등을 통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등도 최근 시작되고 있다. 또한 자립지원준비를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두드림존 프로그램’도 효과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의 자립지원은 아직은 다양한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표준 없이 각 시설별로 임의지원 되고 있으며, 이러한 임의지원 또한 매우 제한적이고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이들 취약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 모색조차도 부족하여 이들 청소년의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도 몇 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이와 관련된 통합적인 정책 및 지원체계가 미약한 상황이다. 즉, 신혜령, 박은미, 강현아, 이현주, 한규제, 김경희(2008)에 의해 시설보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지원 연구와 이로 인한 이들 청소년에 대한 지원모색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그 외의 그룹홈 및 위탁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체계도 부족하고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모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외에도 실제 자립에 어려움을 겪게 될 취약 청소년에는 학업중단청소년, 가출청소년 및 저소득의 청소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체계도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취약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즉, 시설보호청소년을 중심으로 마련되기 시작한 이들 청소년의 자립지원방안을 기초로 하여 가출청소년과 학업중단청소년 등의 취약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자 한다. 가출청소년은 가정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학교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청소년과 같이 자립에 있어 취약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들의 발달적, 성격적 특성은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청소년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차별적인 개입과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취약 청소년에게 지원될 수 있는 지원들의 공통적이고 차별적인 지원 내용 및 인프라, 서비스 내용의 자립지원 모형을 구상해보고자 한다.

2. 연구 과제

첫째, 양육시설청소년 뿐 아니라 그룹홈,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쉼터의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과 같은 취약 청소년들의 특성에 따른 공통적이고 차별적인 자립지원 내용을 모색하고, 이러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상한다.

둘째, 취약 청소년의 자립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취약 청소년 및 자립지원의 정의

가. 취약 청소년의 정의

최근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주제는 이론과 연구, 실무영역에서 주요한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엄밀한 의미에서 학문적 용어로 개념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취약성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혹은 발달단계에 장기간 또는 일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개인이나 가족, 사회적 수준에서 나타내는 부정적 특성을 의미하며(이인숙, 2004), 취약계층(disadvantaged class)이란 연령, 성, 인종 등 인구학적 사회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말한다(Aday, 1993).

취약 청소년의 지원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취약 청소년에 대해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있는 사례는 극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로서의 취약 청소년(disadvantaged youth)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위탁보호청소년, 모국어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청소년, 노숙 또는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한 청소년, 범죄·비행청소년, 장애를 가진 청소년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The Serve America Act of 2009).

나. 자립지원의 정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소극적인 현금지원 정책에서 적극적인 자립지원으로 변화함에 따라 정책 및 연구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립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섬”으로 그 의미에서 자율성,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Maluccio(1990)는 자립(self-reliance)을 자기충족(self-sufficiency)적이고 독립(independent living)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 자기충족은 외부의 도움이나 협조 없이 자기 스스로 충족한 상태임을 의미하며(Zimmerman, 1982; Touchton-Cashwell, 1999),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심리적인 욕구의 충족을 포함한다. 독립적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 영역에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신혜령, 2001).

자립이란 남에게 의지하지도 않으며 자기 힘으로 독립하여 정당한 지위에 서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취약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이란 자신에게 편안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속의 의미 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연계를 가지는 자기충족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청소년을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이때의 자립은 ‘개별적 독립’이라는 의미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와 지역사회 자원을 잘 활용하여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경제적 독립상태를 의미한다(신혜령, 2001).

2. 국내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법규 및 정책, 기관지원 현황

가.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관련 법 현황

국내에서 취약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규정한 법률로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이 있으나, 이들 법규에서 제시된 내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들 법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복지법 제 16조

아동복지법 제 16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서는 자립지원시설의 목적을 언급함으로써 이들 시설이 아동의 자립을 지원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자립지원시설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명시하고 있다.

2) 청소년기본법 제 46조

청소년기본법 내에서는 제 46조(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설치)의 1항의 “시·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및 시행령 제 33조(시·도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 기관의 기능 등)의 6호에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이 자립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3)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 14조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제 14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에서 “중장기적으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복지시설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자립과 관련해서는 각 기관의 자립에 관련된 부분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을뿐 지원내용 및 의무적인 자립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초·중등교육법 제 60조

학업중단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2004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업중단청소년들의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제 60조의3(대안학교)의 법령에서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대안학교를 규정하여 대안학교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대안학교 내의 교육과정에서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나.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관련기관

국내의 자립지원 관련 기관은 현재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최근, 시설보호 청소년, 가출청소년 및 학업중단청소년 등을 위해 자립관련 지원을 신설 하거나,

강화 혹은 확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청소년 그룹홈, 중장기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1).

1) 아동양육시설

아동양육시설은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육성을 목적으로 전국 242개의 아동양육시설이 운영 중이며 자립전담요원 및 자립지원센터 등에서 자립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시설 입소부터 아동자립지원을 위한 아동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돈관리기술, 사회적기술, 직업찾기, 직장생활, 다시 집 떠나기 등 8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 자립지원센터

자립지원센터는 아동복지시설¹⁾ 및 퇴소아동의 취업, 주거, 진학지원 및 의료, 생활상담 등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시설 내 청소년들의 자립준비 계획 및 퇴소아동의 초기 안정적인 사회적응내 자립지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포함 16개 자립지원센터가 있다. 자립지원센터는 퇴소를 앞둔 고3 재학생내 퇴소아동에게 취업알선, 대학진학 상담, 자격증 취득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 자립을 유도하고자 한다.

3) 가정위탁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위탁보호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관으로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의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인에 의한 일반 가정위탁으로

1) 아동복지법 제 16조에 제시된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말한다.

나눌 수 있다. 아동양육가정은 11,622개가 운영 중이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16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다.

4) 청소년그룹홈

청소년그룹홈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아동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개별화된 236개의 청소년그룹홈이 운영중이다. 그룹홈에서는 보호하는 청소년의 개별적인 잠재능력과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별적인 자립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보호 양육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의 개별적 자립계획수립이 요구된다.

5)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는 2년내외의 중장기보호를 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를 위한 자립을 지원하며, 단기쉼터에서 안정화되어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청소년 쉼터의 경우 26개가 운영 중이다. 중장기쉼터에서는 가정이 없거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출청소년 중 자립의 의지와 동기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식주 생활관리, 경제생활관리, 건강관리, 문화체험활동, 직업지원 서비스, 학업지원 서비스 등 자립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시도하고 있다.

6)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담 및 복지지원”을 지원하며, 두드림존, 학습능력향상, 해밀센터 운영 등 학업중단청소년을 진학·학습지속 등의 사회와의 지속적인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두드림존은 위기청소년의 자립준비를 위한 체험중심적 토달자활지원 프로그램을 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직업생활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와 기초지식을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사회진출에 대한 자신감 향상을 지원하고자 한다.

표 1. 국내 자립지원 현황(기관별)

| 기관 | 지원사업 | 목적 | 관련 법안 | 지원내용 | 운영방식 | 비고 |
|------------------|--------------------------------------|---|----------|---|---|-------------------|
| 아동 양육시설 | ① 디딤씨앗통장(CDA) | ①사회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 아동복지법 | ①매칭펀드를 통한 경제지원 (0세17세까지) | ①보호이동적립+국가적립 등 매칭펀드⇒퇴소시, 제공 | ①정책 |
| | ②아동자립지원센터 | ②퇴소아동의 건강한 자립 | | ②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취업지원, 주거지원, 진학 및 학업지원, 생활상담 등 전문적 복지서비스 지원 | ②전국 16개 광역시도 자립지원센터 운영 | ②정책 |
| | ③시설퇴소아동 레관리 | ③퇴소아동의 지지환경 조성 | | ③퇴소아동의 지속적 사례관리 | ③시설에서 DB입력후, 퇴소아동의 5년간 사례관리 DB구축 | ③정책 |
| | ④자립준비프로그램 | ④자립능력향상 지원 | | 리 | ④아동발달에 따라(미취학, 초, 중, 고, 대학)자립준비프로그램 운영 | ④프로그램 |
| | ⑤자립정착금 | ⑤자립에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용 지원 | | ④자립기술 평가 및 자립준비 프로그램 제공 | | ⑤정책 |
| | ⑥주거지원 강화 | ⑥퇴소후, 주거지원 강화 | | ⑤퇴소에 따른 현금지원 ⑥전세자금 대출 및 공동임대 주택, 국민주택전세 등 우선권 부여 | ⑤퇴소에 따른 일시자금 또는 단계별지원 | ⑥정책 |
| 가정 위탁지원 센터 | ①사회적응자립지원비 ②주거지원 강화 ③사회적응자립지원비 | ①사회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②퇴소후, 주거지원 강화 | 아동복지법 | ①매칭펀드를 통한 경제지원 (0세17세까지) ②전세자금 대출 및 공동임대 주택, 국민주택전세 등 우선권 부여 | ①보호이동적립+국가적립 등 매칭펀드⇒퇴소시, 제공 ②지자체에 신청·선정 ③지자체에 신청·선정 | ①정책 ②정책 ③정책 |

| | | | | | |
|----------|--|---|--|---|------------------------------|
| | ③자립에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용 지원 | ③재원기준에서 탈퇴(학교졸업)되는 아동에게 1회 한하여 1,000,000원 | | | 구체적 운영사업 및 프로그램 결여 |
| 기출 청소년센터 | ①사회복귀를 위한 자립 | 청소년 복지 지원법 | 숙식제공, 선도, 수련활동, 학업 및 직업훈련 | 개별센터에 따라 상이 | |
| | ① 디딤씨앗통장(CDA) ②주거지원 강화 | 이동 복지법 | ①매칭펀드를 통한 경제지원(0세17세까지) ②전세자금 대출 및 공동임대 주택, 국민주택전세 등 우선권 부여 | ①보호아동적립+국가적립 등 매칭펀드⇒퇴소시, 제공 ②전세자금 대출 및 공동임대 주택, 국민주택전세 등 우선권 부여 | ①정책 ②정책 |
| 청소년 그룹홈 | ①사회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②퇴소후, 주거지원 강화 | 청소년 복지법 | 이동 복지법 | ①보호아동적립+국가적립 등 매칭펀드⇒퇴소시, 제공 ②전세자금 대출 및 공동임대 주택, 국민주택전세 등 우선권 부여 | ①정책 ②정책 |
| | ①해밀센터 ②두드림존 ③청소년동반자 ④특별지원청소년지원 | 청소년 복지법 | 학업중단청소년의 진학, 복교 및 정서지원 등 | ①학습(검정고시)지원 ②두드림존 운영선정을 통한 자립지원프로그램 및 서비스 강화 ③찾아가는 동반자로서의 역할 ④특별지원청소년 선정 | ①프로그램 ②프로그램 ③정책 ④정책 |
| 학업중단 | ①학업지속 기회제공 ②자립동기화 향상 ③위기청소년사례관리 및 지역내 지원 연계 ④건강법률·학업 등의 특별지원을 통한 보호 | 청소년 복지법 | 학업중단청소년의 진학, 복교 및 정서지원 등 | ①학습(검정고시)지원 ②두드림존 운영선정을 통한 자립지원프로그램 및 서비스 강화 ③찾아가는 동반자로서의 역할 ④특별지원청소년 선정 | ①프로그램 ②프로그램 ③정책 ④정책 |

다.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 내용

취약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서비스 내용을 자립지원과 관련된 영역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1) 경제지원 : 디딤씨앗통장, 자립정착금

경제지원을 살펴보면 디딤씨앗통장(CDA) 및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가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사회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방식으로는 보호아동이 3만원 이내의 비용을 적립하면 국가에서 동일비용을 매칭으로 적립하여 퇴소시 제공하는 지원이며, 자립정착금은 지자체에 이양된 사업으로 지자체에 따라 퇴소에 따른 자립지원금을 일시지급 또는 단계별 지원을 제공한다.

2) 주거지원 : 자립지원시설, 전세주택 자금 지원, 임대주택 지원

주거지원을 살펴보면 자립지원시설 제공, 전세주택 지원의 서비스가 있다.

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 중인 또는 취업준비 중인 아동에게 주거 및 생활지원을 하며 전국에 12개가 운영 중이다. 전세주택 지원은 퇴소청소년들에게 전세비용의 지원을 통해 25세까지 주거지원을 하며, 영구임대주택 및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주거지원이 추진될 예정이다.

3) 교육지원 : 대학입학 장학금 지원

교육지원을 살펴보면 대학 입학 시 장학금 지원의 혜택이 있다. 대학입학 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대학등록금 및 입학금 등을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이 있으며 또한,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 포스코 청암재단 등 민간기업 장학재단과의 연계를 통한 장학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4) 직업 지원 : SK 해피스쿨,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직업 지원을 살펴보면 민간단체·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한 “SK해피스쿨”, 고용노동부의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등의 서비스가 있다. SK해피스쿨은 자동차 정비, 뮤지컬, 요리사의 특화된 3가지 직업에 대해 교육, 인턴십, 대학교, 취업지원 등의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뉴스타트 프로젝트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진로지도에서 취업 지원까지 개인별 종합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설계 능력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개인상담, 집단지도 및 취업알선, 참여지원금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상담의 경우 ‘나의 이해’, ‘개별구직목표수립’, ‘직업가치형성’, ‘개별구직역량강화’ 등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집단지도는 약3일간의 과정으로 나에게 적합한 일 찾기와 가치관 정립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자립준비 지원 : 자립준비 프로그램, 두드림 존

자립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의 “자립준비 프로그램”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두드림존”을 대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립준비프로그램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초·중·고 학급대상별로 자립시 필요한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지역사회 자원활용기술 등 8개의 소영역 및 20개의 세부영역으로 이를 나누어 자립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두드림존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3단계 걸쳐 이루어지며, 자립동기화 교육프로그램, 직업체험·경제체험 등의 체험프로그램, 복교·검정고시·취업 등 사회진출을 위한 사회진출 지원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년 기준 30개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라. 국내 자립지원 현황 요약 및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국내 취약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서비스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아동양육시설은 디딤씨앗통장, 자립정착금 등 경제적 지원 및 전문적 자립지원서

비스를 위한 자립지원센터 운영, 퇴소아동 사례관리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아동발달에 따라 자립준비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 및 전문적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위탁은 위탁가정의 아동보호자를 지원하는 지침은 있으나, 위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다수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지 않고, 친척 및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의 특성상 문제일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만 18세 이상이 되면 가정위탁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바, 보호자 대상 자립지원 교육 등 가정위탁 대상 종합적인 자립지원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출청소년쉼터의 자립지원서비스는 단기쉼터보다는 중장기쉼터에 자립지원에 대한 지원이 초점화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자립지원서비스에 내용보다는 자립에 있어 필요한 다양한 사회진출 관련 기술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공적서비스의 지원에 있어서도 다른 자립지원대상보다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개별쉼터에 역량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그룹홈의 자립지원서비스는 종사자(시설장 1인 및 보육사 1인 배치)의 부족으로 인해 자립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양한 연령층이 생활하고 있는 그룹홈의 특성상 자립준비가 필요한 대상을 별도로 선별하여 자립지원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청소년의 자립지원서비스는 명확한 지원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자립준비에 관련된 지원 중 일부서비스만 지원이 되고 있다. 두드림존의 확대(30개소) 및 해밀센터 운영이 주된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서비스로 활용이 되고 있으나, 보다 체계화하여 운영되어 실질적인 자립지원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자립지원 대상 및 기관별로 자립지원서비스가 차등화되어, 취약계층 청소년이라도 어느 기관에서 서비스를 지원받느냐에 따라, 자립지원 서비스에 대한 양질의 차이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최소한 동일한 자립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자립준비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자립준비 프로그램 지원 및 퇴소후 현장성을 적용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예비퇴소자 대상으로 1개월간 성인생활 준비를 위한 시설(Preparation For Adult Living Settings) 운영을 통해 자립준비지원에 있어 수월성을 강화하는 자립지원사업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국외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현황

가. 미국의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관련 법규, 정책, 프로그램 현황

1) 미국의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관련 법규

미국의 경우 취약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단일한 기구가 있기보다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가 각 부서가 담당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관련된 다양한 법안을 집행하고 있다.

(1) 가출청소년 및 노숙청소년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of 2008: RHYA)

가출청소년과 노숙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RHYA 법안은 미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의 가족 및 청소년서비스국(The 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 소관이다. 이 법안은 가출청소년 및 노숙청소년의 착취를 방지하고, 청소년들을 가족, 학교, 직업, 주거에 복귀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서비스 수급대상자의 연령을 기존 16세 이하의 청소년에서 변경 후 21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연장하였다. RHYA는 기초지원 프로그램(The Basic Center Program), 전환생활 프로그램(the Transitional Living Program), 거리 아웃리치 프로그램(The Street Outreach Program)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전환생활 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은 가출 및 노숙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 기초지원 프로그램(The Basic Center Program): 가출, 노숙 청소년의 즉각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응급쉼터, 가정복귀 지원, 식사 및 의류 제공, 상담, 건강관리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 전환생활 프로그램(The Transitional Living Program): 16세에서 21세까지의 가출, 노숙청소년들에게 최장 21개월까지 장기적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
- 거리 아웃리치 프로그램(The Street Outreach Program): 청소년 개인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의 아웃리치 활동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

미 의회는 2008년 이 법안을 개정하여, 가출 및 노숙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정을 확충하고, 서비스의 기간을 연장시켰으며 프로그램 수행에 대한 점검을 강조하였다. 2009년 미 정부는 RHYA 법안의 시행을 위하여 11,700만 달러의 예산을 할당하였으며,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초지원 프로그램은 15,000만달러까지, 거리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3,000만달러까지 재정적인 지원의 승인을 증가시킴.
- 인구가 적은 주에 대한 보조금을 5만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증가시킴.
- 노숙청소년 숫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에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구함.
- 미국연방회계감시원(Government Accounting Office)이 정책의 적용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을 추가
- 쉼터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14일에서 21일로 연장하고, 전환주거 프로그램(Transitional Housing Program)의 기간을 18개월에서 21개월로 연장.
- HHS가 RHYA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와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성과 지표(performance standard)' 제작 요청
- 재정지원을 받은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의 관점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검토하도록 HHS에 요청

(2) 위탁보호자립지원법(Foster Care Independence Act of 1999)

미국의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시스템이 시설중심에서 위탁가정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위탁가정을 떠나는 청소년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한 필요성 역시 증가하였다. 이에 위탁가정을 떠나는 청소년의 자립과 성인기로의 이행을 조력하기 위하여 위탁보호 자립지원법(Foster Care Independence Act)이 제정되었다. 위탁보호 자립지원법(Foster Care Independence Act)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위탁가정청소년들에게 자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Chafee 위탁보호 자립지원 프로그램(the Chafee Foster Carer Independence Program)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자립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에 따라 위탁가정을 떠나는 청소년에게 교육, 가사, 생활기술, 기타 지원영역에 있어 강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3) 학교-직업 이행 기회법(School-to-Work Opportunities Act of 1994)

학교-직업 이행 기회법(School-to-Work Opportunities Act)은 정규교육에서 직업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공공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을 위하여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학교에서의 직업교육 체제 정비와 직업교육내용의 질적 향상, 학교-기업 간의 협동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학교교육에서의 직업능력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교-직업 이행 기회법 학교교육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취약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초 제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4) 인력 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of 1998: WIA)

인력 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은 국가의 직업 훈련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모든 시민에게 고품질의 직업훈련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특히 저소득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지원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WIA는 잡 콕스(Job Corps) 프로그램 등 저소득층 청소년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재정적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취약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노동부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이 법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미국의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미국 내 연방정부의 법안에 기반을 둔 정책 및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전환생활 프로젝트(Transitional Living Project: TLP)

관련법령: 가출청소년 및 노숙청소년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of 2008)

TLP는 가출 및 노숙청소년의 장기적인 독립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TLP는 단기적이고 귀가목적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출 및 노숙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진다. TLP에 따라 가출 및 노숙청소년들은 기관실무자가 지도, 감독 하에 최대 21개월(기존 18개월에서 21개월로 2008년도 개정)까지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다. 거주기간동안 자립을 위한 생활기술습득, 직업훈련 및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청

소년이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교육 훈련 바우처(Educational Training Voucher: ETV)

관련법령: 위탁보호자립지원법(Foster Care Independence Act of 1999)

교육 훈련 바우처(Educational Training Voucher)는 독립생활 프로그램(Independent Living Program)의 하나로서 위탁보호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에게 고등교육 또는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위탁가정 출신의 청소년들은 1년에 5000달러까지 대학교육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21세까지 의료보호 혜택이 보장되기 때문에, 성인기 이행 이전에 필요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문가에 의한 개인별 자립준비사정과 사례계획서비스 등의 자립준비프로그램이 법제화되어 있으며, 취업교육과 직업 훈련, 대학진학준비, 일상생활기술훈련, 약물남용 예방훈련, 혼전임신 예방훈련, 예방적 보건활동, 후견인과의 교류 등의 프로그램이 지원 된다. 지방정부는 주정부에서 주어지는 예산 중 일부(최대 30%까지)를 위탁가정 청소년의 주거 및 식비 지원에 쓸 수 있어, 위탁가정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거 및 식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3) 유스빌드(YouthBuild)

관련법령: 인력 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WIA)

유스빌드(YouthBuild)는 청소년 문제와 저소득지역의 주거, 교육, 취업, 범죄 예방, 리더십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6세에서 24세까지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학위취득, 구직 기술 훈련, 주택 건설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 사회적 역할 인식 등에 참여하게 된다. 1990년도부터 시작되어 22개주, 45개의 유스빌드 프로그램에 매년 1700명 이상의 저소득층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유스빌드에 참여한 학생 중 90%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학업중단청소년이다. 900여명의 유스빌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유스빌드를 수료한 학생 중 75%는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하거나, 평균 시급 10달러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스빌드 참여자들은 건설 현장과 대안 학교로 구성되어 있는 전일제 프로그램에 6개월에서 24개월가량 참여한다. 유스빌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 대안학교: 참여자들은 검정고시(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GED) 또는 고등학교 학위취득을 위해 격주로 전일 수업에 참여한다. 수업은 작은 규모의 일대일 지도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노숙자 및 저소득 계층을 위해 집을 건설한다.
- 직업 훈련 및 견습 프로그램: 자격을 갖춘 강사로부터 격주로 건설 기술 훈련을 받는다.
- 리더십 개발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 청소년들은 자치회 선출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 개인 상담, 또래지지집단, 인생설계 과정을 통해 과거의 상처, 부정적 습관 및 태도를 개선하고 생산적인 인생을 위해 달성가능한 목표를 추구한다.
- 장기간의 소규모 공동체: 긍정적인 생활, 문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 유스빌드 동문회를 통해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참여를 할 수 있다.
-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조직은 거주자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교육하고 동기화하며, 범죄를 방지한다. 이를 통해 미래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키우도록 하는 다양한 자원을 발전시킨다. 유스빌드의 주재정원은 연방정부 노동부의 지원이며, 각각의 유스빌드 프로그램은 민간 및 공공기금의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참여자당 평균비용은 다른 미취업 청소년들을 위한 풀타임 프로그램(군대, 잡 콕스, 소년원, 대학 등)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4) 잡 콕스(Job Corps)

관련법령: 인력 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WIA)

잡 콕스는 위기청소년의 진로발달 및 취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16세~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잡 콕스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취업,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2009년도 통계에 의하면 매년 6만명 정도의 청소년이 잡 콕스에 참여하였으며, 거주기간은 평균 8개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잡 콕스 프로그램은 아웃리치와 등록(Outreach and admission), 진로준비기간(Career preparation period), 진로발달

기간(Career development period), 직업전환기간(Career transition period)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3) 미국의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관련 프로그램 현황

주정부나, 자치구(County)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사례는 위탁가정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생활기술훈련 중심 프로그램(예, PAYA, LST)과 학업중단청소년의 학위취득 및 학업기술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예, CEPS), 학업중단청소년의 직업훈련 및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예, YO!)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성인기 준비 프로그램(Preparing Adolescents for Young Adulthood: PAYA, 메사추세츠)

메사추세츠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PAYA는 위탁가정 청소년들에게 자립에 필요한 생활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AYA는 일상생활기술을 훈련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은 5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 1) 경제, 주거, 식생활 관리
- 2) 자기관리, 건강, 안전, 의사결정
- 3) 교육, 구직, 직업 유지
- 4) 주택, 교통, 지역사회자원, 법과 여가
- 5) 부모교육: 성, 출산, 의사결정, 임신, 아동발달, 아동안전, 건강관리, 교육 및 진로설계 등

(2) 일상생활훈련 프로그램(Life Skills Training Program: LST, 로스앤젤레스)
지역대학과 주정부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LST이다. 로스앤젤레스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LST는 16세에서 21세까지의 위탁가정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자립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획득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LST의 특징은 ①튜터링·멘토링 프로그램과 교실에서의 생활기술훈련을 함께 제공, ②광범위한 outreach, ③지역대학 안에서 개별화된 교육, 훈련,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위탁양육에서 독립적인 생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로스앤젤레스의 19개 지역대학에서 5주 동안 이루어지는 생활기술 교육은 주 2회 3시간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기술교육은 7가지 역량 개발을 목표로 하여, 교육(education), 취업(employment), 일상생활기술(daily living skills), 생존기술(survival skills), 선택과 결과(choices and consequences), 대인/사회성 기술(interpersonal/social skills), 컴퓨터/인터넷 기술(computer/Internet skills)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술 향상을 평가하기 위한 사전/사후 진단이 제공된다.

LST는 20명의 풀타임, 파트타임 스텝이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청소년을 리크루팅하면서 시작되며, 아웃리치 지도자(Outreach Advisors: OA)는 청소년을 유치하고, 단기사례관리와 서류서비스, 평가(Ansell-casey assessment tool 사용)를 제공한다. OA는 멘토이자 역할모델이 됨과 동시에,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연결되도록 조력하는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최근 실험설계 방법을 이용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평가가 중요해지고 있어 연방 정부의 지원 하에 실험설계와 패널 조사 방법을 활용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평가가 LST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3) 성공에 이르는 지역사회 교육(Community Education Pathway to Success: CEPS, 뉴욕)

CEPS는 고등학교 학위취득, 학업기술훈련 등 학업중단청소년들에 대한 학업 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CEPS는 2005년부터 뉴욕시의 청소년발전위원회>Youth Development Institute)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뉴욕의 Bronx, Manhattan, Brooklyn의 10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CEPS는 부족한 읽기 능력·수학 능력을 가졌으나, 고등학교 학위취득에 관심 있는 16세에서 24세까지의 학업중단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 발달, 사회적 지지, 진로관련 서비스의 통합을 추구한다. CEPS 모델에서는 지역사회기반의 조직과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참여자들이 교육을 완수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을 구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이 강조된다.

-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이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에 들어가는 것.

- 교수 방법, 교육과정: 교육철학에 기초한 명료하고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
- 학생 개인별 지도 전략과 사회적 지지: 개별적인 자원, 장애물, 이에 대한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 진로발달: 미래의 흥미와 대안에 대해 탐색하고, 직업 경험을 제공
- 서비스에 있어 팀 접근: 수퍼바이저, 지도자, 지원 스텝 모두가 학생의 성장을 이해하고, 한 방향으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협동
- 조직적 몰입: 효과를 나타내고 유지하기 위한 리더십

2007년에서 2008년에는 443명이 CEPS에 참여하였으며, 읽기능력과 수학능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 볼티모어의 YO 프로그램(Baltimore Youth Opportunities Program: YO! 볼티모어)

볼티모어의 YO 프로그램은 학업중단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취업,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YO 프로그램은 노동부의 청소년기회자금(Youth Opportunity Grant)에 의해 1999년 시작되었다. 2006년 청소년기회자금(Youth Opportunity Grant) 재정이 만료되었으나, 볼티모어시에서 YO 프로그램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만큼 학업중단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업 및 교육 지원에 있어 성공적인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YO 프로그램의 대상은 장기취업이 필요한 16세에서 22세까지의 학업중단 취약계층 청소년이다.

YO 프로그램의 특징은 ①직업기술 훈련과 일중심학습의 혼합, ②직업연결(Career Connections)을 통해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 ③개인별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하여 다양한 자원과 활동을 조정하여 제시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취업,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목적으로 하면서 장기간동안 직업연결(Career Connections)의 추수지도가 이루어진다.

YO 프로그램에서는 직업멘토(Employment Advocate)가 각 청소년들에게 연결되고, 각자에게 최적의 교육, 직업, 개인적 지원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해 함께 작업하게 된다. 매주 배운 생활기술은 직업경험, 인턴십을 통해 적용가능하고, 직업경험은 다시 생활기술 수업의 자료로 활용된다. 컴퓨터 수리, 건설, 의료기술자 등과 같은 직업 기술 훈련이 제공되며, 청소년은 주별 30시간의 유급 직업 경험을 가진다.

사례관리자(Case Manager)는 일주일에 여러 번 직장에 방문해서 어떤 기본적인 기술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고, 참여자에게 필요한 기술에 대한 튜터링을 제공한다. 그 결과 직장에서 청소년이 직면한 실제 상황에 따라 생활기술훈련과정의 지속적으로 수정된다. 이러한 생활기술의 학습과, 직업경험을 통한 현장실습의 상호보완적 시스템이 YO가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는 주요요인으로 여겨진다.

나. 영국의 취약아동 청소년 자립지원 관련 법규, 정책, 프로그램 현황

1) 영국의 자립지원관련 법 현황

(1) 아동위탁보호법(Children Leaving Care Act)

2000년에 아동법(Children Act)의 일부가 개정된 아동위탁보호법(Children Leaving Care Act)은 지방정부의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고통과 위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16세에서 17세 청소년뿐만 아니라 18세에서 21세까지 보호관리가 필요한 청소년을 접촉할 의무를 지닌다. 특히 위기청소년의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교육·훈련·경력 계획수립과 재정지원 등을 포함하는 진로계획(Pathway Plan)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상담자를 두어야한다. 또한 19세 이상 21세 이하의 청소년의 취업을 지원해야 하며, 21세가 넘는다 할지라도 교육과 훈련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2) 영국의 자립지원관련 정책 및 제도

(1) 커넥션즈(Connexions)

커넥션즈는 영국의 대표적인 청소년 통합 지원 시스템으로, “청소년이 충분히 알고 선택(informed choices)하고 성인기로 원활히 전환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밝혀 다양한 청소년서비스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건강한 자립과 성인기로의 이행이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부처 간 통합 커넥션즈 서비스(Cross-Departmental Connexions Service National Unit: CSNU)는 정부의 관련 부처 및 민간 센터가 참여하는 통합적인 청소년 지원 시스템으로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다. 잉글랜드 내의 12개 지역별로 센터를 두고 교육, 일, 훈련, 진로, 권리, 약물, 평등, 주택, 여가, 돈 문제, 관계, 성, 건강, 법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CSNU는 지역의 협력단체(Partnership)와 청소년 지원 서비스 전달에 대한 계약을 맺어, 지역의 협력단체를 통해 질 높은 청소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다수의 개인지도자(PA: Personal Advisor)들을 양성하고 이들 간의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PA들은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한다. PA들은 예산관리(Budget Holding Lead Professional: BHLP)에 따라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재량껏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NEET 청소년에게 직업 매칭 서비스와 함께 멘토링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한다.

3) 영국의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관련 프로그램 현황

영국의 지역정부에서는 아동위탁보호법(Children Leaving Care Act)을 바탕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와 웨스트민스터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위탁보호 퇴소청소년 서비스(Young People Leaving Care Service)를 중심으로 영국에서 자립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스코틀랜드의 위탁보호 퇴소청소년 서비스(Young People Leaving Care in Scotland²⁾)

지방정부는 청소년에게 양육 및 보호 서비스가 끝나는 시점을 대비하는 시설기간 동안의 관리(throughcare)와 양육 및 보호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 조언, 지도, 조력을 제공하는 사후관리(aftercare) 모두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2) www.schotland.gov.uk/consultations/health/syplc.pdf

- 요구진단(Needs Assessment): 우선 양육 및 보호서비스가 종료되기 이전에 자립을 위하여 어떠한 조력, 지원이 제공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요구 진단이 이루어진다. 요구진단에서는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상태, 교육, 훈련, 취업에 대한 요구, 돌봄과 지원에 대한 요구, 주거에 대한 요구, 경제적 요구, 독립생활을 위한 실제적인 기술과 과정을 필요로 하는 정도, 활용가능한 가족이나 친구의 지원 정도 등을 분석한다. 지방정부는 청소년이 진단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력해야한다.
- 진로계획(Pathway Plan): 진로계획은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포부와 이를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이며, 청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미래에 대해 명료화할 수 있도록 격려 받고, 지도받는다. 진로계획은 요구 진단이 종료된 후 14일 안에 이루어진다. 진로계획은 요구진단의 결과, 청소년의 희망과 포부에 대한 진술, 누구에 의해 어떤 개인적 지원이 제공될 것인가에 대한 계약,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실제적 기술 개발 프로그램, 어떤 기관이 청소년의 취업을 지원할 것인가를 포함한 교육과 훈련에 관한 상세한 계획, 특히 주거 및 숙소와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제공될 재정 지원, 심리적 건강을 포함한 건강 관리, 적절한 가족 및 사회적 관계들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청소년이 지낼 숙소에 대한 상세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 진로계획의 수정(Review of the Pathway Plan): 청소년의 기대와 상황은 빠르게 변화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 담당기관은 청소년의 요구, 라이프 코치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계획을 수정하거나, 최소한 매 6개월마다 계획을 수정한다. 진로계획의 수정에서는 이전의 목적과 지향점이 여전히 적절하며, 청소년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거나 청소년이 이전에 이룬 성취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다.
- 라이프코치(Life Coach): 진로계획에 따라 청소년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고,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라이프코치가 배정된다. 라이프코치는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고, 진로계획의 진단과 준비, 진로계획의 수정에 참여하며, 진로계획의 실행에 대해 담당기관과 연락을 취하고,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조정하며, 청소년의 웰빙과 발전에 대한 최신정보를 유지하고, 청소년이 맺은 계약에 대한 모든 문서를 보관한다.

(2) 웨스트민스터시의 위탁보호 퇴소청소년 서비스(Young People Leaving Care Service in Westminster)

웨스트민스터시의 퇴소청소년 서비스(Leaving Care Service)는 웨스트민스터시의 보호를 받는 15세에서 18세까지의 아동, 그리고 관리시스템을 떠난 18세에서 21세까지의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청소년의 독립적인 생활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에 의해 운영된다. 팀은 10명의 사회복지사, 3명의 커넥션 담당자, 2명의 주거지원 담당자, 관리자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거지원, 교육, 훈련, 취업, 건강, 경제, 따돌림·폭력·차별과 관련된 문제, 여가, 관계, 가족, 친구와의 연결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1년에 세 번씩 주거문제, 예산 세우기, 독립에 필요한 기술 훈련 등을 포함한 10주간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 독일의 자립지원관련 법규, 정책, 프로그램 현황

1) 독일의 자립지원관련 법 현황

(1) 청소년지원법(KinderJugend Hilfe Gesetz: KJHG)

독일에서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적체계는 다수의 청소년보호관련법이 존재한다. 위기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지원법이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지원법은 가족위기, 방임, 학대, 자살위험, 성적 학대, 가출, 중독 등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일시적 보호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일시적 보호를 위한 조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안녕을 위해 취해져야하고, 청소년에게 그들이 처한 현재 상황을 상담해 주며 그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도움과 지원의 가능성을 알려주어야 한다. 청소년지원법은 위기청소년의 일시적 보호 및 양육에 관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인해,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청소년지원법에 따른 제반 업무는 청소년청에서 담당한다.

2) 독일의 자립지원관련 정책 및 제도

(1) 하임(Heimerziehung)

대규모 시설 중심의 청소년 복지시스템에 대한 비판에 따라 독일 내의 위기 청소년 지원은 소규모의 전문화된 그룹홈 체제로 변화되었다. 그룹홈의 일종인 하임(Heimerziehung)은 일반적으로 8명 정도의 청소년을 4명의 전문지도자가 담당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임은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소규모, 전문 치료·교육 시설로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을 목표로 한다.

독일 정부는 하임에 살고 있는 청소년 1인당 연간 4만7440~5만4750유로(한화 약 8000만~9200만원)정도의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현재 하임에 살고 있는 청소년은 8만여 명으로 독일 20세 이하 인구의 0.5%를 차지하고, 하임에 투자되는 정부 예산은 6조 4000억원~7조4000억 원에 달한다.

하임은 품행장애, 학교부적응, 정신장애, 가출, 비행·범죄유발 가능성, 성폭행 등 청소년이 지닐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모두 유형화해서 다루고 있다. 연령보다는 문제 행동의 유형에 따라 8~10명의 청소년들이 하나의 하임에서 집단생활을 하게 된다. 하임에는 전문치료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가 등 평균 4명의 전문가가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한다.

하임은 일상생활에서의 교육을 중시하여 지역 병원과 연계해 일주일에 2번 가량 이루어지는 전문상담과 별도로 구체적인 생활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하임에 상주하는 근무자들은 청소, 설거지, 빨래, 운동, TV시청, 쇼핑, 외출, 등하교, 숙제 등 아이들의 하루 일과를 일일이 평가하고 관리하여 일상적인 자조절능력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라. 일본의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관련 법규, 정책, 프로그램 현황

일본의 취약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시설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과,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NEET)에 대한 자립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일본 사회에서 니트상태에 있는 청년의 자립지원이 본인 및 가족뿐 아니라 사회전체에도 매우 중요한 일로 간주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니트 자립지원정책을 다양한 형태로 전개하기 시작하고 있다.

1) 일본의 자립지원관련 법 현황

(1) 아동복지법

1977년 아동복지법의 대폭적인 개정에 따라 요보호 아동에 대한 시책의 기본이념을 “보호”에서 “자립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아동에 대한 관점이 보호와 양육의 대상에서 인격과 주체성의 존중으로 변화되었다(신혜령 외, 2008). 아동과 가정을 둘러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지원의 내용도 보호와 양육의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성장발달에 따른 사회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전광현, 2002).

2) 일본의 자립지원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1) 리빙케어(Leaving Care)

리빙케어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인케어(in care: 시설 내의 생활지원)와 사후케어(after care: 시설 퇴소 후의 자립원조지원)의 인접영역으로 두 영역이 겹치는 부분에 위치하는 자립지원의 원조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리빙케어의 목표는 첫째, 사회기술의 습득이며 둘째, 직원과 퇴소를 앞둔 청소년과의 관계 맺음이다. 사회기술은 생활분야전반으로서 가스비, 수도료, 전기료 지불, 주거이전의 수속, 전입신고, 운전면허증의 취득과 갱신, 금전관리, 생활 및 건강관리, 위기관리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2) 아동자립생활원조사사업

아동자립생활원조사사업은 1955년 민간단체에 의해 시작되었고, 1988년부터 국고보조가 실시되었다. 의무교육 졸업 후 아동양호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등을 퇴소하였지만 아직 사회적 자립이 충분하지 않은 아동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가정인 자립원 조 흡에서 취업지도나 일상생활 및 직장적용의 상담 등 아동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신혜령 외, 2008). 필요에 따라서 아동이 만20세가 될 때까지 원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립원조흡은 다른 아동복지시설과 다르게 입소청소년이 매월 이용료(30,000엔 전후)를 지불해야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진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3) 액션플랜

일본의 액션플랜은 NEET청소년 및 청년을 타겟으로 한 정책으로 교육·고용·산업정책의 연대를 강화하여 청년의 직업적 자립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청년실업의 역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미숙(2009)의 연구에 의하면 액션플랜의 상세한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 일본판 이중교육 시스템(dual system)

기업실습과 직업훈련을 혼합한 실무·교육인재양성 시스템이다. 교육기관에 의한 직업교육과 그와 관련된 내용의 기업실습이 결합된 수업을 수강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마친 후에 자연스럽게 직업생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술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프리터와 니트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책은 직업능력개발대학교 등의 전문과정과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대학교의 전문과정은 2년간 유료로 행해지며,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의 과정을 표준 4개월 간 무료로 실시되고 있다.

- 잡카페(job cafe:청년을 위한 one-stop service center)

프리터 및 일반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하는 거점으로서 후생노동성과 경제산업성이 연계하여 실시되고 있다. 직업 및 능력개발, 창업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직장체험 기회의 확보, 상담, 직업소개 등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 지역청년 씨포트 스테이션(support station)

지역청년 씨포트 스테이션은 2006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각 지역에서 설치한 사업으로 니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능력양성 뿐 아니라 직업의식의 고취, 사회적응훈련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상담지원사업(직업상담 및 심리상담), 직업의식개발사업(직업의식 고취), 코디네이트 사업(지역의 청년지원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지원이 계속 실시되도록 지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부터 아웃리치 요소가 포함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약 20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자립합숙

2005년 6월 니트 지원사업으로 창설. 20명 정도의 참가자가 3개월 간 합숙 형식의 집단생활을 통하여 직장인, 사회인으로 필요한 기본적 능력의 습득 및 노동의식을 고취하여 최종적으로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은 실시단체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생활훈련, 직장체험, 자원봉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을 실시한다. 합숙종료 6개월 후에 70%가 주 20시간이상의 일에 종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5년 6월 사업 개시부터 2009년 3월 말까지 수료자 누적 수는 약 2천 명이며 2008년 9월까지 수료자의 6개월경과 후의 취업률은 약 62%에 달한다.

3) 일본의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관련 프로그램 현황

(1) 자립원조홈 신주큐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15세에서 20세까지의 남녀로 혼자서 생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누구라도 입소가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야한다. 1) 열심히 일할 것, 2) 일하여 받는 급료는 직원과 상담하여 저금을 하고 결정된 금액으로 생활을 할 것, 3) 약한 동료를 왕따하거나 다른 동료의 생활을 위협하지 않을 것. 돈은 직원이 보관하며 상담 후에 준다. 입소시간은 10시, 취침은 11시로 기상은 각각 취업중인 일의 특성에 맞추게 되어 있다. 구직 중에는 직원의 일을 도우며, 매주 미팅을 열고 모두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립을 위한 학습회를 개최한다. 기타 여러 가지 집단활동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표 2. 미국 자립지원 현황

| 대상 | 프로그램명 | 목적 | 운영방식 | 지원내용 | 관련법안 | 비고 |
|---|--|---|--|---|-----------------------------------|------|
| 위탁 가정 청소년 | Educational Training Voucher (ETV) | 위탁가정청소년에게 고등교육 또는 직업교육 제공 | 전문가에 의한 개인별 자립준비사정과 사례계획서비스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세까지 의료보호 혜택 지원 1년에 5000달러까지 대학이나 직업교육 비용 지원 주거지원 및 식비 지원 | Foster Care Independence Act | 정책 |
| | Preparing Adolescents for Young Adulthood (PAYA) | 위탁가정 청소년들에게 자립에 필요한 생활기술을 훈련시키는 것 | 위탁가정 청소년 스스로 또는 위탁가정부모, 시설 및 그룹홈 담당자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가지 모듈로 구성된 일상생활기술 훈련 교육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주거, 식생활 관리 자기관리, 건강, 안전, 의사결정 교육, 구직, 직업유지 주거, 교통, 지역사회자원, 법, 여가 부모교육(성, 출산, 의사결정, 임신, 아동발달, 아동안전, 건강관리, 교육 및 진로설계) | Foster Care Independence Act | 프로그램 |
| 위탁가정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자립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획득하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 Life Skills Training Program (LST) | 위탁가정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자립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획득하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 Los Angeles 의 19개 지역대학에서 주 2회 3시간 참여하는 5주간의 교육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교육과 인생의 장기적 측면, 진로목표에 관해 논의 취업: 직업에 대한 태도, 다양한 취업 자원 등을 논의 일상생활기술: 은행이용, 계약, 식사준비, 응급상황 대처 등 선택과 결정, 생존기술: 약물중독과 성 위험에 초점, 도덕성과 가치관으로 구성 대인·사회성 기술: 의사소통기술, 대인관계, 분노 관리, 공중예절 등 | California Child Welfare Services | 프로그램 |

| | | | | | |
|-----------------------------------|------------------------------------|---|---|--------------------------------|------|
| Transitional Living Project (TLP) | 가출 및 노숙청소년의 장기적인 독립과 자립지원 | 기관실무자의 지도 하에 Transitional Living Home에 거주하며 생활기술습득, 직업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21개월까지 주거 지원 생활기술훈련 직업훈련 |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 정책 |
| 가출 청소년 | Job Corps | 위기청소년 직업훈련 및 취업 기숙생활방식 평균 8개월 거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웃리치와 입학: Job Corps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주거지원: 기숙사 생활 직업준비기간: 직업탐색기술 학습, 개인직업 개발계획 수립 직업개발기간: 직업기술 훈련, 의사소통기술, 문제해결 기술 훈련 직업전환기간: 취업, 거주 공간, 교통, 가족 부양에 대한 지원 | Workforce Investment Act | 프로그램 |
| 학업 중단 청소년 | YouthBuild | 청소년 문제해결과 저소득지역의 주거, 교육, 취업, 범죄 예방, 리더십 발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안학교: GED 또는 고등학교 학위취득을 위한 학습지도 지역사회 서비스: 노숙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 직업훈련 및 건설: 건설기술훈련 리더십 개발 및 시민 참여: 청소년 자치회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문제 참여 청소년 개발: 개인상담, 또래지지집단, 인생 설계 과정 Youthbuild 동문회: 지속적인 참여 가능 | Workforce Investment Act | 프로그램 |

| | | | | |
|--|--|--|---|---|
| <p>Community Education Pathway to Success (CEPS)</p> | <p>청소년 발달, 사회적 지지, 진로관련 지역사회 서비스의 통합</p> | <p>학업중단청소년들을 위한 읽기 훈련과 산수훈련 교육과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에서 입증된 청소년 발달 원칙, 철저한 교수, 구조화된 학생 지지의 세 요소를 포함한 모델 학습기술훈련 제공: Ramp-Up을 통한 읽기 훈련, Mathematics Navigator를 통한 산수 훈련 | <p>뉴욕 Youth Development Institute 소관 프로그램</p> |
| <p>Baltimore Youth Opportunities Program (YO)</p> | <p>학업중단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업, 고등교육기관 진학 지원</p> | <p>일상생활기술 수업 및 현장에서의 직업기술훈련 진행 각 청소년에게 Employment Advocate가 배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기술훈련과 일중심학습의 혼합 매주 배운 일상생활기술을 직업경험, 인턴십을 통해 적용 컴퓨터 수리, 건설, 의료기술 등의 직업기술 훈련 제공 주별 30시간의 유급 근로, 임금은 보조금으로 제공 사례관리자에 의해 일상생활기술 및 직업기술에 대한 튜터링 제공 | <p>Youth Opportunity Grant 프로그램</p> |

표 3. 영국 자립지원 현황

| 프로그램명 | 목적 | 운영방식 | 지원내용 | 관련법안 | 비고 |
|--|---|--|--|--|-----------|
| 학업 중단(가능) 청소년 | 청소년이 충분한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성인으로 원활히 전환하도록 돕는 것 | Partnership을 맺은 지역 Connexions에서 서비스 수행, 다수의 PA(Personal Advisor)를 통해 청소년에게 일대일로 접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중단(가능) 청소년에게 직업연결 서비스와 멘토링 제공 Budget Holding Lead Professional(BHL)프로그래를 통해 PA는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재량껏 예산을 할당할 수 있음 학교교육이 끝난 뒤에도 추적시스템을 통해 학업중단(가능)청소년에게 취업기술 훈련 제공 | Cross-Departmental Connexions Service National Unit 소관 | 정책 및 프로그램 |
| 위탁 가정 · 시설 청소년 | 양육 및 보호 서비스 종료 이후의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제공 | 각 청소년마다 라이프코치가 배정되어 조언, 지원, 계획 수립, 계획 수정 등의 역할 수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 및 보호서비스 종료 이전 필요한 조력 서비스를 결정하기 위한 요구 진단 실시 진로계획: 요구진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장래희망을 진술한 뒤 구체적인 지원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계획 수립 진로계획의 수정: 청소년의 요구, 라이프 코치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계획 수정, 최소한 매 6개월마다 계획 수정. | Children Leaving Care Act | 프로그램 |
| Young People Leaving Care in Westminster | 청소년의 독립적인 생활로의 전환 지원 | 10명의 사회복지사, 3명의 커넥션 담당자, 2명의 주거지원 담당자, 관리자에 의해 구성된 팀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지원 교육, 훈련, 취업, 건강, 경제, 따돌림, 폭력, 차별문제, 여가, 관계, 가족, 친구와의 연결 서비스 1년에 3회 주거문제, 예산 세우기, 독립 기술 훈련 등을 포함한 10주 프로그램 제공 | Children Leaving Care Act | 프로그램 |

표 4. 독일 지원자원 현황

| 프로그램명 | 목적 | 운영방식 | 지원내용 | 관련법안 | 비고 |
|-------------------------|--|-------------------------------------|--|------------------------------------|-------|
| 위기 청소년 Heimerziehung |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소규모, 전문 치료·교육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 | 평균 8명의 청소년을 4명의 전문지도가가 담당하는 그룹홈 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치료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가 등 평균 4명의 전문가가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생활지도 지역 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주 2회 개인상담 그룹홈 생활을 통한 일상적 자기조절능력의 습득 지도 | 청소년지원법 (KinderJugend Hilfe Gesetz) | 프로 그램 |

표 5. 일본 지원자원 현황

| 프로그램명 | 목적 | 운영방식 | 지원내용 | 관련법안 | 비고 |
|-------------------------------|-----------------------------------|---|---|--------------------------|----|
| 시설 청소년 리빙케어 (Leaving Care) | 시설보호아동의 퇴소 후 자립 준비 | 기숙생활하며 취업, 집단활동 수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분야전반의 사회기술의 습득 직원과의 인간관계 맺기 | 이동복지법 | |
| 시설 청소년 자립원조홈 | 시설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및 주거서비스 제공 | 기숙생활하며 취업, 집단활동 수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지도: 성실히 일하고, 금료는 직원과 상담 하에 일부 저금하고 정해진 금액을 생활비로 활용 일상생활 및 직장적응 상담: 미팅, 학습회 등의 집단활동 | 이동자립생활원조사업 | |
| 학업중 단정년 및 청소년 | 학교교육을 마친 후 직업생활 연결이 용이하도록 기술향상 도모 | 직업능력개발대학교의 전문과정(유료),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의 4개월 과정(무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실습과 직업훈련 혼합 교육기관에 의한 직업교육과 그와 관련된 내용의 기업실습이 결합된 수업 수강 | 액션플랜(NEE) T 청소년 대상 정책 | |

| | | | | |
|----------------------|--|---|--|-----------------------------|
| job cate | 프리티터 및 일반청년의 취업 지원 거점 | 후생노동성과 경제산업성이 연계하여 실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한 곳에서 one-stop으로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 및 능력개발 청업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직장체험 기회의 확보 직업상담, 직업 소개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 | 액션플랜(NEE T 청소년 대상 정책) |
| 지역청년 support station | NEET청소년 및 청년의 포괄적인 지원 |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의 청년지원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계속적인 지원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적인 능력양성 직업의식 고취 사회적응훈련 상담지원사업: 직업상담 및 심리상담 직업의식개발사업: 직업의식 고취 코디네이트 사업: 청년지원기관 네트워크 활용 아웃리치 요소 포함 | 액션플랜(NEE T 청소년 대상 정책) |
| 청년자립합숙 | 직장인, 사회인으로 필요한 기본적 능력의 습득 및 노동의식 고취를 통한 취업 | 20명정도의 참가자가 3개월 간 합숙형식으로 집단생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훈련 직장체험 자원봉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 | NEET 청소 년 및 성인 |

마. 국외의 취약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요약 및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심의 국외 취약 청소년의 자립지원 서비스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취약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나 통일된 프로그램이 있기보다는 대상 및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위탁가정청소년에게는 교육훈련바우처(Education Training Voucher)로 의료보호 혜택, 교육비 지원, 주거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PAYA나 LST같은 일상생활기술훈련 교육과정을 통해 독립 이후의 생활에 대한 준비를 강조하고 있다. 가출청소년은 전환생활공간(Transitional Living Home)에 최장 21개월까지 거주하면서 기관실무자의 지도하에 일상생활기술훈련,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거나 잡콧스의 취업준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CEPS와 같은 체계적인 학업기술 훈련에 참여하거나, 유스빌드, YO와 같은 대안학교, 직업훈련 통합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미국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가지 사회적 자원을 연계하여 개별적인 청소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주거, 의료, 교육, 직업훈련, 일상생활기술, 사회성, 리더십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청소년 개개인에게 맞춤형 사례계획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대일 심리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배치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넷째,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 과학적 타당도 검증을 통해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프로그램을 위주로 자립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영국은 학업중단청소년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통합시스템인 커넥션즈를 운영하고 있다. 커넥션즈의 경우 특히 직업교육과 직업연결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업중단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위탁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위탁보호 퇴소청소년 서비스(Young People Leaving Care)의 경우 체계적인 요구진단, 진로계획 수립, 진로계획 수정 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개별적인 요구와 선택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자립지원 서비스를 통해, 첫째,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통합적인 시스템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점, 둘째, 체계적인 요구진단, 계획 수립, 계획 수정 과정을 통해 조기에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

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 있다.

독일은 위기청소년을 위한 일종의 그룹홈인 하임 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임에서는 약 8명 정도의 청소년이 함께 거주하며, 평균 5명의 전문지도자가 이들의 생활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생활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기조절능력 학습이 강조되고 있다. 하임의 사례를 통해 청소년의 자립지원 준비에 있어 일상적인 훈련과 반복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할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복지시설 퇴소 이전의 아동에게 자립준비를 위한 리빙케어를 제공하고, 퇴소 후의 청소년에게는 자립원조홈에서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리빙케어와 자립원조홈에서는 직원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 속에서 일상생활분야 전반의 사회기술 습득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일본 내 NEET 청년 및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NEET 청년 및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서비스 역시 강화되고 있다. NEET 청소년을 위한 액션플랜에 의해 기업실습과 직업훈련이 혼합된 일본판 dual system, 다양한 직업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job cafe, 직업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지역청년 support station, 합숙을 통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자립합숙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청소년의 경우 퇴소 이전부터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퇴소 이후에도 시설 관계자와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NEET 청소년의 사례에서 보듯이 취약 청소년에게 단순히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의식을 고취하고 동기화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적 지원이 수반되어야한다는 점이다.

4.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관련 선행연구

가.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선행연구

취약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자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 속에 사회복지학계를 중심으로 외국의 자립지원 정책을 탐색하는 연구가 일부 발표되었다(예, 노충래, 2001; 정익중, 2007; 원지영, 2008;

김미숙, 2009). 해외 정책을 탐색한 연구 외에 실제 국내의 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험 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의 자립지원 정책의 방향을 고찰한 연구로는 박은선(200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 신혜령 외(2008)의 연구가 있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의 자립지원 정책을 모색한 박은선(200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 신혜령 외(2008)의 연구를 각각 살펴보고 그 시사점 및 한계를 분석한 후, 해외 자립지원 정책을 탐색한 기타 연구들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일반주의 실천 접근에 관한 연구(박은선, 2004)

박은선(2004)은 시설청소년들의 자립생활 문제는 이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과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주의 실천접근을 통한 청소년 개인, 가족, 생활하고 있는 시설, 지역사회 사회정책 등의 다양한 개입과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시설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 즉 아동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사회정책 등의 다차원적·다중적 체계에 대한 개입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자립생활준비라는 포괄적 문제해결을 지향하였다.

이 연구는 자립준비에 필요한 요인을 독립변수로 미시·중시·거시체계로 나누고, 하위요인으로 미시체계에는 개인, 가족요인, 직업관, 사회적 특성, 부모·친척지원으로 구성하고, 중시체계로는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을 요인으로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내용 및 시설 종사자와의 유대관계를, 거시체계로는 시설퇴소 청소년들의 주변 지지자원, 어떤 측면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지, 자립생활 준비에 지역사회 자원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종속변수로는 자립생활준비로 선정하고 하위요인으로는 자립의지, 생활과업수행기술, 대인관계 기술, 문제해결 기술적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개인·가족 변인 중에서 직업관과 학업성적은 자립의지, 생활과업수행기술, 대인관계기술, 문제해결 기술 모두에 영향을 주었으며, 학교생활적응은 생활과업수행기술, 대인관계기술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취업경험은 대인관계 기술에 영향을 주었으며 다른 요인은 자립준비기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시설변인 중에서는 취업이나 자립을 위한 모임이나 단체활동 참여의 서비스 연계 및 시설종사자와의 관계가 대인관계기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변인 중에서 시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모임이나 단체에 속해서 활동하는 것은 생활과업수행 기술과 직업기술 준비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사회 서비스 활용은 생활과업수행 기술, 대인관계기술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함의로 일반주의 실천의 관점에서 시설 청소년들의 자립생활 준비와의 관련성을 증명하였으며, 자립생활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청소년들의 거주지나 연락체계를 알 수 없고, 혹 있다고 하더라도 전국 각지에서 각자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접근하여 조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한 자립지원시설의 청소년들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자립지원시설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시설퇴소 청소년들까지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기존의 국내 시설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학력이나 취업, 거주지 등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아동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으므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심리적·사회적 적응실태를 살펴보고, 퇴소청소년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적응에 이르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연구에서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252명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5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다양한 시기별 및 생활영역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되는지, 적응과정별로 요구되는 사회적 지원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퇴소 후 과정별 차별화된 서비스 또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아동복지시설 현황, 퇴소청소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자료 및 통계자료를 문헌 연구하였으며, 설문조사로는 퇴소청소년들의 자립준비 필요 영역별 서비스, 시설생활시의 프로그램, 퇴소시 필요프로그램 등의 조사 및 심층면접에서는 퇴소청소년은 취업형, 진학형, 가족통합형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가장 어려운 점을 살펴보면 거주지(36.5%), 경제적인 어려움(35.7%), 사회적응(13.5%)순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는 평균 3.23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이중 농어촌(3.62점)에 비해 대도시(3.11점)에 살고 있는 경우가 삶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음이 나타났다. 또한, 아동양육시설 퇴소를 앞두고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으로는 진로지도 및 관련 상담(47.9%), 사회적응기술훈련(43.8%), 직업훈련프로그램(37.2%)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자립준비를 위한 준비대책 시급, 퇴소청소년의 사후관리 체계 마련, 실효성 있는 자립지원제도 등 제도적 차원에서 자립지원, 일상생활 및 가족생활, 학교 및 또래관계영역, 직장영역 등 서비스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 광범위한 연구활동을 통해 아동양육시설 퇴소청소년의 퇴소 전에 필요한 교육내용, 퇴소 후 주거지원, 사례관리 강화 등 자립준비 시기별로 다양한 필요요인을 조사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함의가 있으며,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시 표집대상의 접촉이나 협조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다양한 퇴소청소년의 유형별 인구비율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협의회 추천을 통해 섭외된 청소년으로 비교적 퇴소후 적응이 잘 이루어져 시설 혹은 협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섭외되었으며, 횡단적 연구라는 한계로 “적응의 과정”을 종단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3)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신혜령 외, 2008)

신혜령 외(2008)의 연구는 시설 청소년들이 퇴소 후 생활 및 사회 적응여부, 적응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는지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퇴소 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자립정책 방안을 강구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내용으로는 퇴소청소년의 평균연령, 시설생활기간, 부모생존여부, 희망퇴소 시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희망주거형태, 거주 만족도, 주거안정 현황 등의 주거현황,

학력, 대학생활 만족도, 대학졸업 직후 상황 등의 진학현황, 취업상태·취업 신분상태, 직장만족도, 월소득 등의 취업현황, 퇴소 후 기초생활급여 경험, 현재 생활 만족도, 자립생활기술정도 등의 자립현황, 고민상담 대상, 정서조절감·공격성·불안·우울·충동·사회적 지지 등의 심리사회적 적응현황을 실증조사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와 관련된 내용 및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 제안되었는데, 퇴소청소년과 연장청소년의 지원연령이 균등화, 자립생활의 기준제시 후 자립생활 계획, 시설인력의 직무규정과 양육프로그램의 매뉴얼화, 부모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 아동복지시설서비스의 목표로 가족재결합을 명시하는 것, 자립지원 기금의 확보를 통한 학비, 취업훈련, 주거 및 생활지원을 하는 것, 생활자금 융자지원, 긴급의료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자립지원센터의 확대와 사후관리 강화, 자립전담요원의 배치 등), 주택임대 지원, 자립생활지원법 제정 등이 제안되었다. 서비스 관련 내용으로는 시설 내 서비스(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생활계획, 심리정서적 문제개입, 자립생활 서비스 제공, 가족개입 및 가족생활 체험 서비스, 학업지원, 체계적인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서비스 표준화 등), 퇴소직전 서비스(자립생활체험관 체험, 실제적인 취업 능력 함양, 체계적 진학지도), 퇴소 후 서비스(집중적 사례관리, 융통성 있는 서비스 수혜자격 적용, 퇴소청소년들의 시설과의 유대감 형성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연구의 함의로는 시설퇴소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조사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퇴소했거나 시설에서 연장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 4,882명 전수를 대상으로 3,613명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여 68.8%인 2,487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고 이중 2,206부(시설퇴소청소년의 45.1%)를 실증연구함으로써 최근에 퇴소한 청소년들의 퇴소 후 상황과 시설보호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이 실시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에서 보다 연구대상의 확대뿐만 아니라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거, 진학, 취업, 자립, 심리사회적 특성 및 자립생활기술의 측정, 자아존중감, 심리행동문제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시설퇴소 및 연장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내용을 다양화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양육시설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위탁이나 그룹홈 등의 청소년에 적용가능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생활했던 시설을 통해 퇴소청소년의 소재를 파악하였으나 퇴소청소년의 연계망 부족, 조사기간의 부족, 연구결과에서 일부 항목에 대한 높은 무응답율이 발생하는 연구의 제한점도 있었다.

4) 해외 자립지원 정책관련 국내 연구들

노충래(2001)는 미국 자립프로그램의 역사적 배경 및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자료를 제시하고, 국내의 자립프로그램의 고찰 및 인구학적 특성, 자립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필요성, 자립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조사실시를 통해 우리나라에 정부의 지원부족, 자립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정형화 문제, 퇴소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 문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문제를 살펴보면서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정익중(2007)은 미국의 친가정의 보호는 대부분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이를 가정통합, 자립지원, 직업교육의 3가지 차원에서 자립을 원조하는 방안을 토대로 미국 요보호아동의 퇴소후 자립관련 주요 제도 및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퇴소전의 자립프로그램은 퇴소후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준비 및 예방하며, 퇴소후의 사회적 지원은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퇴소아동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적응을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원지영(2008)은 아동복지시스템 퇴소 청소년들의 성인기 자립을 돕기 위한 미국 아동복지 정책의 발달 과정과 현재 자립지원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다방면적 접근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퇴소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지원정책 및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김미숙(2009)은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니트(NEET)현상에 대해 일본정부가 니트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자립지원시책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니트가 국내의 부등교, 장기결석, 은둔형 외톨이 등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연속선상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니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퇴소 청소년 및 국내 연구들의 대다수가 시설 보호 청소년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그룹홈이나 위탁가정, 학업중단, 가출 등 자립준비 청소년에 대한 자립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퇴소 청소년들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예를 제시할 뿐 분석틀을 이용한 정책 비교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나. 취약 청소년 자립 영향 관련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취약 청소년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취약 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국외 연구들은 주로 가정위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고,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는 대상을 양육시설 청소년으로 한정짓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예, 신혜령, 김성경, 안혜영, 2003; 박은선, 2004; 손혜옥, 최외선, 이미옥, 2008; 박은미, 장신재, 2009 등).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국외의 가정위탁 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연구들과, 국내의 양육시설 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연구들을 우선적으로 고찰하면서, 그룹홈, 가출, 학업중단청소년의 특성이 자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논의하고자 한다.

1) 개인적 요인

우선 취약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 자립 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사회학적요인 중 자립 준비와 관련하여 연구된 변인으로는 성별이 있다. 예를 들어, 양육시설 퇴소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혜령, 김성경, 안혜영(2003)의 연구에서는 여자아동이 남자아동보다 자립생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혜령(2001)의 연구에서도 여자청소년일수록 자기관리기술이 높다고 보육사들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미연(2009)의 연구에서도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자립생활기술이 높게 보고되었으며, 실업계청소년이 일반계 청소년보다 자립생활기술이 높게 나타나 인구사회학적요인과 자립생활기술의 관련성을 시사하였다. 반면 성별을 포함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최경아, 2007)도 있어,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자립준비의 관련성은 불명확한 상황이다.

취약 청소년의 부정적 심리적, 정서적 특성 또한 자립에 영향을 미친다. Barth(1990)의 연구에 의하면, 연구에 참여한 위탁보호 퇴소 청소년들은 우울점수인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점수가 평균 36점으로 우울증을 나타내는 절단점 이상으로 높게 보고되어, 보호시스템이 종료된 청소년들의 우울 문제가 자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였

다. 양육시설 청소년은 일반 아동에 비해 높은 우울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김민자, 1991; 조현경, 1995)와, 가정위탁보호 내 아동의 전체 가운데 약 14.2%가 임상적 수준의 우울점수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노충래, 김미영, 박은미, 강현아, 신혜령, 2008)는 취약 청소년의 우울 문제에 대한 개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긍정적인 심리적, 정서적 특성은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시설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박은미, 장신재, 2009), 자기주장성, 독립성, 목표지향성, 인내심, 유연하고 적응적인 자아상, 의식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등의 특성 또한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Hines, Wyatt, 2005). 이렇듯 긍정적 심리적, 정서적 특성이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청소년은 입소 이전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을 경험함으로써 인해 부정적인 자아개념,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이강훈, 2003). 또한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 위선되고, 비주장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홍봉선, 남미애, 2002), 청소년기에 부모 혹은 부모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없었던 시설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높은 의존성을 나타낼 수 있다(황실리, 2000). 그러므로 시설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이나 의존성을 자기주장성, 독립성 등의 긍정적인 특성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자립준비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가출청소년 또한 낮은 충동통제력, 낮은 자아개념, 부족한 인내력, 주체성 부족, 의지력 부족 등의 성격적 요인으로 인해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대처해 극복하기보다는 충동적인 회피행동을 하는 경향(안창규, 1995)이 있어 자기주장성, 독립성, 인내심 등 자립에 긍정적이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에도 자기통제력의 부족(조용태, 배영태, 2003; 권이중, 2004) 및 공격성 및 호전성을 나타내는 경향(배영태, 2003; 구본용, 신현숙, 유제민, 2002)이 있으므로 자립에 긍정적인 특성을 개발시키기 위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취약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중 학업 성취는 자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신혜령, 김성경, 안혜영, 2003; 박은선, 2004; 황미정, 2009; Hines, & Wyatt, 2005). 학업 성취는 취약 청소년의 긍정적인 적응을 측정하는 한 가지 요인으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 직업획득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청소년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발달 수준이 높으며(신혜령, 김성경, 안혜영, 2003),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자립준비기술 또한 높아진다(박은선, 2004). 양육시설 퇴소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발달 측면에서도 대학에 진학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격차가 크다는 연구결과(강현아, 신혜령, 박은미, 2009)는 취약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에 학업 성취나, 교육수준이 중요한 변인이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룹홈 거주 청소년의 경우에도 학업성적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립생활기술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김미연, 2009). 이러한 학업의 중요성에 따라 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업 지도와 튜터링이 자립준비 프로그램의 초석이 되어야한다는 제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Barth, 1990; Hines, & Wyatt, 2005).

학업 성취가 취약 청소년의 자립에 있어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양육시설 청소년은 학업에 있어 낮은 학업성취도로 인하여 열등감이 높으며, 일반아동에 비해 인지적 과제에서 자신에 대해 유능하지 못한다고 지각하여 낮은 학업 수행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권세은, 2002). 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도 낮은 학업흥미와 학업성취도가 학업중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가 많아(조용태, 배영태, 2003; 권이중, 2004; 구본용, 유제민, 2003; 신현숙, 구본용, 2002; 안현의, 이소영, 권해수, 2002), 이들의 낮은 학업흥미와 학업성취도가 지속적으로 자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업성취와 더불어 진로에 대한 의식, 태도 또한 자립준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박은선, 2004; 손혜옥, 최외선, 이미옥, 2008; 황미정, 2009). 직업목표를 수립하고 인식한 집단이 직업목표를 수립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집단보다 자립의지와 생활관리능력, 자존감, 자립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손혜옥, 최외선, 이미옥, 2008), 직업 결정 정도, 희망 직업 인식 정도 또한 자립생활 기술에 영향을 미친다(강정신, 2003). 진로탐색, 적성검사와 같은 자립준비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생활과업수행기술, 대인관계기술, 문제해결기술, 자립의지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박선정, 2009)와 취업경험이 있는 그룹홈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그룹홈 청소년보다 사회기술, 자립생활기술 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박미양, 2005)는 진로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발달시키고 관련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2) 가족 및 가정환경 요인

가족 및 가정환경 요인이 취약 청소년의 자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치 않으며 원가족과의 연계가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없는 상태이다(Collins, Prais, & Ward, 2008).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원가족과의 연계가 자립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신혜령, 김성경, 안혜영, 2003)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박은선, 2004)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시설청소년의 특성이 “단순 고아”에서 가족기능의 약화 혹은 가족 해체로 인한 기아, 방임(학대) 아동으로 변화함에 따라 원가족과의 연계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많아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신혜령, 김성경, 안혜영(2003)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지지가 없을수록 자립생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 퇴소 후 생소했던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적응에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자립생활기술 중 돈 관리 수준은 가족의 지지가 낮을수록 돈 관리 수준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고하여, 자립정착금과 관련하여 원가족과의 갈등이 예상되었다.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도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이 낮고, 구조적 결핍이 있는 가족적 특성이 많으며(김준호, 박정선, 1993), 가정문제나 가정해체 등으로 가출한 경우 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부모의 방임, 학대 등으로 정상적인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김향초, 2001), 가출청소년 역시 자립에 있어 가족 자원을 활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학업중단청소년 또한 가족의 기능부족으로 인하여 가족지지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Dupper, 1993; 송복 외, 1996), 부모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청소년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이경림, 1999), 자립준비에 있어 가족의 지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3) 학교 및 지역사회 요인

취약 청소년의 학교 적응 및 친구관계는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교적응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원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기술정도가 높았으며, 학교 수업에 대한 태도, 학교 친구관계 등의 학교적응능력은 자립준비를 설명하는 강력

한 변수였다(신혜령, 2001). 자립에 있어 학교 내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출청소년 과반수 이상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회 이상 가출한 청소년의 경우 42.3%가 학교로부터 근신, 정학 또는 퇴학 등의 처벌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2). 또한 대체로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다고 하여 자립에 있어 학교 자원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업중단청소년 역시 교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사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며, 교사의 공정성을 낮게 지각하고, 교사에 대한 적대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영태, 2003; 구본용, 유제민, 2003). 또한 교우관계에 있어서도 역기능적 교우관계, 교우관계 단절, 구타·괴롭힘 등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배영태, 2003; 조용태, 배영태, 2003; 구본용, 유제민, 2003) 학업중단청소년의 교우관계가 자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시사하였다.

지역사회 요인 중 취약 청소년의 자립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온 요인은 사회적 지지이다. 특히 양육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이 인식한 시설의 지지나 보육사의 지지는 퇴소아동의 자립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나타났다(신혜령, 2001; 신혜령, 김성경, 안혜영, 2003; 박은선, 2004; 손혜옥, 최오선, 이미옥, 2008; 김미연, 2009). 유사하게 가정위탁 청소년의 경우에도 위탁아동에 대한 위탁부모의 관심과 지지는 아동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위탁부모의 관심이 높을수록 아동의 심리적 적응은 향상되고, 공격성, 비행,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심영, 2003; 허남순, 2004; 노충래 등, 2008). 그룹홈의 경우도 청소년이 인식한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며(박은미, 장신재, 2009),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퇴소 후 생활만족도가 높았다(정선욱, 2008). 이러한 결과는 취약 청소년들에게 아동복지시설이나 관련 양육자의 지속적인 지지와 조언이 긍정적인 자립생활의 큰 자원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취약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의 양과 질은 성인기로의 전환 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Hines, Wyatt, 2004). 취약 청소년의 경우 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뒤에도 건강관리, 주거마련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며(강현아, 신혜령, 박은미, 2009; Barth, 1990), 안정적인 주거 형태에 거주하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집단일수록 시설 퇴소 후의 생활만족도가 더욱 높았다(정

선육, 2008). 그러므로 주거지원에 있어 좀 더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생활기술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전환생활안전망(transitional safety net)을 제공하여 자립으로 이행하는 동안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Courtney, Piliavin, Grogan-Kaylor, & Nesmith, 2001). 주거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자립생활관 서비스는 양육시설 퇴소 아동의 전체 자립생활 수준 및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신혜령, 김성경, 안혜영, 2003), 국가 및 비영리조직 같은 조직을 통해 제공되는 전문적 서비스가 자립생활기술 습득에 영향을 미친다는(이혜은, 최재성, 2008) 연구결과는 단순한 주거지원 이상의 전문적인 자립준비프로그램이 확충되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 영역에 대한 선행연구

취약 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은 성공적인 자립 이행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영역과 관련 서비스를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국내 연구부터 살펴보면, 신혜령(2001)은 직업조사, 직업, 일, 돈관리, 교육, 공부습관, 가사관리, 주택, 건강관리, 자기관리기술, 자원관리기술, 지역자원 찾기, 의사결정, 일상생활기술, 사회적 발달에 대한 자립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박은선(2004)은 교육 및 직업훈련기술, 진로(직장문제) 기술, 돈관리, 학업기술, 주택관리기술, 건강관리기술, 지역사회 자원활용기술, 체험학습, 일상생활기술, 대인관계기술, 문제해결기술, 극기훈련, 자조집단 등을 대표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로 제시하였다. 즉,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자립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기술이 발전되고 유지되기 위한 지원 체계(지역자원 찾기, 자조집단 등)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보다 자립에 대한 관심이 일찍 시작되었던 국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자립지원 영역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연구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된 Cook(1986)의 보고서에 의하면, 직업, 교육, 가사관리, 주택, 건강관리, 지역자원 찾기, 일상생활기술, 의사결정이 자립지원 서비스의 영역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Pasztor(1986)는 직업훈련, 돈, 교육, 건강관리기술, 음식, 여가, 교통, 친구, 타인과의 협력의 중요성,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감, 과제에 따른 가치평가, 지시를 따르는

편안감, 자기신뢰감, 자아존중감, 동기유발, 적절한 표현, 주도성표현의 중요성, 가족 연계를 위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이후 Maluccio(1990)는 가정위탁청소년의 자립과 관련하여 직업을 구하거나 유지하는 것, 주택을 구하는 것,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 일상생활기술,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아존중감, 분노조절 훈련 등을 자립서비스의 내용으로 제안하였다. Nollan(2000)은 직업적 발달, 경제적 발달, 교육적 발달, 주거관리, 신체적 발달과 자기관리, 사회적 발달, 도덕적 발달을 위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미국 내 자립관련 서비스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Casey Family Program(2001)에서는 직장 및 학업기술, 일, 돈관리, 공부습관, 주택, 자기보호, 지역사회자원, 일상생활, 사회성 발달을 대표적인 자립생활기술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DHHS(2001)에서는 진로직장기술, 직업·훈련기술, 돈관리기술, 교육, 주택관리기술, 건강관리기술, 지역사회 자원활용, 일상생활기술, 자아향상 및 자립심 강화와 더불어, 자조집단 구성의 중요한 자립의 영역으로 보았다.

국내외 연구자들에 대하여 제안된 자립지원 영역은 크게 자립에 기초를 이루는 심리, 정서, 신체의 건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직업 유지 및 지속적인 학업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지역사회 자원을 잘 활용하여 스스로의 독립상태를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성 기술, 대인관계기술, 지역사회 자원활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자립지원의 영역을 직업준비, 경제관리, 학업교육, 주거생활, 건강, 자원활용기술, 사회성 기술, 심리·정서로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각 연구자들이 제안한 자립지원 영역을 정리한 결과는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6.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영역

| 영역 | 신혜령 (2001) | 박은선 (2004) | Cook (1986) | Pasztor (1986) | Maluccio(1990) | Nollan (2000) | Casey Family Program (2001) | DHHS (2001) |
|---|-----------------------------|---|--------------------|----------------|-------------------------|---------------------|-----------------------------|--------------------------|
| 직업준비 (Career Planning) | ·직업조사 ·직업 ·일 | ·교육 및 직업훈련기 술 ·진로(직장문 제) 기술 | ·직업 | ·직업훈련기술 | ·직업을 구하기 및 유지하기 | ·직업적 발달 | ·직장 및 학업기술 ·일 | ·진로직장기술 · 직업, 훈련기술 |
| 경제관리 (Money management) | ·돈관리 | ·돈관리 | ·돈 | ·돈 | ·돈 | ·돈 | ·돈관리 | ·돈관리기술 |
| 학업교육 (Learning support) | ·교육 ·공부습관 | ·학업기술 | ·교육 | ·교육 | ·교육적 발달 | ·교육적 발달 | ·공부습관 | ·교육 |
| 주거생활 (Housing management, Daily living) | ·가사관리 ·주택 | ·주택관리기 술 | ·가사관리 ·주택 | ·주택관리 ·구하기 | ·주택 구하기 | ·주거관리 | ·주택 | ·주택관리기술 |
| 건강 (Physical management) | ·건강관리 ·자기관리기 술 | ·건강관리기 술 | ·건강관리 | ·건강관리기술 ·음식 | ·건강관리기술 | ·신체적 발달과 자기관리 | ·자기보호 | ·건강관리기술 |
| 자원활용기술 (Resources Skill) | ·자원관리기 술 ·지역자원활 용기 | ·지역사회 자원활용기 술 ·체험학습 | ·지역자원찾기 ·일상생활기술 | ·여가 ·교통 | ·창구서 지불하기 ·일상생활기술 | ·지역사회자원 ·일상생활 | ·지역사회 ·지역사회자원 ·일상생활 | ·지역사회 자원활용 ·일상생활기술 |

| | | | | | |
|--|---|---------------|--|---|---|
| <p>사회성 기술 (Social skill)</p> | <p>· 의사결정 · 일상생활기술 · 대인관계기술 · 문제해결기술 · 극기훈련</p> | <p>· 의사결정</p> | <p>· 친구 · 타인과의 · 협력의 · 중요성 · 문제해결에 · 대한 확신감</p> | <p>· 의사소통 · 문제해결</p> <p>· 사회적 발달 · 도덕적 발달</p> | <p>· 사회성 발달</p> |
| <p>심리·정서 (Psychologic al intervention)</p> | <p>· 자조집단</p> | | <p>· 과제에 따른 · 가치명가 · 지시를 · 따르는 · 편안감 · 자기실패감 · 자이존중감 · 동기유발 · 적절한 표현 · 주도성표현의 · 중요성 · 가족연계</p> | <p>· 자이존중감 · 분노조절</p> | <p>· 자이향상 및 · 자립심 강화 · 자조집단</p> |

라.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관련 선행연구를 통한 시사점

취약 청소년의 자립지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제시된다. 특히 앞에서 정리한 취약 청소년의 특성과 정책연구의 제안을 함께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언급할 수 있겠다.

첫째, 취약 청소년의 자립정책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박은선(200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 신혜령 등(2008)의 연구가 대표적인 것으로 그나마 이 연구들은 양육시설 거주 혹은 퇴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다. 즉, 양육시설이외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룹홈이나 가정위탁, 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이들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더욱 활발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연구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양육시설로부터 퇴소하게 되는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퇴소이전, 퇴소 시, 퇴소이후에 다양한 교육과 지원,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심리적, 학업적, 경제적 자원이 상당히 부족하며, 실패나 어려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인내심이나 자기존중감 등의 내적인 유연성도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한시적이지만 집중적인 사례관리와 사전 및 사후개입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셋째, 취약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으로는 자립생활기술수준과 자기관리 기술 수준, 우울, 불안, 낮은 통제력, 부족한 인내력 등의 부정적 심리정서적 특성, 높은 자아존중감, 자기주장성, 독립성, 목표지향성, 인내심, 유연하고 적응적인 자아상 등의 긍정적 심리정서적 특성, 학업성취수준, 진로에 대한 의식 등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부정적 특성을 극복하고, 긍정적 특성은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수준에서는 심리치료서비스가 요구되며, 사회기술훈련, 일반 예절교육부터 1:1 멘토링 서비스까지의 일반적이지만 이들 청소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요구된다.

넷째, 원가족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으며, 지지적이지 못

하고 역기능적인 가족관계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능한 경우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가 궁극적인 긍정적 지원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혜령 등(2008)은 양육시설에서의 개입의 목표가 원가족으로의 복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 가족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아무리 가족이 역기능적일지라도 만약 이들이 이후에 회복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들 가족과의 연계는 다양한 심리정서적, 정보적, 사회적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족과의 연계는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학교 및 지역사회요인으로부터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전문적 지원은 다양한 영역의 취약성이 있는 이들 청소년들이 궁극적으로 자립을 이룰수 있게 하는 중요한 영역인 것으로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학교와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적응도가 높으며, 교사로부터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지역사회로부터의 다양한 사회적 지지와 자원이 이들 청소년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이들 취약 청소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여섯째, 국내외의 자립지원 서비스 영역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해봤을 때, 직업준비, 경제관리, 학업교육, 주거생활, 건강, 자원활용기술, 사회성 기술, 심리·정서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영역의 서비스들은 자립의 기초가 되는 심리적, 신체적 건강함과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성, 자원활용기술을 통해 안정적으로 직업, 주거를 유지하는 종합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자립지원 모형 구성에 있어 자립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들이 포함될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들의 중요한 한계점인 연구대상이 양육시설로만 국한되어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룹홈과 가정위탁, 가출, 학업중단 등의 청소년을 모두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과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취약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인 자립지원 모형개발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취약 청소년은 양육시설청소년, 위탁보호청소년, 그룹홈청소년,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양육시설청소년, 위탁보호청소년, 그룹홈청소년, 가출청소년은 가정외(out-of-home)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로서 자립지원을 위한 가족 자원을 활용하는 데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학업중단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out-of-school)으로서 자립지원에 있어 학교 자원을 활용하기에 어려운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양육시설청소년, 위탁보호청소년, 그룹홈청소년,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은 심리적, 사회적 자원의 취약성으로 인해 정상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각 대상별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자립지원의 서비스의 내용과 순서 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취약 청소년의 공통적 또는 차별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통합적 자립지원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취약 청소년의 자립지원 모형 개발을 위하여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국내외 자립지원 서비스 현황 및 취약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자립지원과 관련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파악하고,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자립지원 서비스의 구성요소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문헌연구, 특성조사, 델파이 조사에서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립지원 모형을 개발하였다. 일차적으로 개발된 모형은 2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수정 단계를 거쳐 모형을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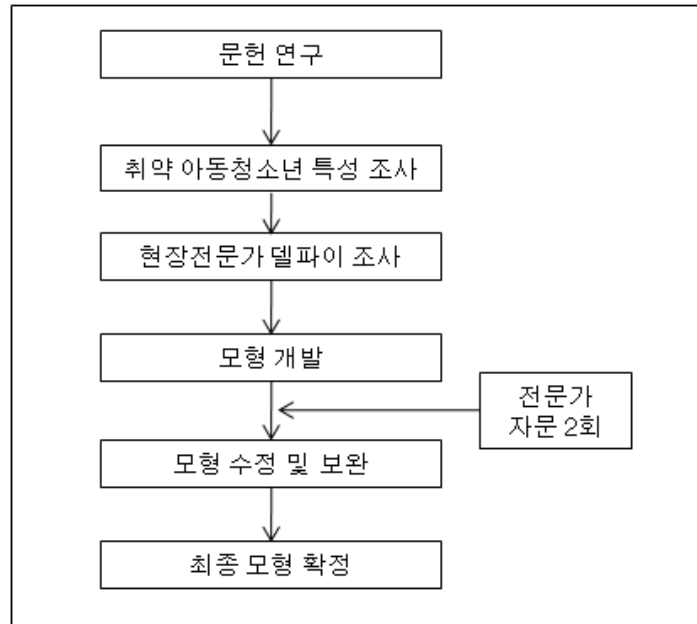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절차 모형

가. 문헌연구

우선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에 필요한 구성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국내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관련 법안, 정책, 기관 등을 파악하여 국내의 자립지원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또한 법, 정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외의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자립지원 모형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자립지원 서비스의 영역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학술지 및 학위논문을 분석하여 양육시설청소년,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등 자립지원 대상별 심리사회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국내외 자립지원 현황, 자립지원의 영역 분석, 대상 청소년의 특성에서 드러난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모형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하였다.

나.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관련 특성 조사

본 연구에서는 취약 청소년의 자립 관련 심리적 특성과 발달수준을 확인하기 위하

여 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은 주요 대상은 양육시설 청소년, 위탁가정 청소년, 그룹홈 청소년, 중장기 쉼터 청소년, 대안학교나 두드림존에 참여하는 학업중단청소년들이었다. 각 대상별로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각 집단의 청소년을 골고루 표집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설문조사의 상세한 내용과 과정은 5장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다.

다. 현장전문가 대상의 델파이 조사

본 연구에서는 취약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통합적 모형 구축을 위하여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방법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집하고 교환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질적 방법의 하나이다(노승용, 2006). 이 방법은 누가 설문에 참여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익명성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진정한 논쟁과 개인의 독립성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참여자 전체에게 피드백을 받는다(박경준, 2008).

델파이 방법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박경준, 2008). 첫째,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여 설문조사에 참가하도록 요청해야 하는데 관련된 주제에 대해 찬·반입장을 취하는 전문가들이 골고루 분포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선정된 전문가들에게 질문지를 보내 피드백을 받는데, 이 과정이 몇 번 반복된다. 이 때 전문가들은 다른 전문가들의 결과를 보면서 자신의 의견을 재평가하고, 질문의 각 단계마다 자신의 의견을 다룰 수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든 논쟁과 의견들이 공개되어 참여자들에게 전달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델파이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 패널의 선정이다.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의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전문가 선정이 중요하다(노승용, 2006).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양육시설청소년, 위탁가정청소년, 그룹홈청소년, 쉼터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델파이조사의 참여자 역시 각 청소년 집단의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현장전문가들로 균형 있게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델파이 조사의 상세한 방법과 과정은 4장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다.

라. 모형 개발

모형 개발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우선 문헌연구, 델파이 조사, 특성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모형에 포함될 구성요소를 확인하였다.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된 구성요소를 배열하여 일차적으로 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 개발 시에는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의 영역에서 각 청소년 집단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 구상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일차적으로 개발된 모형은 2회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립지원 모형을 확정하였다.

VI. 취약 청소년 특성 조사

1. 취약 청소년 특성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취약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 통합적 자립지원 모형 개발에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취약 청소년이 자립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취약 청소년의 자립생활기술을 일반청소년과 비교하여 취약 청소년의 자립생활기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양육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청소년과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등 취약 청소년 집단 간 자립 관련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이를 자립지원 모형 개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취약 청소년의 진로 발달상황, 심리적·정서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자립지원 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연구대상

양육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청소년과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을 통합하는 자립지원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취약 청소년 특성조사 역시 양육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쉼터, 대안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취약 청소년의 특성과 일반청소년의 특성 간의 비교를 위하여 일반청소년 또한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연구대상의 연령은 성인기로의 전환을 앞두고 자립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고등학교 청소년(만 16세~ 만 19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참여자 평균 연령은 16.6세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6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총 1,300부의 설문지가 발송되었다. 회신된 설문지 중 대상에 맞지 않는 설문(예, 중학생)과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은 제외하여 총 1,211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317명과,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314명이 참여하였으며 취약 청소년의 경우 그룹홈에서 112명, 쉼터에서 84명, 대안학교에서 87명, 두드림존에서 82명, 양육시설에서 123명, 가정위탁에서 91명이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 분포 및 학년 분포는 아래 표 7,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7. 연구대상 집단 별 성별 분포

| 구분 | 성 별 | | 합계 |
|------|-----|-----|------|
| | 남 | 여 | |
| 인문계 | 164 | 153 | 317 |
| 전문계 | 159 | 155 | 314 |
| 그룹홈 | 62 | 50 | 112 |
| 쉼터 | 40 | 44 | 84 |
| 대안학교 | 40 | 47 | 87 |
| 두드림 | 42 | 40 | 82 |
| 양육시설 | 73 | 50 | 123 |
| 가정위탁 | 43 | 48 | 91 |
| 무응답 | | | 1 |
| 합계 | 623 | 587 | 1211 |

표 8. 연구대상 집단 별 학년 분포

| 구분 | 학 년 | | | | 합계 |
|------|-----|-----|-----|------|------|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해당없음 | |
| 인문계 | 125 | 123 | 67 | 0 | 315 |
| 전문계 | 158 | 124 | 32 | 0 | 314 |
| 그룹홈 | 45 | 22 | 37 | 7 | 111 |
| 쉼터 | 14 | 16 | 13 | 40 | 83 |
| 대안학교 | 18 | 15 | 7 | 46 | 86 |
| 두드림 | 4 | 1 | 4 | 72 | 81 |
| 양육시설 | 36 | 37 | 31 | 18 | 122 |
| 가정위탁 | 31 | 32 | 22 | 6 | 91 |
| 무응답 | | | | | 8 |
| 합계 | 431 | 370 | 213 | 189 | 1211 |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취약 청소년의 자립준비와 관련된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다(표 9참조).

표 9. 취약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내용

| NO. | 측정 영역 | 문항수 | 설명 | 신뢰도(α) |
|-----|------------|-----|--|-----------------|
| 1 | 자립생활기술 | 24 | 신혜령 등(2008)이 Ansell Casey Life Skills Assessment에서 영역 별로 문항 추출하여 구성. 총 6가지 영역. | .913 |
| 2 | 우울/불안, 공격성 | 53 | 오경자 등(2001)이 출판한 청소년용 자기행동평가척도(K-YSR) 중 불안/우울, 공격성 척도. | .949 |
| 3 | 자아존중감 | 10 | Rosenberg(1979)가 개발한 10가지 자아존중감 측정 문항. | .840 |
| 4 | 사회적 낙인 | 10 | Harvey(2001)가 개발한 Stigmatization Scale을 주금옥(2002)이 번안한 척도. | .861 |
| 5 | 진로성숙도 | 27 | 김봉환 외(2006)가 개발한 청소년용 진로성숙도 검사. 5개 요인. | .906 |
| 6 | 진로장애 | 43 | 김은영(2000)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진로장애검사를 주금옥(2002)이 청소년용으로 수정·개발한 척도. 9개 요인. | .927 |
| 7 | 사회적 지지 | 19 | 박지원(1995)를 수정한 김인숙(1994)의 사회적 지지 척도 16문항 | .944 |
| 8 | 자립지원 요구조사 | 13 | 신혜령 외(2008)의 자립지원 요구조사 문항에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 결과 반영하여 제작. | .920 |
| 9 | 친가족과 관련된 | 14 | 정선옥(2002)이 개발한 척도. 아동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부모의 | .844 |

부정적인
생활사건

사망, 이혼, 별거, 1년 이상의 부모 수
감, 장기질환 등 14가지로 구분하여 경
험유무 확인

가. 자립생활기술

청소년의 자립기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도구로는 대리보호를 받는 요보호아동의 독립생활준비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어온 Casey Family Programs(2001, 2004)의 ACLSA(자립 및 독립생활기술척도: Ansell Casey Life Assessment)척도를 국내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신혜령 등(200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혜령 등(2008)은 ACLSA Level 4의 자립생활기술을 일상생활기술, 주거 및 지역자원, 돈관리, 자기 보호, 사회적 발달, 직장생활기술 등 6개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영역별 4개 문항으로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자립생활기술을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각 하위요인별로 일상생활기술은 .684, 자기보호기술은 .598, 돈관리기술 .792, 주거 및 지역사회 자원활용기술 .746, 사회적관계기술 .743, 직장생활기술 .795 로 나타났다.

표 10. 자립생활기술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 자립생활기술 하위요인 | 문항수 | 문항번호 |
|------------------|-----|-------------|
| 일상생활기술 | 4 | 1,2,3,4 |
| 자기보호기술 | 4 | 5,6,7,8 |
| 돈관리기술 | 4 | 9,10,11,12 |
| 주거 및 지역사회 자원활용기술 | 4 | 13,14,15,16 |
| 사회적관계기술 | 4 | 17,18,19,20 |
| 직장생활기술 | 4 | 21,22,23,24 |

나.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K-YSR)

본 연구에서는 우울, 불안, 규칙위반, 공격성 등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Achenbach(1991)가 제작한 Youth Self Report를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2001)가 번안하고 표준화 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 행동 평가 척도(K-YSR)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적응척도와 문제행동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응척도의 경우 청소년의 긍정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사회성, 성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행동척도는 증후군 척도, DSM 진단척도, 문제행동특수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6개월 내에 청소년 본인이 각 문항에 적힌 행동을 보였는지 판단하여, 0-1-2 (전혀 아니다-가끔 그렇다-자주 그렇다)로 평가하는 3점 척도로 응답하게 된다. 증후군척도의 경우 내재화 증상인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외현화 증상인 규칙위반, 공격행동, 미분류로 나뉜진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기타문제로 이루어져 있다. DSM 진단척도의 경우 정서문제, 불안문제, 신체화문제, ADHD, 반항행동문제, 품행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행동 특수척도의 경우 강박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척도의 내재화 증상 중 불안/우울, 위축/우울, 외현화 증상인 규칙위반, 공격행동의 53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값 Cronbach α 은 불안/우울은 .873, 위축/우울은 .808, 규칙위반은 .883, 공격행동은 .887으로 나타났다.

표 11.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하위요인

|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하위요인 | 문항수 | 문항번호 |
|--------------------|-----|---|
| 불안/우울 | 13 | 147, 156, 157, 158, 159, 160, 161, 166, 167, 168, 175, 184, 196 |
| 위축/우울 | 8 | 146, 164, 171, 174, 177, 191, 192, 195 |
| 규칙위반 | 15 | 144, 154, 155, 163, 165, 170, 172, 176, 177, 179, 183, 187, 189, 190, 194 |
| 공격행동 | 17 | 145, 148, 149, 150, 151, 152, 153, 162, 169, 173, 180, 181, 182, 185, 186, 188, 193 |

다.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Self-Esteem Scale(RSES)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용으로 5개의 긍정적 문항과, 5개의 부정적 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의 부정적 문항에 대해서는 역채점 방식을 적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최소 10점에서 최대 50점까지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승환(2001)이 변안한 청소년용 자아존중감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값 Cronbach α 는 .840으로 나타났다.

라. 사회적 낙인

취약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금옥(2002)이 변안한 Harvey(2001)의 사회적 낙인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Harvey(2001)의 Stigmatization Scale의 축약버전(shorted version)에 기초한 것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Harvey(2001)의 사회적 낙인척도는 개발과정에서 전문가들로부터 내용을 검증 받았으며, 이와 유사한 사회적 소외 척도와 주관적 행복감 척도의 일탈 부분을 수렴하여 구성 타당도가 확인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측정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총점은 10점에서 40점까지의 분포를 보이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낙인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낙인 척도의 신뢰도값 Cronbach α 는 .861로 나타났다.

마. 진로성숙도

본 연구에서는 취약 청소년의 진로발달상황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봉환, 김아영, 차정은, 이은경(2006)이 개발한 청소년용 진로성숙도 검사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용 진로성숙도 검사는 총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로계획성, 진로태도, 자기

지식, 진로행동, 독립성 등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봉환 등(2006)에 의하면, 진로계획성 요인의 문항간 신뢰도 계수는 .853, 진로태도 요인은 .819, 자기지식 요인은 .904, 진로행동 요인은 .885로, 독립성 요인은 .834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요인별로 진로계획성은 .886, 진로태도는 .623, 자기지식은 .891, 진로행동은 .895, 독립성은 .668 으로 나타났다.

표 12. 진로성숙도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 문항수 | 문항번호 |
|------------|-----|------------------------------|
| 진로계획성 | 5 | 117, 118, 119, 120, 121 |
| 진로태도 | 5 | 122*, 123*, 124*, 125, 126 |
| 자기지식 | 6 | 127, 128, 129, 130, 131, 132 |
| 진로행동 | 6 | 133, 134, 135, 136, 137, 138 |
| 독립성 | 5 | 139, 140*, 141*, 142, 143 |

* 역채점 문항

바. 진로장애검사

본 연구에서는 취약 청소년의 진로장애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은영(2000)이 Swanson 등(1991, 1995, 1996)의 진로장애검사(Career Barrier Inventory : CBI)를 기초로 하여 개발한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척도를 주금옥(2002)이 청소년용으로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장애검사는 진로를 계획, 결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의 장애 요인들에 대해 청소년이 지각하는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43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측정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척도 방식이다. 전체 총점은 43점에서 172점까지의 분포를 보이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애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된다. 주금옥(2002)에 의하면 전반적인 신뢰도 계수는 $\alpha=.63\sim.84$ 이며 대부분의 척도들이 .7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각 하위요인별로 자기명확성은 .683, 대인관계어려움은 .815,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770, 진로정보부족 .761, 흥미부족 .756, 미래불안 .801, 경제적 어려움 .907, 신체적 열등감 .805, 나이 문제 .829, 기술 및 능력 부족 .809로 나타났다.

표 13. 진로장애검사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 진로장애 하위요인 | 문항수 | 문항번호 |
|-------------|-----|---------------------|
| 자기 명확성 부족 | 5 | 25, 26*, 27, 28, 29 |
| 대인관계 어려움 | 4 | 30, 31, 32*, 33 |
|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 4 | 34, 35, 36, 37 |
| 진로정보 부족 | 5 | 38, 39*, 40, 41, 42 |
| 흥미 부족 | 4 | 43, 44, 45, 46 |
| 미래 불안 | 5 | 47, 48, 49, 50, 51 |
| 경제적 어려움 | 4 | 52, 53, 54, 55 |
| 신체적 열등감 | 4 | 56, 57, 58, 59 |
| 나이 문제 | 4 | 60, 61, 62, 63 |
| 기술 및 능력 부족 | 4 | 64, 65, 66, 67 |

* 역채점 문항

사.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취약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인숙(1994)이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박지원(1985)이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통해 개발한 척도 중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 척도를 기초로 한 것이다. 박지원(1985)은 지지의 형태를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의 4가지로 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25개의 문항을 설정하였다. 김인숙(1994)은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 간에 나타난 높은 상관과 응답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를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정서적 지지 7개 문항, 정보적 지지 5개 문항, 물질적 지지 문항 4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인숙(1994)의 척도를 4점 리커트 척도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재구성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정서적 지지는 .887, 정보적 지지는 .876, 물질적 지지는 .797로 나타났다.

표 14.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 문항수 | 문항번호 |
|-------------|-----|-----------------------------------|
| 정서적 지지 | 7 | 101, 103, 106, 107, 110, 111, 116 |
| 정보적 지지 | 5 | 104, 109, 112, 113, 115 |
| 물질적 지지 | 4 | 102, 105, 108, 114 |

아. 자립지원 요구조사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에 대한 취약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조사하기 위하여 자립지원 요구조사 또한 척도에 포함시켰다. 본 척도는 신혜령 등(2008)이 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서비스 현황 및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를 기초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 결과 중요하게 나타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문항으로 구성하여 포함시켰다. 자립지원 요구조사는 총 13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 방식을 활용하여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자립지원 요구조사의 신뢰도값 Cronbach α 는 .920으로 나타났다.

자. 친가족과 관련된 부정적인 생활사건

친가족과 관련된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선욱(2002)이 Coddington(1972)의 연구에 기초하여 개발한 척도를 활용할 것이다. 10개의 생활사건은 부모의 사망(한 분만 사망, 두 분 모두 사망), 이혼(별거), 가출, 수감, 입원, 학대, 부모와 떨어져 생활한 경험, 시설보호 이전에 친척, 이웃 등의 집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생활한 경험, 형제와 떨어져 생활한 경험 등이다. 이들 생활사건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1”로 코딩한 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취약 청소년 특성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우선 본 연구

의 목적에 따라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청소년,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등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자립 관련 특성에 있어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3개 이상의 집단에 대하여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는 방식인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수행하였다.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후 집단 간 비교를 위하여 Scheffé 사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에는 SPSS 14.0 버전이 활용되었다.

5. 연구결과

가. 자립생활기술

Ansell Casey Life Skills Assessment의 척도는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돈관리기술, 주거 및 지역사회 자원 기술, 사회적 관계 기술, 직장생활 기술의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립기술평가의 Cronbach's α 는 .913으로 나타났다.

집단에 따른 자립생활기술평가 차이검증(ANOVA)을 실시한 결과 자립생활기술평가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일상생활기술 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F=10.438$,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양육시설 청소년들($M=3.01$)이 인문계고($M=2.62$), 전문계고($M=2.64$), 그룹홈($M=2.69$), 청소년쉼터($M=2.83$), 가정위탁($M=2.66$)보다 일상생활기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안학교($M=2.46$), 두드림존($M=2.47$)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보호기술 요인을 검증한 결과 $F=8.756$,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인문계고($M=3.10$), 양육시설($M=3.28$) 청소년이 전문계고($M=2.96$), 대안학교($M=2.82$), 두드림존($M=2.8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돈관리기술의 요인을 검증한 결과 $F=11.932$,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양육시설($M=2.66$) 청소년이 인문계고($M=2.20$), 전문계고($M=2.09$), 그룹홈($M=2.12$), 청소년쉼터($M=2.23$), 대안학교($M=1.97$), 두드림존($M=2.10$), 가정위탁($M=2.1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및 지역사회 자원활용기술 요인을 검증한 결과 $F=13.079$,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양육시설($M=2.64$) 청소년이 인문계고($M=2.09$),

전문계고($M=2.07$), 그룹홈($M=2.05$), 청소년쉼터($M=2.23$), 대안학교($M=2.01$), 두드림존($M=2.18$), 가정위탁($M=2.1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술의 요인을 검증한 결과 $F=6.504$,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인문계고($M=3.07$), 전문계고($M=2.98$), 양육시설($M=3.14$) 청소년이 두드림존($M=2.6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생활기술 요인을 검증한 결과 $F=10.688$,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양육시설($M=3.06$) 청소년이 인문계고($M=2.63$), 전문계고($M=2.57$), 그룹홈($M=2.60$), 청소년쉼터($M=2.69$), 대안학교($M=2.41$), 두드림존($M=2.43$), 가정위탁($M=2.7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자립생활기술의 집단 간 차이 검증표

| 종속 변수 | 집단별 | 평균 | 표준편차 | F 값/유의확률 | Scheffé |
|-------------|----------|------|------|-------------|-----------------|
| 일상 생활 기술 | 인문계고(a) | 2.62 | .57 | 10,438/.000 | g>a,b,c,d,h>e,f |
| | 전문계고(b) | 2.64 | .56 | | |
| | 그룹홈(c) | 2.69 | .49 | | |
| | 청소년쉼터(d) | 2.83 | .59 | | |
| | 대안학교(e) | 2.46 | .63 | | |
| | 두드림존(f) | 2.47 | .69 | | |
| | 양육시설(g) | 3.01 | .52 | | |
| | 가정위탁(h) | 2.66 | .57 | | |
| 자기 보호 기술 | 인문계고(a) | 3.10 | .45 | 8,756/.000 | a,g>b,e,f |
| | 전문계고(b) | 2.96 | .53 | | |
| | 그룹홈(c) | 3.02 | .52 | | |
| | 청소년쉼터(d) | 3.06 | .56 | | |
| | 대안학교(e) | 2.82 | .60 | | |
| | 두드림존(f) | 2.86 | .63 | | |
| | 양육시설(g) | 3.28 | .42 | | |
| | 가정위탁(h) | 3.06 | .56 | | |
| 돈관리 (경제) 기술 | 인문계고(a) | 2.20 | .67 | 11,392/.000 | g>a,b,c,d,e,f,h |
| | 전문계고(b) | 2.09 | .61 | | |
| | 그룹홈(c) | 2.12 | .73 | | |
| | 청소년쉼터(d) | 2.23 | .71 | | |
| | 대안학교(e) | 1.97 | .69 | | |
| | 두드림존(f) | 2.10 | .74 | | |
| | 양육시설(g) | 2.66 | .59 | | |
| | 가정위탁(h) | 2.15 | .65 | | |
| 주거 | 인문계고(a) | 2.09 | .60 | 13,079/.000 | g>a,b,c,d,e,f,h |

| | | | | | |
|---------------------------|-----------------|---------|------|-------------|-----------------|
| 및 지역 사회 자원 활용 | 전문계고(b) | 2.07 | .63 | | |
| | 그룹홈(c) | 2.05 | .62 | | |
| | 청소년쉼터(d) | 2.23 | .64 | | |
| | 대안학교(e) | 2.01 | .64 | | |
| | 두드림존(f) | 2.18 | .63 | | |
| | 양육시설(g) | 2.64 | .60 | | |
| | 가정위탁(h) | 2.15 | .60 | | |
| | 사회적 관계 기술 | 인문계고(a) | 3.07 | | |
| 전문계고(b) | | 2.98 | .57 | | |
| 그룹홈(c) | | 2.88 | .66 | | |
| 청소년쉼터(d) | | 3.02 | .58 | | |
| 대안학교(e) | | 2.85 | .67 | | |
| 두드림존(f) | | 2.69 | .71 | | |
| 양육시설(g) | | 3.14 | .52 | | |
| 가정위탁(h) | | 3.03 | .57 | | |
| 직장 생활 기술 | 인문계고(a) | 2.63 | .66 | 10.688/.000 | g)a,b,c,d,e,f,h |
| | 전문계고(b) | 2.57 | .62 | | |
| | 그룹홈(c) | 2.60 | .69 | | |
| | 청소년쉼터(d) | 2.69 | .67 | | |
| | 대안학교(e) | 2.41 | .68 | | |
| | 두드림존(f) | 2.43 | .73 | | |
| | 양육시설(g) | 3.06 | .54 | | |
| | 가정위탁(h) | 2.70 | .67 | | |

나. 청소년자기행동평가 척도

자기행동평가 척도는 해당되지 않음은 0점, 가끔 혹은 그렇다는 1점, 자주 있음은 2점으로 구성된 척도로, 6개월 이내에 자신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을 측정된 척도이다.

집단 간 자기행동평가 척도 차이검증(ANOVA)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하위영역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불안/우울 요인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F=6.507$,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전문계고($M=.55$), 청소년쉼터($M=.62$), 대안학교($M=.70$), 두드림존($M=.60$) 집단이 인문계고($M=.48$), 양육시설($M=.3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축/우울 요인을 검증한 결과 $F=4.161$,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대안학교($M=.68$) 집단이 양육시설($M=.4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위반 요인을 검증한 결과 $F=17.629$,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대안학교($M=.61$) 집단이 전문계고($M=.40$), 청소년쉼터($M=.53$), 대안학교($M=.61$), 두드림존($M=.50$)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문계고($M=.28$), 양육시설($M=.26$), 가정위탁($M=.22$)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행동 요인을 검증한 결과 $F=9.080$,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전문계고($M=.60$), 청소년쉼터($M=.71$), 대안학교($M=.70$), 두드림존($M=.65$) 집단이 인문계고($M=.49$), 그룹홈($M=.53$), 양육시설($M=.44$), 가정위탁($M=.4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자기행동평가 척도의 집단 간 차이 검증표

| 종속변수 | 집단별 | 평균 | 표준편차 | $F_{값}$ /유의확률 | Scheffé |
|-------|----------|-----|------|---------------|-----------------|
| 불안/우울 | 인문계고(a) | .48 | .37 | 6.507/.000 | b,d,e,f)a,g |
| | 전문계고(b) | .55 | .46 | | |
| | 그룹홈(c) | .52 | .39 | | |
| | 청소년쉼터(d) | .62 | .45 | | |
| | 대안학교(e) | .70 | .47 | | |
| | 두드림존(f) | .60 | .43 | | |
| | 양육시설(g) | .36 | .28 | | |
| | 가정위탁(h) | .50 | .41 | | |
| 위축/우울 | 인문계고(a) | .50 | .39 | 4.161/.000 | e)g |
| | 전문계고(b) | .56 | .46 | | |
| | 그룹홈(c) | .60 | .41 | | |
| | 청소년쉼터(d) | .66 | .52 | | |
| | 대안학교(e) | .68 | .48 | | |
| | 두드림존(f) | .61 | .44 | | |
| | 양육시설(g) | .43 | .35 | | |
| | 가정위탁(h) | .52 | .40 | | |
| 규칙위반 | 인문계고(a) | .28 | .32 | 17.629/.000 | e)b,d,e,f)a,g,h |
| | 전문계고(b) | .40 | .36 | | |
| | 그룹홈(c) | .35 | .34 | | |
| | 청소년쉼터(d) | .53 | .43 | | |
| | 대안학교(e) | .61 | .40 | | |
| | 두드림존(f) | .50 | .40 | | |
| | 양육시설(g) | .26 | .22 | | |
| | 가정위탁(h) | .22 | .23 | | |
| 공격행동 | 인문계고(a) | .49 | .34 | 9.080/.000 | b,d,e,f)a,c,g,h |
| | 전문계고(b) | .60 | .40 | | |
| | 그룹홈(c) | .53 | .35 | | |

| | | | | | |
|--|----------|-----|-----|--|--|
| | 청소년쉼터(d) | .71 | .49 | | |
| | 대안학교(e) | .70 | .40 | | |
| | 두드림존(f) | .65 | .41 | | |
| | 양육시설(g) | .44 | .29 | | |
| | 가정위탁(h) | .45 | .32 | | |

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검사는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척도로서, Cronbach's α 는 .840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집단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F=4.88$,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 검증 결과, 인문계고($M=2.93$), 양육시설($M=3.00$), 가정위탁($M=2.98$) 집단이 대안학교($M=2.66$)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자아존중감 검사의 집단 간 차이 검증표

| 종속변수 | 집단별 | 평균 | 표준편차 | F값/유의확률 | Scheffé |
|-----------|----------|------|------|-----------|---------|
| 자아 존중감 | 인문계고(a) | 2.93 | .47 | 4.88/.000 | a,g,h)e |
| | 전문계고(b) | 2.84 | .53 | | |
| | 그룹홈(c) | 2.90 | .54 | | |
| | 청소년쉼터(d) | 2.82 | .57 | | |
| | 대안학교(e) | 2.66 | .56 | | |
| | 두드림존(f) | 2.79 | .50 | | |
| | 양육시설(g) | 3.00 | .48 | | |
| | 가정위탁(h) | 2.98 | .53 | | |

라. 사회적 낙인

사회적 낙인 검사는 부정적인 사회인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4점 척도로 구성된 척도로 Cronbach's α 는 .861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집단에 따른 사회적 낙인 점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F=4.32$,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대안학교($M=2.24$) 집단이 인문계고($M=1.94$)보다 사회적 낙인의 지각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사회적 낙인 검사의 집단 간 차이 검증표

| 종속변수 | 집단별 | 평균 | 표준편차 | F값/유의확률 | Scheffé |
|-----------|----------|------|------|-----------|---------|
| 사회적 낙인 | 인문계고(a) | 1.94 | .56 | 4.32/.000 | e>a |
| | 전문계고(b) | 2.10 | .54 | | |
| | 그룹홈(c) | 2.05 | .51 | | |
| | 청소년쉼터(d) | 2.12 | .60 | | |
| | 대안학교(e) | 2.24 | .54 | | |
| | 두드림존(f) | 2.14 | .53 | | |
| | 양육시설(g) | 2.09 | .39 | | |
| | 가정위탁(h) | 1.97 | .56 | | |

마.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 검사는 6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개인이 자아에 대한 이해와 일과 직업세계와의 이해를 토대로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이다. 진로계획성, 진로태도, 자기의식, 진로행동, 독립성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능력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6으로 높게 나타났다.

진로성숙도의 집단에 따른 차이검증(ANOVA)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진로계획성 요인에 있어 집단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F=6.511$,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인문계($M=4.30$), 양육시설($M=4.42$) 집단이 전문계고($M=3.94$), 대안학교($M=3.7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태도 요인을 검증한 결과 $F=2.164$, $p=.03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사후검증 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지식 요인을 검증한 결과 $F=4.038$,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양육시설($M=4.77$) 집단이 대안학교($M=4.2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행동 요인을 검증한 결과 $F=5.781$,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양육시설($M=4.27$) 집단이 전문계고($M=3.57$), 그룹홈($M=3.61$), 대안학교($M=3.49$), 두드림존($M=3.6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성 요인을 검증한 결과 $F=3.624$, $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대안학교($M=4.64$) 집단이 전문계고($M=4.2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진로성숙도 검사의 집단 간 차이 검증표

| 종속변수 | 집단별 | 평균 | 표준편차 | F값/유의확률 | Scheffé |
|-----------|----------|------|------|------------|-----------|
| 진로 계획성 | 인문계고(a) | 4.30 | 1.05 | 6.511/.000 | a,g>b,e |
| | 전문계고(b) | 3.94 | 1.11 | | |
| | 그룹홈(c) | 3.96 | .96 | | |
| | 청소년쉼터(d) | 4.11 | 1.11 | | |
| | 대안학교(e) | 3.73 | 1.15 | | |
| | 두드림존(f) | 3.92 | 1.18 | | |
| | 양육시설(g) | 4.42 | .89 | | |
| | 가정위탁(h) | 4.25 | .93 | | |
| 진로태도 | 인문계고(a) | 4.50 | .89 | 2.164/.033 | |
| | 전문계고(b) | 4.31 | .86 | | |
| | 그룹홈(c) | 4.39 | .75 | | |
| | 청소년쉼터(d) | 4.44 | .86 | | |
| | 대안학교(e) | 4.46 | .99 | | |
| | 두드림존(f) | 4.30 | .80 | | |
| | 양육시설(g) | 4.34 | .78 | | |
| | 가정위탁(h) | 4.62 | .77 | | |
| 자기지식 | 인문계고(a) | 4.64 | .92 | 4.038/.000 | g>e |
| | 전문계고(b) | 4.44 | 1.02 | | |
| | 그룹홈(c) | 4.48 | .95 | | |
| | 청소년쉼터(d) | 4.64 | .99 | | |
| | 대안학교(e) | 4.20 | .98 | | |
| | 두드림존(f) | 4.40 | 1.26 | | |
| | 양육시설(g) | 4.77 | .80 | | |
| | 가정위탁(h) | 4.65 | .87 | | |
| 진로행동 | 인문계고(a) | 3.88 | 1.15 | 5.781/.000 | g>b,c,e,f |
| | 전문계고(b) | 3.57 | 1.20 | | |
| | 그룹홈(c) | 3.61 | 1.15 | | |
| | 청소년쉼터(d) | 3.90 | 1.21 | | |
| | 대안학교(e) | 3.49 | 1.27 | | |
| | 두드림존(f) | 3.61 | 1.25 | | |
| | 양육시설(g) | 4.27 | 1.14 | | |
| | 가정위탁(h) | 3.71 | 1.41 | | |
| 독립성 | 인문계고(a) | 4.45 | .89 | 3.624/.001 | e>b |
| | 전문계고(b) | 4.21 | .87 | | |
| | 그룹홈(c) | 4.28 | .80 | | |
| | 청소년쉼터(d) | 4.54 | .78 | | |
| | 대안학교(e) | 4.64 | .94 | | |
| | 두드림존(f) | 4.42 | 1.00 | | |
| | 양육시설(g) | 4.41 | .80 | | |
| | 가정위탁(h) | 4.31 | .85 | | |

바. 진로장애검사

진로장애검사는의 척도는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를 계획, 결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의 장애요인에 대해 청소년들의 지각정도가 높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Cronbach's α 는 .927로 높게 나타났다.

집단에 따른 자기명확성 부족 요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F=3.13$,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사후검증 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어려움 요인을 검증한 결과 $F=2.07$, $p=.044$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사후검증 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요인을 검증한 결과 $F=1.64$ $p=.120$ 으로 집단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부족 요인을 검증한 결과 $F=4.67$,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전문계고($M=2.45$) 집단이 양육시설 ($M=2.18$) 집단보다 진로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부족 요인을 검증한 결과 $F=2.437$ $p=.018$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사후검증 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불안 요인도 $F=1.906$ $p=.065$ 로 집단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 요인을 검증한 결과 $F=23.686$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그룹홈($M=2.52$), 청소년쉼터($M=2.44$), 두드림존($M=2.50$), 양육시설($M=2.55$), 가정위탁($M=2.65$) 집단이 인문계고($M=1.86$), 전문계고($M=2.24$), 대안학교($M=2.06$) 집단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열등감 요인을 검증한 결과 $F=4.298$,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양육시설($M=1.91$) 집단이 인문계고($M=1.62$)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문제 요인을 검증한 결과 $F=2.537$ $p=.014$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사후검증 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및 능력부족의 요인을 검증한 결과 $F=5.890$,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결과, 전문계고($M=2.63$) 집단이 인문계고($M=2.27$)보다 기술 및 능력 부족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진로장애검사의 집단 간 차이 검증표

| 종속변수 | 집단별 | 평균 | 표준편차 | F값/유의확률 | Scheffé |
|-------------------|----------|------|------|------------|---------|
| 자기 명확성 부족 | 인문계고(a) | 2.54 | .48 | 3.13/.003 | |
| | 전문계고(b) | 2.63 | .48 | | |
| | 그룹홈(c) | 2.70 | .51 | | |
| | 청소년쉼터(d) | 2.49 | .55 | | |
| | 대안학교(e) | 2.61 | .53 | | |
| | 두드림존(f) | 2.56 | .56 | | |
| | 양육시설(g) | 2.45 | .52 | | |
| | 가정위탁(h) | 2.50 | .65 | | |
| 대인관계 어려움 | 인문계고(a) | 2.05 | .61 | 2.07/.044 | |
| | 전문계고(b) | 2.11 | .65 | | |
| | 그룹홈(c) | 2.04 | .73 | | |
| | 청소년쉼터(d) | 2.17 | .75 | | |
| | 대안학교(e) | 2.17 | .75 | | |
| | 두드림존(f) | 2.22 | .66 | | |
| | 양육시설(g) | 2.00 | .60 | | |
| | 가정위탁(h) | 1.93 | .68 | | |
|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 인문계고(a) | 1.91 | .70 | 1.64/.120 | |
| | 전문계고(b) | 2.03 | .67 | | |
| | 그룹홈(c) | 1.98 | .60 | | |
| | 청소년쉼터(d) | 1.82 | .66 | | |
| | 대안학교(e) | 1.87 | .64 | | |
| | 두드림존(f) | 1.95 | .70 | | |
| | 양육시설(g) | 2.02 | .62 | | |
| | 가정위탁(h) | 1.96 | .68 | | |
| 진로정보 부족 | 인문계고(a) | 2.29 | .62 | 4.67/.000 | b>g |
| | 전문계고(b) | 2.45 | .60 | | |
| | 그룹홈(c) | 2.45 | .61 | | |
| | 청소년쉼터(d) | 2.21 | .59 | | |
| | 대안학교(e) | 2.44 | .62 | | |
| | 두드림존(f) | 2.26 | .50 | | |
| | 양육시설(g) | 2.18 | .49 | | |
| | 가정위탁(h) | 2.34 | .67 | | |
| 흥미부족 | 인문계고(a) | 1.98 | .65 | 2.437/.018 | |
| | 전문계고(b) | 2.14 | .59 | | |
| | 그룹홈(c) | 2.14 | .65 | | |
| | 청소년쉼터(d) | 2.02 | .64 | | |
| | 대안학교(e) | 2.07 | .63 | | |
| | 두드림존(f) | 2.10 | .57 | | |
| | 양육시설(g) | 2.01 | .60 | | |

| | | | | | |
|-----------------|----------|------|-----|-------------|-----------------|
| | 가정위탁(h) | 1.95 | .60 | | |
| 미래불안 | 인문계고(a) | 2.46 | .68 | 1,906/.065 | |
| | 전문계고(b) | 2.49 | .67 | | |
| | 그룹홈(c) | 2.47 | .64 | | |
| | 청소년쉼터(d) | 2.33 | .71 | | |
| | 대안학교(e) | 2.29 | .68 | | |
| | 두드림존(f) | 2.29 | .66 | | |
| | 양육시설(g) | 2.38 | .61 | | |
| | 가정위탁(h) | 2.46 | .70 | | |
| 경제적 어려움 | 인문계고(a) | 1.86 | .70 | 23,686/.000 | c,d,f,g,h)a,b,e |
| | 전문계고(b) | 2.24 | .75 | | |
| | 그룹홈(c) | 2.52 | .74 | | |
| | 청소년쉼터(d) | 2.44 | .73 | | |
| | 대안학교(e) | 2.06 | .70 | | |
| | 두드림존(f) | 2.50 | .75 | | |
| | 양육시설(g) | 2.55 | .73 | | |
| | 가정위탁(h) | 2.65 | .84 | | |
| 신체적 열등감 | 인문계고(a) | 1.62 | .65 | 4,298/.000 | g)a |
| | 전문계고(b) | 1.82 | .63 | | |
| | 그룹홈(c) | 1.84 | .73 | | |
| | 청소년쉼터(d) | 1.71 | .59 | | |
| | 대안학교(e) | 1.82 | .64 | | |
| | 두드림존(f) | 1.86 | .64 | | |
| | 양육시설(g) | 1.91 | .61 | | |
| | 가정위탁(h) | 1.70 | .65 | | |
| 나이문제 | 인문계고(a) | 1.78 | .76 | 2,537/.014 | |
| | 전문계고(b) | 1.96 | .73 | | |
| | 그룹홈(c) | 2.02 | .77 | | |
| | 청소년쉼터(d) | 1.94 | .69 | | |
| | 대안학교(e) | 1.96 | .75 | | |
| | 두드림존(f) | 1.95 | .67 | | |
| | 양육시설(g) | 2.02 | .59 | | |
| | 가정위탁(h) | 1.84 | .76 | | |
| 기술 및 능력부족 | 인문계고(a) | 2.27 | .72 | 5,890/.000 | b)a |
| | 전문계고(b) | 2.63 | .72 | | |
| | 그룹홈(c) | 2.51 | .69 | | |
| | 청소년쉼터(d) | 2.47 | .74 | | |
| | 대안학교(e) | 2.45 | .74 | | |
| | 두드림존(f) | 2.40 | .77 | | |
| | 양육시설(g) | 2.37 | .65 | | |
| | 가정위탁(h) | 2.51 | .81 | | |

사. 사회적 지지

사회적지지 검사는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 는 .944로 높게 나타났다.

집단에 따른 사회적지지 차이검증(ANOVA)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하였다. 취약 청소년 집단에 따라 정서적지지 요인을 검증한 결과 $F=3.74$, $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사후검증 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적지지 요인을 검증한 결과 $F=5.55$,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그룹홈($M=3.13$), 청소년쉼터($M=3.09$), 양육시설($M=3.06$) 집단이 대안학교($M=2.79$), 두드림존($M=2.7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적지지 요인을 검증한 결과 $F=6.77$,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인문계고($M=2.75$), 그룹홈($M=2.82$), 가정위탁($M=2.83$) 집단이 대안학교($M=2.44$), 두드림존($M=2.3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사회적지지 검사의 집단 간 차이 검증표

| 종속변수 | 집단별 | 평균 | 표준편차 | F값/유의확률 | Scheffé |
|-----------|----------|------|------|-----------|-----------|
| 정서적 지지 | 인문계고(a) | 3.04 | .59 | 3.74/.001 | |
| | 전문계고(b) | 2.99 | .61 | | |
| | 그룹홈(c) | 3.08 | .64 | | |
| | 청소년쉼터(d) | 3.09 | .64 | | |
| | 대안학교(e) | 2.79 | .65 | | |
| | 두드림존(f) | 2.78 | .75 | | |
| | 양육시설(g) | 3.02 | .44 | | |
| | 가정위탁(h) | 3.08 | .52 | | |
| 정보적 지지 | 인문계고(a) | 2.99 | .61 | 5.55/.000 | c,d,g>e,f |
| | 전문계고(b) | 2.92 | .59 | | |
| | 그룹홈(c) | 3.13 | .62 | | |
| | 청소년쉼터(d) | 3.09 | .68 | | |
| | 대안학교(e) | 2.79 | .71 | | |
| | 두드림존(f) | 2.71 | .76 | | |
| | 양육시설(g) | 3.06 | .48 | | |
| | 가정위탁(h) | 3.06 | .55 | | |
| 물질적 지지 | 인문계고(a) | 2.75 | .61 | 6.77/.000 | a,c,h>e,f |
| | 전문계고(b) | 2.61 | .66 | | |
| | 그룹홈(c) | 2.82 | .61 | | |
| | 청소년쉼터(d) | 2.73 | .69 | | |

| | | | | | |
|--|---------|------|-----|--|--|
| | 대안학교(e) | 2.44 | .70 | | |
| | 두드림존(f) | 2.39 | .71 | | |
| | 양육시설(g) | 2.70 | .53 | | |
| | 가정위탁(h) | 2.83 | .61 | | |

아. 자립지원 요구조사

집단에 따라 자립지원 요구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F=3.17, p=.002$ 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양육시설 청소년($M=42.26$)이 대안학교 청소년($M=38.10$)보다 자립지원 요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양육시설 청소년이 대안학교 청소년보다 자립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자립지원 요구조사의 집단 간 차이 검증표

| 종속변수 | 집단별 | 평균 | 표준편차 | F값/유의확률 | Scheffé |
|--------------|----------|-------|------|-----------|---------|
| 자립지원 요구조사 | 인문계고(a) | 40.78 | 7.60 | 3.17/.002 | g>e |
| | 전문계고(b) | 40.38 | 7.25 | | |
| | 그룹홈(c) | 41.17 | 6.39 | | |
| | 청소년쉼터(d) | 41.68 | 7.26 | | |
| | 대안학교(e) | 38.10 | 7.72 | | |
| | 두드림존(f) | 39.63 | 9.08 | | |
| | 양육시설(g) | 42.26 | 6.63 | | |
| | 가정위탁(h) | 41.74 | 7.16 | | |

자. 부정적인 생활사건

부정적인 생활사건에서 집단 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F=35.52, p=.000$ 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사후검증 결과, 그룹홈($M=4.98$), 청소년쉼터($M=4.47$) 청소년이 대안학교($M=2.59$), 전문계고($M=1.67$), 인문계고($M=1.33$) 청소년보다 부정적인 생활사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룹홈($M=4.98$, 청소년쉼터($M=4.47$), 가정위탁($M=4.06$), 양육시설($M=3.73$), 두드림존($M=3.41$) 청소년이 전문계($M=1.67$), 인문계($M=1.33$) 청소년보다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취약 청소년으로 분류된 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보다 친가족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3. 부정적인 생활사건의 집단 간 차이 검증표

| 종속변수 | 집단별 | 평균 | 표준편차 | F값/유의확률 | Scheffé |
|--------------|----------|------|------|------------|----------------------------|
| 부정적인 생활사건 | 인문계고(a) | 1,33 | 2,92 | 35.52/.000 | c,d)e,b,a c,d,h,g,f)b,a |
| | 전문계고(b) | 1,67 | 2,85 | | |
| | 그룹홈(c) | 4,98 | 2,83 | | |
| | 청소년쉼터(d) | 4,47 | 2,93 | | |
| | 대안학교(e) | 2,59 | 3,23 | | |
| | 두드림존(f) | 3,41 | 3,06 | | |
| | 양육시설(g) | 3,73 | 2,86 | | |
| | 가정위탁(h) | 4,06 | 2,14 | | |

6. 특성조사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조사에서는 취약 청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립생활기술, 진로장애, 자아존중감, 사회적 낙인, 사회적지지, 진로성숙도, 자립지원 요구조사, 청소년 자기행동평가를 통한 정서 및 행동문제를 일반청소년과 함께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조사에 포함된 취약 청소년집단으로는 고등학교 연령의 양육시설 청소년, 가정위탁 청소년, 그룹홈 청소년, 쉼터 청소년 및 대안학교와 두드림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학업중단청소년 집단이었으며, 일반청소년들은 인문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생이었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생활기술과 관련하여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돈관리기술, 주거와 지역사회자원 활용, 사회적 관계기술, 직장생활기술의 모든 영역에서 양육시설의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기술 수준이었으며, 인문계 고등학생은 주거와 지역사회자원 활용기술과 직장생활기술은 양육시설 청소년보다 낮으나 다른 영역에서는 유사함을 나타냈다. 반면 학업중단청소년들인 두드림존 참여 청소년과 대안학교 청소년들은 이들 영역에서 가장 낮은 기술수준을 나타내어 이들 청소년들의 자립생활기술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청소년자기행동평가를 통해 청소년들의 불안/우울, 위축/우울, 규칙위반, 공격행동 문제에 대해 집단비교를 한 결과, 우울/불안은 전문계 고등학교, 청소년쉼터,

대안학교와 학업중단(두드림존) 청소년들에 비해 인문계 고등학교 및 양육시설 청소년들이 우울/불안 수준이 낮았다. 유사하게, 위축/우울에 있어서도 대안학교 청소년들에 비해 양육시설 청소년들이 위축/우울수준이 낮았으며, 규칙위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대안학교 청소년들의 규칙위반 수준이 가장 높았고, 인문계 고등학생과 양육시설, 가정위탁 청소년들이 낮은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공격행동과 관련하여도 인문계 고등학생과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등의 청소년들이 전문계 고등학생과 청소년쉼터, 대안학교와 학업중단(두드림) 청소년들에 비해 공격행동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셋째, 부정적 생활사건에 있어서, 예상과 마찬가지로 그룹홈, 양육시설, 가정위탁, 학업중단(두드림존), 대안학교 청소년들이 인문계고와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 청소년들에 비해 부정적 생활사건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넷째,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낙인 지각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 영역에서는 대안학교 재학 청소년들이 인문계 고등학교, 양육시설 청소년과 가정위탁 청소년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낙인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도 대안학교 청소년들이 인문계 재학 청소년들에 비해 부정적 사회적 인식을 유의미하게 많이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섯째, 진로와 관련된 영역으로 진로성숙도와 진로장애검사를 조사한 결과, 진로 계획성에 있어서는 인문계 재학 청소년들과 양육시설 청소년들이 전문계 고등학생과 대안학교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계획성을 나타내었고, 진로관련 자기지식과 진로행동은 양육시설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반면, 독립성과 관련하여서는 대안학교 청소년들이 전문계 고등학교 청소년들보다 독립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진로장애와 관련된 조사결과에서는 진로정보 부족에 있어서는 전문계 고등학생이 양육시설 청소년에 비해, 기술 및 능력부족과 관련하여서는 전문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보고하였으며, 신체적 열등감의 경우에는 양육시설 청소년들이 인문계 고등학교 청소년들에 비해 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반면, 그룹홈, 청소년쉼터, 양육시설 거주 청소년, 가정위탁 청소년과 학업중단(두드림존) 청소년들이 인문계 고등학생, 전문계 고등학생, 대안학교 학생들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 관련 진로장애를 유의미하게 호소하였다.

여섯째,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그룹홈, 청소년쉼터 청소년과 양육시설 청소년들이 대안학교 및 학업중단(두드림) 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은 정보적지지 지각을 나타

내었으며, 물질적지지 지각에 있어서는 인문계 고등학생과 그룹홈 청소년, 가정위탁 청소년들이 대안학교 청소년과 학업중단(두드림) 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게 지각하였다. 정서적지지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집단차가 없었다.

일곱째, 자립지원에 대한 요구는 또한 양육시설의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것에 비해 대안학교 청소년들에 있어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지원을 경험해온 양육시설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한 욕구수준이 높은 반면, 이러한 지원들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개인 및 가정, 학교에서의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지원에 대한 욕구수준이 가장 낮았다. 즉, 이들 청소년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이 경험하고 어려움을 시스템 및 환경적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 어려움으로 귀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이 도출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번 조사결과에서 가장 인상적이면서도 놀라운 결과는 인문계 고등학생과 함께 양육시설 청소년들의 자립생활기술 수준, 정서적 안정감(우울,불안,위축,공격 등), 자아존중감, 진로성숙수준, 사회적지지 영역이 함께 조사된 다른 집단의 청소년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로 대표적인 자립 취약 청소년으로 인식되어 오던 이들 양육시설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자립과 관련된 전반적 영역, 즉, 정서적 안정감과 자아존중감, 자립생활기술수준, 진로성숙 수준 등에서 가장 안정적인 집단인 인문계 고등학생과 유사한 안정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2005년부터 집중적으로 양육시설 청소년들에게 지원되어온 다양한 자립생활 기술 훈련과 심리상담 및 치료, 조기부터 실시되는 진로관련 교육 등이 효과를 나타낸 결과일 것으로 시사되며, 이들 취약 청소년들에게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이들에게 치명적으로 결핍될 수밖에 없는 가정환경을 보완하고 이들이 건강하고 성숙한 성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유사한 취약성을 지니고 있으나 자립생활 기술훈련이나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그룹홈, 가정위탁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정서적 안정감, 자아존중감, 진로성숙수준 및 정보지지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의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대상의 특성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청소년들은 이러한 자립과 관련된 조기개입의 혜택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에게도 이와 같은 진로관련 교육과 지원이 조기부터 주어 진다면 이후의 자립역량이 월등히 강화될 것으로 시사된다.

셋째, 반면 대안학교와 학업중단(두드림존)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자립관련 영역에서 가장 취약함을 나타내었다.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돈관리 기술, 사회관계 기술 등의 자립생활기술 수준도 가장 낮았으며, 불안/우울과 위축/우울 수준은 높고, 공격수준은 높아 정서적으로도 가장 불안정한 집단들이었다. 또한 대안학교 청소년들은 사회적 낙인에 대해서도 민감하였다. 진로와 관련하여서도 진로계획성, 진로에 대한 자기지식, 진로행동 등의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대안학교 청소년들이 오히려 혼란스럽고 성숙되지 못한 상태를 호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립지원과 관련된 요구조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요구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중단 및 대안학교 청소년들은 정서적불안정성, 자립관련 기술 부족, 진로성숙도 부족 등 자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장 큰 집단으로 여겨지며, 이들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자립지원 대책과 지원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청소년쉼터 청소년들의 경우 성격상 양육시설 및 그룹홈, 가정위탁 청소년들과 다르며, 특성 조사에서 그 특성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으나 대상특성으로 보나 지원방식으로 보나 다소 애매모호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쉼터의 청소년들은 부모 혹은 양육자와의 갈등이 심각하며, 주거가 불안정한 것과 함께 정서안정성, 학업기술, 진로성숙 수준, 사회기술 수준이 모두 낮은 편에 속하는 청소년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기관 적용에 어렵고, 쉼터 등의 시설에 장기거주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들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현재 제한적이고 열악한 편이다. 따라서 이들 청소년에 대한 기관 적용단계와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자립지원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집중적인 지원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V.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에 대한 현장전문가 의견 조사

1. 현장전문가 의견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자립지원에 대한 법,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나, 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전문가들은 자립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나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장전문가들이 자립지원 방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자립지원 모형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구상하기 위하여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방안에 관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상황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책대안에 대한 탐색이 어려울 때,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주관적·직관적 방법이다(노승용, 2006). 델파이 조사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집·교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특히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여 델파이 조사에 참여하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환류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전문가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전문가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에 필요한 구성요소로 활용하였다. 또한 양육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쉼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대안학교, 연구자 등 현장전문가들의 집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자립지원 서비스의 차이가 있는지 또한 분석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델파이 1차 조사를 위해 선정된 현장전문가들은 총 163명이었다. 우선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한국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서울시대안교육지원센터, 한국청소년상담원을 통해 취약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에 근무하는 실무자들 중 청소년 자립과 관련된 근무 경험이 있거나 청소년 자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실무자들을 추천받았다. 각 집단별로 15명에서 33명의 현장전문가들을 추천받았으며, 취약 청소년 자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연구자 25명 역시 연구대상으로 포함시켰다.

163명의 현장전문가에게 1차 델파이 조사를 발송한 결과 총 72명의 현장전문가가 델파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현장전문가의 집단 별 분포를 살펴보면, 양육시설이 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위탁 14명, 그룹홈 13명, 쉼터 10명, 청소년상담지원센터 9명, 연구자 5명, 대안학교 3명으로 나타났다(표 24).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자가 19명, 여자가 53명으로 여자가 많았으며, 연령은 25세~30세가 16명(22.2%), 31세~35세가 14명(19.4%), 36세~40세가 11명(15.3%), 41세~45세가 13명(18.1%), 46세~50세가 7명(9.7%), 51세 이상이 10명(13.9%), 무응답 1명(1.4%)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학력은 대졸이 45명(62.5%), 석사 졸업이 20명(27.8%), 박사 졸업이 5명(6.9%), 무응답 2명(2.8%)으로 분포하였다. 현장전문가들의 실무 경력은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이 21명(29.2%)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 7년 미만이 13명(18.1%), 10년 이상이 15명(20.8%), 7년 이상 10년 미만이 10명(13.9%), 1년 이상 3년 미만이 10명(13.9%), 1년 미만이 3명(4.2%)으로 나타났다.

표 24. 델파이 참여자 집단 별 분포

| 구분 | 양육 시설 | 가정 위탁 | 그룹홈 | 쉼터 | 상담지원센터 | 연구자 | 대안 학교 | 총합 |
|----|-------|-------|-----|----|--------|-----|-------|----|
| N | 18 | 14 | 13 | 10 | 9 | 5 | 3 | 72 |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5월까지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델파이 조사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위해 3종류의 조사도구가 제작되었다. 첫 번째는 델파이 1차 조사 질문지로서, 향후 취약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자유기술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제 1차 델파이 설문지가 구조화, 조직화, 세분화 되어 있을 경우 응답자의 반응범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서영인, 2008), 개방형 질문으로 제시하여 현장전문가들이 자립지원 방안에 관해 가진 다양한 의견들이 수집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두 번째는 델파이 2차 조사 질문지로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의견들을 통합하여 제작하였다. 2차 질문지는 유사한 문항끼리 영역을 나누고, 각 문항에서 나타난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5점: 매우 동의함)로 평정하도록 구성하였다.

세 번째는 델파이 3차 조사 질문지로서 2차 델파이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각 문항의 평균 및 사분위범위를 제시하여 현장전문가들의 최종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2차 조사 질문지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질문지에 2차 조사 결과 나타난 평균을 제시하고, 사분위범위를 리커트 척도 상에 음영으로 표시하여,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 분포를 고려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차, 2차, 3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는 현장전문가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졌고,

표 25. 델파이 조사 내용 및 응답률

| 구분 | 조사기간 | 내 용 | 배포 형태 | 표집 인원 | 응답 인원 | 응답 률 |
|---------|-------------------|--------------------------------|--------|-------|-------|------|
| 제1차 델파이 | 2010. 3. 26-4. 8 | 개방형 질문형태의 자립지원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e-mail | 163명 | 72명 | 45% |
| 제2차 델파이 | 2010. 4. 16-4. 27 | 1차 델파이 조사결과로 나온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 | e-mail | 72명 | 70명 | 98% |
| 제3차 델파이 | 2010. 4. 30-5. 13 | 2차 델파이 조사결과에 기초한 최종의견 수집 | e-mail | 70명 | 56명 | 80% |

다시 이메일 답장을 통해 의견을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델파이 조사 진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응답률은 표 25에 기술된 바와 같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1, 2, 3차 델파이 조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되었다. 첫째, 전문가들에게 델파이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종합한 결과 총 400여개의 의견이 나왔으며, 비슷한 의견끼리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총 75개의 의견을 도출하였다. 75개의 의견들을 유사한 영역이나 항목으로 분류하여 총 1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2차 설문 결과는 5점 리커트 상에 나타난 응답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기술통계 분석에는 SPSS 12.0버전이 활용되었다. 셋째, 3차 설문 역시 2차 설문 자료 분석과 같은 방식으로 회수하여, 회수된 설문지의 기술통계치를 SPSS 12.0버전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양육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대안학교, 학계 등 현장전문가의 소속집단 별로 자립지원 방안에 대한 동의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간에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수행하였다. 일원변량분석에도 SPSS 12.0 버전이 활용되었다.

5. 연구결과

1, 2, 3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총 72명의 현장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총 40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의견이 수집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나타난 각 의견은 통합, 분류 과정을 거쳐 1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델파이 2차 조사 결과, 70명의 현장전문가들은 1차 조사를 기초로 만들어진 14개 영역의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에 대하여 대체로 동의하고, 의견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6명의 현장전문가가 참여한 3차 조사 결과, 각 의견에 대한 표준편차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 현장전문가들이 자립지원 방안에 관해 높은 합의에 이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2차, 3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대안학교, 연구자들 간의 의견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모든 그룹에서 각 의견에 대한 동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 제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현장전문가들에게 델파이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내용을 종합한 결과 총 400여 개의 의견이 수집되었다. 비슷한 내용을 합치고 수정한 결과, 표 26과 같이 최종 75개의 의견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자립지원 정책 강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후관리, 자립지원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자립정착금 지원의 개선, 주거공간 지원의 확대 및 개선, 법률·의료 지원 강화, 친부모 관련 대응 강화, 자립준비 프로그램의 체계 구축 및 운영,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서비스 강화, 학업지원 강화, 사회기술 역량 함양, 경제교육 강화, 직업준비 및 취업지원 시스템 강화 등에 관한 의견으로 나뉘었다.

표 26.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영역 | 내용 |
|-----------------------------|---|
| 1) 자립지원 정책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관련법에 자립지원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 자립준비지원을 위한 총괄 운영기관 설치가 필요하다. • 자립지원 유관기관(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상담지원센터 등)간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 정부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자립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 자립준비지원을 위한 부처 내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 • 체계적인 자립준비를 위한 장기적 자립지원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 기업에서의 취약 청소년의 채용비율 의무화, 이에 따른 세제혜택 등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 • 자립지원 정책 홍보를 통한 일반인들의 자립지원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 취약 청소년의 자립지원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
|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후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지원과 관련된 통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 시설 퇴소 이후, '사례관리 의무화' 법령이 추가되어야 한다. • 퇴소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
| 3) 자립지원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준비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진로 및 상담 전문가)의 확대 및 충원이 필요하다. • 자립전담요원(아동양육시설)의 업무집중화가 필요하다. • 자립지원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급여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 보호유형에 따른 자립지원 서비스 차등화를 해소하여야 한다. |
| 4) 자립정착금 지원의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정착금을 현재수준보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 자립정착금 지원이 아동시설뿐 아니라 청소년 시설(예, 쉼터)의 청소년들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발달계좌(CDA) 사업 강화 및 확대를 위한 적극적 홍보와 후원자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 자립정착금 지원 시,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지급방법을 다양화(일시지급, 일정기간 단계별 지급 등)해야 한다. • 자립정착금 사용과 관련된 지속적인 사전교육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자립전담요원의 적절한 지도와 개입이 필요하다. |
| 5) 주거공간 지원의 확대 및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지원시설(舊 자립생활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 직업교육을 받는 동안 시설 청소년의 입소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 대학졸업 전 군입대 시 퇴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군전역 후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 • 청소년 시설(예, 쉼터) 퇴소 청소년들에게도 2~3년 정도의 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 퇴소 전 자립을 체험할 수 있는 중간 형태의 시설 및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 취약 청소년들에게 현실적 수준의 전세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 • 전세주택 지원이 대학 졸업 시(만24세)까지도 가능해야 한다. • 취약 청소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의무 비율 도입이 필요하다. • 저렴하면서도 청소년들의 기호에 맞는(예, 원룸 형태) 임대주택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 취약 청소년을 위한 전세주택 서비스 체계(복잡한 계약과정, 거주지 변경에 따른 재신청 문제 등)가 개선되어야 한다. • 취약 청소년을 위한 주거지원 관련 정보(주택 정보, 신청 방법 등) 제공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 • 취약 청소년을 위한 부동산 계약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
| 6) 법률, 의료 지원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소 후 일정 기간 동안 법률 정보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 퇴소 후 취업 시까지는 의료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
| 7) 친부모 관련 대응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친부모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 청소년에 대한 친부모의 양육책임 강화가 법제화 되어야 한다. • 친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재형성하기 위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 퇴소 후 연고자(친부모 및 친인척)로부터의 피해가능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 8) 자립준비 프로그램 체계 구축 및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자립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이 확충되어야 한다. • 취약 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 시부터 자립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 취약 청소년에게 목표와 비전을 심어주어 자립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취약 청소년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 자립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욕구 파악이 중요하다. |
| 9)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시설, 그룹홈, 쉼터 등 서비스 사각지대에 심리치료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정서적 문제해결을 위한 치료비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게임중독이나 약물, 흡연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 지적장애(경계선 지능 포함) 및 신체장애 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 성폭력, 성매매 등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 10)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서비스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구파악 및 목표설정을 위한 진로탐색·진로발달검사,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의 진로설계서비스가 필요하다. •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
| 11) 학업 지원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학력(인가)형 특성화 대안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 • 검정고시 학원과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 취약 청소년의 욕구(학원, 예체능교육, 자격증)에 맞는 교육 바우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장기 학습지원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1 학습이 제공되어야 한다. • 대학등록금 지원이 청소년시설(예, 쉼터) 청소년들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 비진학 청소년에 특화된 기초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개별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서비스(역사탐방, 유적지 여행, 박물관 및 도서관 견학 등)가 확대되어야 한다. |
| 12) 사회기술 역량 함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에서 체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기술훈련(신체청결, 청소, 세탁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또래관계와 집단생활(예, 보이스카웃)을 통한 사회적 학습이 필요하다. • 사회생활에 필요한 대인관계(직장 상사 및 동료) 기본 예절 및 규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및 갈등상황 대처, 분노조절 등과 관련된 사회기술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 1:1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생활 적응을 도와야 한다. |
| 13) 경제교육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경제교육(초등·중등·고등)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행동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 저축, 가계부 작성, 은행업무(통장, 적금, 공과금 납부) 등 실생활 속의 경제교육과 체험이 필요하다. |
| 14) 직업준비 및 취업지원 시스템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기술훈련 관련 정보가 수시로 제공되어야 한다. • 건전한 아르바이트 및 취업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창업시스템 구축을 통해 창업자금지원과 창업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 취업 후 실직·전직 시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 직업체험, 훈련, 인턴십, 취업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취업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

-
- 대학 미진학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시스템(조기 기술교육, 자격증 취득 등)이 필요하다.
 - 취약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이 확대되고,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
-

나. 집단 간 차이 검증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나타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에 있어 양육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대안학교, 연구자 등 소속집단 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대안학교에 소속된 현장전문가가 3명으로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같은 학업중단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합쳐서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영역별 의견에 대한 동의수준에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부록2). 2차 델파이 조사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집단 간 인원수의 차이가 있었고, 각 집단 별 인원수가 적었기 때문에 일원변량분석 결과 나타난 통계적 검증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 제2·3차 델파이 조사 결과

1) 자립지원 정책 강화

향후 취약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에 관한 의견 중 자립지원 정책 강화와 관련된 의견에 대한 2차, 3차 델파이 조사 응답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3차 델파이 조사에서 2차 델파이 조사 때보다 표준편차가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나 현장전문가들이 각 의견에 대해 합의해가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각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가 매우 높아, 자립지원 정책 강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관련법에 장기적 자립지원 정책 개발(4.78), 정부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4.74), 자립지원 유관기관 간의 협력 강화(4.67), 부처내 기금 마련(4.67), 자립지원 규정 명시(4.56), 자립지원 관련 연구의 활성화(4.39), 자립준비지원을 위한 총괄 운영기관 설치(4.31), 정책 홍보를 통한 일반인들의 자립

지원 인식 제고(4.26), 기업에서의 채용비율 의무화 및 세제혜택 등 일자리 창출 정책(4.07) 등에 관한 의견이 종합되었다.

표 27. 자립지원 정책 강화

| 내 용 | 2차 델파이 | | 3차 델파이 | |
|---|--------|-------|--------|-------|
|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 체계적인 자립준비를 위한 장기적 자립지원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 4.72 | 0.45 | 4.78 | 0.42 |
| 정부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자립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 4.68 | 0.50 | 4.74 | 0.44 |
| 자립준비지원을 위한 부처 내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 | 4.57 | 0.68 | 4.67 | 0.51 |
| 자립지원 유관기관(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상담지원센터 등)간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 4.57 | 0.63 | 4.67 | 0.48 |
| 청소년관련법에 자립지원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 4.55 | 0.56 | 4.56 | 0.50 |
| 취약 청소년의 자립지원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 4.43 | 0.65 | 4.39 | 0.53 |
| 자립준비지원을 위한 총괄 운영기관 설치가 필요하다. | 4.21 | 0.96 | 4.31 | 0.54 |
| 자립지원 정책 홍보를 통한 일반인들의 자립지원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 4.12 | 0.84 | 4.26 | 0.62 |
| 기업에서의 취약 청소년의 채용비율 의무화, 이에 따른 세제혜택 등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 | 4.18 | 1.02 | 4.07 | 0.89 |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후관리

표 2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의견들로는 자립지원과 관련된 통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4.37), 퇴소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네트워크 형성(4.24), 시설 퇴소 이후 ‘사례관리 의무화’ 법령 추가(3.33)로 나타났다. 취약 청소년의 자립과 관련된 지원들을 통합적, 체계적,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성과, 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요구는 높은 반면, ‘사례관리 의무화’를 법령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는 ‘보통이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후관리

| 내 용 | 2차 델파이 | | 3차 델파이 | |
|------------------------------------|--------|-------|--------|-------|
|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 자립지원과 관련된 통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 4.34 | 0.64 | 4.37 | 0.52 |
| 퇴소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 4.12 | 0.76 | 4.24 | 0.55 |
| 시설 퇴소 이후, ‘사례관리 의무화’ 법령이 추가되어야 한다. | 3.47 | 0.95 | 3.33 | 0.64 |

3) 자립지원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표 2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립지원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여부도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지원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에서는 자립지원 실무자들의 급여 현실화(4.63), 자립준비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의 확대 및 충원(4.59), 자립전담요원의 업무집중화(4.43)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립지원 정책과 서비스를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실무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29. 자립지원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 내 용 | 2차 델파이 | | 3차 델파이 | |
|--|--------|-------|--------|-------|
|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 자립지원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급여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 4.54 | 0.74 | 4.63 | 0.49 |
| 자립준비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진로 및 상담 전문가)의 확대 및 충원이 필요하다. | 4.53 | 0.78 | 4.59 | 0.50 |
| 자립전담요원(아동양육시설)의 업무집중화가 필요하다. | 4.22 | 0.97 | 4.43 | 0.54 |

4) 자립정착금 지원의 개선

자립정착금 지원의 개선에 대한 의견들 역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표 3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전교육과 사후관리(4.57), 아동발달계좌 사업 강화 및 확대를 위한 홍보와 후원자 발굴(4.56), 자립정착금 지급방법의 다양화(4.55), 자립정착금의 상향조정(4.52), 자립정착금 사용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급 시, 자립전담요원의 적절한 지도와 개입(4.49), 청소년 시설로의 자립정착금 확대(4.37), 보호유형에 따른 자립지원 서비스 차등화 해소(4.30)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각 의견에 대한 동의여부도 높았다. 이러한 의견들은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한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며, 자립정착금 지급 방식이 다양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표 30. 자립정착금 지원의 개선

| 내 용 | 2차 델파이 | | 3차 델파이 | |
|---|--------|-------|--------|-------|
|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 자립정착금 사용과 관련된 지속적인 사전교육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 4.49 | 0.66 | 4.57 | 0.50 |
| 아동발달계좌(CDA) 사업 강화 및 확대를 위한 적극적 홍보와 후원자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 4.41 | 0.72 | 4.56 | 0.54 |

| | | | | |
|--|------|------|------|------|
| 자립정착금 지원 시,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지급방법을 다양화(일시지급, 일정기간 단계별 지급 등)해야 한다. | 4.47 | 0.84 | 4.55 | 0.63 |
| 자립정착금을 현재수준보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 4.43 | 0.78 | 4.52 | 0.61 |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자립전담요원의 적절한 지도와 개입이 필요하다. | 4.44 | 0.72 | 4.49 | 0.54 |
| 자립정착금 지원이 아동시설뿐 아니라 청소년 시설(예, 쉼터)의 청소년들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 4.22 | 0.88 | 4.37 | 0.71 |
| 보호유형에 따른 자립지원 서비스 차등화를 해소하여야 한다. | 4.41 | 0.67 | 4.30 | 0.50 |

5) 주거공간 지원의 확대 및 개선

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 그룹홈, 가정위탁에서의 보호가 끝나는 청소년, 가출청소년 등은 자립 시 주거공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주거공간 지원의 확대 및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표 31을 살펴보면, 저렴하고 청소년들의 기호에 맞는 임대주택 제공 확대(4.67), 대학 졸업 시까지의 전세 주택 지원(4.65), 직업교육을 받는 동안 시설 청소년의 입소기간 연장(4.61), 현실적 수준의 전세자금 지원(4.61), 취약 청소년들에게 현실적 수준의 전세자금이 지원(4.59), 전세주택 서비스 체계의 개선(4.57), 자립 체험을 위한 중간 형태의 시설 및 프로그램(4.56), 자립지원시설의 확대(4.54), 주거지원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의 확충(4.52), 청소년 시설 퇴소 청소년들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4.48), 군입대시의 퇴소 연장, 군 전역 후의 생계비 지원(4.44), 부동산 계약관련 교육(4.31)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주거공간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 도출과 각 의견에 대한 높은 동의정도는 취약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있어 주거공간 문제가 필수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 주거공간 지원의 확대 및 개선

| 내 용 | 2차 델파이 | | 3차 델파이 | |
|-------------------------------|--------|-------|--------|-------|
|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 저렴하면서도 청소년들의 기호에 맞는(예, 원룸 형태) | 4.47 | 0.72 | 4.67 | 0.48 |

| | | | | |
|---|------|------|------|------|
| 임대주택을 더 많이 제공해야한다. | | | | |
| 전세주택 지원이 대학 졸업 시(만24세)까지도 가능해야 한다. | 4.52 | 0.72 | 4.65 | 0.48 |
| 직업교육을 받는 동안 시설 청소년의 입소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 4.53 | 0.59 | 4.61 | 0.49 |
| 취약 청소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의무 비율 도입이 필요하다. | 4.29 | 0.83 | 4.61 | 0.53 |
| 취약 청소년들에게 현실적 수준의 전세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 | 4.41 | 0.76 | 4.59 | 0.60 |
| 취약 청소년을 위한 전세주택 서비스 체계(복잡한 계약 과정, 거주지 변경에 따른 재신청 문제 등)가 개선되어야 한다. | 4.38 | 0.86 | 4.57 | 0.54 |
| 퇴소 전 자립을 체험할 수 있는 중간 형태의 시설 및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 4.47 | 0.72 | 4.56 | 0.50 |
| 자립지원시설(舊 자립생활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 4.32 | 0.87 | 4.54 | 0.66 |
| 취약 청소년을 위한 주거지원 관련 정보(주택 정보, 신청 방법 등) 제공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 | 4.40 | 0.72 | 4.52 | 0.50 |
| 청소년 시설(예, 쉼터) 퇴소 청소년들에게도 2~3년 정도의 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 4.21 | 0.91 | 4.48 | 0.67 |
| 대학졸업 전 군입대 시 퇴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군전역 후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 | 4.29 | 0.75 | 4.44 | 0.57 |
| 취약 청소년을 위한 부동산 계약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 4.19 | 0.82 | 4.31 | 0.51 |

6) 법률, 의료 지원 강화

법률, 의료 지원 강화에 관한 의견들로는 퇴소 후 일정 기간 동안의 법률 정보 제공, 취업 시까지의 의료지원 제공(4.69), 무료 법률 상담 등의 지원(4.57)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법률, 의료 지원 부족은 취약 청소년의 자립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률, 의료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법률, 의료 지원 강화

| 내 용 | 2차 델파이 | | 3차 델파이 | |
|---|--------|-------|--------|-------|
|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 퇴소 후 취업 시까지는 의료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 4.50 | 0.66 | 4.69 | 0.47 |
| 퇴소 후 일정 기간 동안 법률 정보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 4.43 | 0.74 | 4.57 | 0.50 |

7) 친부모 관련 대응 강화

표 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친부모 관련 대응 강화와 관련하여 퇴소 후 연고자로부터의 피해가능성에 대한 방안 마련(4.52), 친부모 현황 파악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4.43), 친부모와의 긍정적 관계 재형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4.39), 친부모의 양육책임 강화 법제화(4.34)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각 의견에 대한 동의여부의 평균값이 높아, 현장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친부모와 관련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취약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친부모 관련 대응 강화

| 내 용 | 2차 델파이 | | 3차 델파이 | |
|---|--------|-------|--------|-------|
|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 퇴소 후 연고자(친부모 및 친인척)로부터의 피해가능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4.47 | 0.59 | 4.52 | 0.54 |
| 청소년의 친부모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 4.24 | 0.74 | 4.43 | 0.57 |
| 친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재형성하기 위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 4.35 | 0.66 | 4.39 | 0.53 |
| 청소년에 대한 친부모의 양육책임 강화가 법제화 되어야 한다. | 4.06 | 0.96 | 4.34 | 0.70 |

8) 자립준비 프로그램 체계 구축 및 운영

표 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립준비 프로그램의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자립준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4.7), 목표와 비전 심어주기를 통한 자립에 대한 동기 부여와 각 대상의 특성이나 목표를 고려한 개별화된 자립준비교육이 제공(4.65), 개별적인 욕구 파악(4.61), 실질적인 자립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확충(4.56), 자존감 향상 서비스(4.54), 초등학교 시부터의 자립준비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3.61)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개별적인 욕구 파악, 동기 향상, 자아존중감 향상 등이 포함된 자립준비에 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축과 운영 지원 대한 요구는 높게 나타난 반면, 초등학교 시부터 자립준비 프로그램 의무화는 다른 의견들보다 동의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자립준비 프로그램 체계 구축 및 운영

| 내 용 | 2차 델파이 | | 3차 델파이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자립준비 프로그램 운영 시 재정적 지원(운영비, 교통비, 식비)이 필요하다. | 4.63 | 0.57 | 4.70 | 0.46 |
| 취약 청소년에게 목표와 비전을 심어주어 자립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 4.59 | 0.60 | 4.65 | 0.48 |
| 각 대상의 특성이나 목표를 고려한 개별화된 자립준비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 4.57 | 0.55 | 4.65 | 0.48 |
| 자립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욕구 파악이 중요하다. | 4.58 | 0.55 | 4.61 | 0.49 |
| 실질적인 자립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이 확충되어야 한다. | 4.51 | 0.59 | 4.56 | 0.54 |
| 취약 청소년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 4.54 | 0.61 | 4.54 | 0.61 |
| 취약 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 시부터 자립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 3.78 | 1.02 | 3.61 | 0.79 |

9)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표 3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심리정서적 문제해결을 위한 치료비 지원(4.69), 소규모시설, 그룹홈, 쉼터 등 심리정서 서비스 사각지대에 심리치료서비스 지원의 확대(4.67), 지적장애 및 신체장애 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지원(4.61), 성폭력, 성매매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지원(4.59), 게임중독, 약물, 흡연에 대한 상담(4.48)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각 의견에 대한 동의여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심리정서적 지원이 전제되어야한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35.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 내 용 | 2차 델파이 | | 3차 델파이 | |
|--|--------|-------|--------|-------|
|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 심리정서적 문제해결을 위한 치료비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4.57 | 0.63 | 4.69 | 0.47 |
| 소규모시설, 그룹홈, 쉼터 등 서비스 사각지대에 심리치료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 4.49 | 0.68 | 4.67 | 0.48 |
| 지적장애(경계선 지능 포함) 및 신체장애 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 4.46 | 0.68 | 4.61 | 0.49 |
| 성폭력, 성매매 등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4.62 | 0.55 | 4.59 | 0.53 |
| 게임중독이나 약물, 흡연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 4.46 | 0.53 | 4.48 | 0.50 |

10)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서비스 강화

취약 청소년의 자립을 위하여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표 36을 살펴보면,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4.69), 육구과약 및 목표설정을 위한 진로탐색, 진로발달검사,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의 진로설계서비스가 필요하다(4.61)는 의견이 나타났다. 각 의견에 대한 동의수준 역시 매우 높아 체계적인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서비스가 확충되어야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서비스 강화

| 내 용 | 2차 델파이 | | 3차 델파이 | |
|---|--------|-------|--------|-------|
|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 4.56 | 0.68 | 4.69 | 0.47 |
| 육구파악 및 목표설정을 위한 진로탐색·진로발달검사,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의 진로설계서비스가 필요하다. | 4.59 | 0.60 | 4.61 | 0.49 |

11) 학업 지원 강화

취약 청소년에 대한 학업 지원과 관련된 의견들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표 3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취약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교육 바우처 마련(4.61), 대학등록금 지원의 확대(4.43), 비진학 청소년에 특화된 기초학습 지원 프로그램(4.39), 장기 학습지원 멘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1:1 학습 제공(4.3), 검정고시 학원과의 연계 강화(3.91),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학력(인가)형 특성화 대안학교 설립(3.89), 개별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서비스(역사탐방, 유적지 여행, 박물관 및 도서관 견학)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타났다. 학업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취약 청소년의 욕구(학원, 예체능교육, 자격증)에 맞는 교육 바우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가장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37. 학업 지원 강화

| 내 용 | 2차 델파이 | | 3차 델파이 | |
|--|--------|-------|--------|-------|
|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 취약 청소년의 욕구(학원, 예체능교육, 자격증)에 맞는 교육 바우처가 마련되어야 한다. | 4.50 | 0.72 | 4.61 | 0.49 |
| 대학등록금 지원이 청소년시설(예, 쉼터) 청소년들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 4.38 | 0.77 | 4.43 | 0.63 |

| | | | | |
|---|------|------|------|------|
| 비진학 청소년에 특화된 기초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4.35 | 0.66 | 4.39 | 0.53 |
| 장기 학습지원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1 학습이 제공되어야 한다. | 4.21 | 0.80 | 4.30 | 0.57 |
| 검정고시 학원과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 3.99 | 0.92 | 3.91 | 0.81 |
|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학력(인가)형 특성화 대안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 | 3.93 | 0.92 | 3.89 | 0.74 |
| 개별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서비스(역사탐방, 유적지 여행, 박물관 및 도서관 견학 등)가 확대되어야 한다. | 4.00 | 0.90 | 3.83 | 0.87 |

12) 사회기술 역량 강화

표 3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기술 역량의 강화가 취약 청소년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다.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 및 갈등상황 대처, 분노조절 등과 관련된 사회기술훈련 제공(4.67), 사회생활에 필요한 대인관계 기본 예절 및 규범에 대한 교육(4.52), 생활 속에서 체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기술훈련의 체계적 제공(4.46), 1:1 멘토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생활 적응 조력(4.24), 또래관계와 집단생활을 통한 사회적 학습(4.20)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각 의견들은 취약 청소년 자립에 있어 생활기술, 대인관계의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38. 사회기술 역량 함양

| 내 용 | 2차 델파이 | | 3차 델파이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및 갈등상황 대처, 분노조절 등과 관련된 사회기술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 4.65 | 0.54 | 4.67 | 0.48 |
| 사회생활에 필요한 대인관계(직장 상사 및 동료) 기본 예절 및 규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4.37 | 0.64 | 4.52 | 0.50 |

| | | | | |
|--|------|------|------|------|
| 생활 속에서 체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기술훈련(신체청결, 청소, 세탁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4.31 | 0.72 | 4.46 | 0.57 |
| 1:1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생활 적응을 도와야 한다. | 4.09 | 0.79 | 4.24 | 0.61 |
| 또래관계와 집단생활(예, 보이스카웃)을 통한 사회적 학습이 필요하다. | 4.04 | 0.70 | 4.20 | 0.61 |

13) 경제교육 강화

자립 이후에는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관리 역시 중요한 생활의 일부분이 되므로, 경제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전문가들의 요구 또한 제시되었다. 표 39에 나타나듯이, 저축, 가계부 작성, 은행업무 등 실생활 속의 경제교육과 체험이 필요하다(4.46), 현장전문가들은 단계별 경제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행동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4.44)는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경제교육 강화

| 내 용 | 2차 델파이 | | 3차 델파이 | |
|--|--------|-------|--------|-------|
|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 저축, 가계부 작성, 은행업무(통장, 적금, 공과금 납부)등 실생활 속의 경제교육과 체험이 필요하다. | 4.46 | 0.66 | 4.46 | 0.50 |
| 단계별 경제교육(초등·중등·고등)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행동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 4.41 | 0.74 | 4.44 | 0.50 |

14) 직업준비 및 취업지원 시스템 강화

취약 청소년이 자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직업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마련해야하므로 직업준비 및 취업준비 역시 취약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나타났다. 표 40에 나타나듯이 직업훈련시설의 확대와 예산 증액(4.69), 대학 미진학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시스템(4.67), 직업체험, 훈련, 인턴십, 취업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취업지원 시스템(4.58), 직업기술훈련 관련 정

보 제공(4.54), 건전한 아르바이트 및 취업에 대한 정보 제공(4.52), 취업 후 실직·전직 시 재취업을 위한 서비스 제공(4.24), 창업시스템 구축을 통한 창업지원(3.76)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취약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이 확대되고,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대학 미진학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높은 동의수준이 나타나, 취약 청소년이 자립을 위해서는 직업훈련의 강화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 직업준비 및 취업지원 시스템 강화

| 내 용 | 2차 델파이 | | 3차 델파이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취약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이 확대되고,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 | 4.60 | 0.65 | 4.69 | 0.47 |
| 대학 미진학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시스템(조기 기술교육, 자격증 취득 등)이 필요하다. | 4.69 | 0.47 | 4.67 | 0.51 |
| 직업체험, 훈련, 인턴십, 취업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취업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 4.54 | 0.61 | 4.58 | 0.50 |
| 직업기술훈련 관련 정보가 수시로 제공되어야 한다. | 4.52 | 0.56 | 4.54 | 0.50 |
| 건전한 아르바이트 및 취업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4.45 | 0.53 | 4.52 | 0.50 |
| 취업 후 실직·전직 시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 4.33 | 0.66 | 4.24 | 0.58 |
| 창업시스템 구축을 통해 창업자금지원과 창업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 4.10 | 0.80 | 3.76 | 0.75 |

6. 현장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총 163명의 학계 및 현장(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쉼터 및 대안학교)의 자립관련 전문가들에게 ‘취약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구한 델파이 조사에서 3차에 걸쳐 최종 56 명로부터의 의견을 수집하였으며, 이는 총 14개 항목 75개 문항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14개의 항목은 1)자립지원 정책 강화, 2)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후관리, 3)자립지원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4) 자립정착금 지원의 개선, 5)주거공간 지원의 확대 및 강화, 6)법률 및 의료지원 강화, 7)친부모 관련 대응의 강화, 8)자립준비 프로그램 체계 구축 및 운영, 9)심리정서적 지원의 강화, 10)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서비스의 강화, 11)학업지원 강화, 12)사회기술 역량 함양, 13)경제교육의 강화, 14)직업 준비 및 취업지원 시스템의 강화이었다. 각 영역에 대해 각각의 전문가 집단(학계, 다양한 현장전문가 집단)에 따라 의견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차이검증 하였으나 유의미하지 않아 현장의 특성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위의 의견에 대해 유사한 견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델파이 조사를 통한 전문가 의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75개의 문항에 대해 대부분 5점 척도의 4점 이상의 동의를 이루어져 전문가들은 그들의 소속이 어디인가와 관계없이 취약 청소년의 자립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에 대해 높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이는 이들 청소년의 자립지원과 관련된 정책이나 서비스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상 필요에 비해 제공되고 있는 정책 및 서비스 내용도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욕구가 커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 실제 이를 반영하듯 몇 개의 문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4.5이상의 매우 높은 동의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도출된 14개의 항목을 나누어 보면 크게 정책적 내용과 구체적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책으로는 자립지원 정책강화(청소년관련법 명시, 총괄 운영기관 설치,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부처 내 기금 마련, 기업의 일자리 제공에 따른 세제 혜택 등),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후관리 강화, 자립지원 실무자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자립정착금 지원의 개선(대상 확대, 지급방법 다양화, 사전 및 사후 교육 등), 주거공간 지원 확대와 개선, 법률 및 의료 지원 강화, 친부모 관련

대응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 관련 내용으로는, 자립준비 프로그램의 체계적 구축 및 운영(매뉴얼 확충, 동기부여, 개별적 욕구과약 등),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심리치료서비스 지원 확대, 치료비 지원, 게임중독 및 약물 등의 상담, 지적장애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서비스의 강화, 학업지원의 강화(대안학교 설립, 교육바우처, 장기 학습지원 멘토 프로그램 등), 사회기술 역량 함양(일상생활기술훈련의 체계적 제공, 대인관계 및 예절, 규범에 대한 교육, 분노조절 등의 사회기술 훈련 제공 등), 경제교육 강화 등의 내용이 제안되었다.

셋째, 의견은 제시되었으나 동의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는 시설 퇴소 후 '사례관리 의무화'법령의 추가(3.47), 친부모 양육책임의 강화(4.06), 초등학교 시부터의 자립준비 프로그램 의무화(3.78),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대안학교의 설립(3.93), 검정고시 학원과의 연계강화(3.99), 또래관계와 집단생활(예,보이스카웃)을 통한 사회적 학습 필요(4.04)등이다. 이러한 항목을 살펴보면, 그 범위가 다소 확장되어 있거나 혹은 이미 유사한 기관과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동의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전문가 집단에 따라 의견 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어 차별화된 모형이나 서비스 내용이 가정되지 않아도 됨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시점으로서는 요구되는 것에 비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 무슨 서비스가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함을 구별하고 비교하기 보다는 오히려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나 서비스 지원이라도 더 많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시사된다. 즉, 이러한 지원이 좀 더 다양하게 충분히 제공된 후에야 이들 지원이 대상에 따라 어떻게 차별화되어 제공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자립정착금 지원이나 자립지원시설 등의 주거공간 지원 등은 양육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이를 양육시설 청소년 뿐 아니라 가정위탁, 그룹홈, 쉼터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학업중단청소년들에게까지 확대되기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산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 심리정서적 지원 등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다섯째, 많은 전문가들이 자립지원과 관련된 정책, 서비스가 장기적 관점으로 제시되고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단회적이거나 단기적인 프로젝트성 사업에 의한 지

원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예산 및 정책, 서비스 지원에 의해 각각의 청소년들에게 자립지원과 관련되어 경제, 주거, 의료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생활기술, 사회기술 및 심리정서적 지원과 교육적 지원이 제공되고, 스스로 자신의 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계획적으로 받음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이들 청소년들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VI.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1. 모형 개발의 절차

문헌연구, 청소년 특성조사, 현장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을 개발하였다(그림2 참조). 우선 문헌연구, 청소년 특성조사, 현장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자립지원 모형에 대한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모형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1차 전문가 자문회의에는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장, 실장, 팀장급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다음으로 위의 과정에서 도출된 모형 구성요소들을 연구진들이 합의하여 모형 초안을 완성하였다. 완성된 모형 초안에 대해서는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로 구성된 2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구성내용의 적합성, 현실성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2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을 중심으로 모형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자립지원 모형을 완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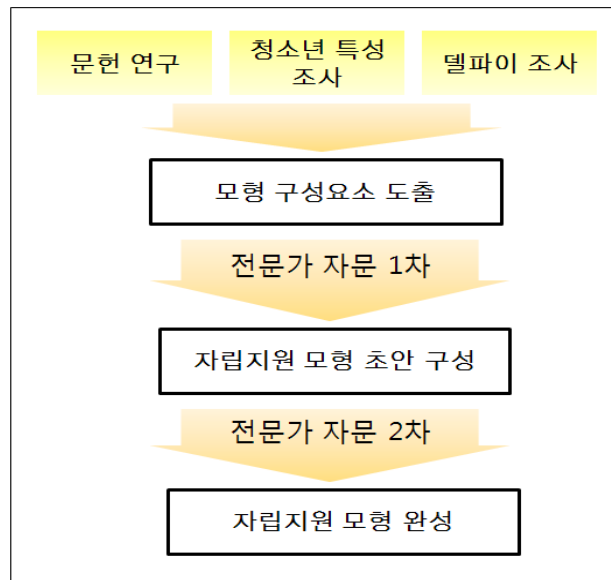


그림2. 모형 개발의 절차

2.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가.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개요

본 연구에서는 양육시설 및 그룹홈, 가정위탁 청소년, 청소년쉼터 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등의 취약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체계화하기 위해, 문헌연구, 특성조사, 델파이 조사에서 도출해낸 자립지원 모형의 구성요소를 기본적으로 9가지의 자립지원 서비스 영역과, 5단계의 자립지원단계로 구조화하고, 이러한 기본모형을 근거로 대상에 따라 3단계로 축소되는 등 다소 차별화된 모형을 제안하였다.

9가지 자립지원 서비스 영역은 취약 청소년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What)을 나타낸 것이며, 5단계의 자립지원 단계는 이러한 서비스가 언제(When), 어떻게(How)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서비스 지원은 감소하며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이고 자기충족적인 생활단계에 이르게 되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례관리 수준은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매우 집중적이며 다소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것에서부터 점차 간헐적·간접적 연계서비스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9가지 자립지원 영역은 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들을 범주화한 것으로 주거, 일상생활기술 및 건강관리, 심리/정서, 사회성 발달, 학업, 진로(취업), 경제기술, 자원활용, 원가족과의 연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자립지원 영역은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쉼터, 학업중단청소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들로 이루어져 있다. 현장전문가 델파이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는 9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종합적인 자립지원 서비스가 이들 청소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됨을 지지하고 있었다.

주거, 일상생활기술 및 건강관리, 심리/정서, 사회성 발달, 학업, 진로, 경제기술, 자원활용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온 대표적인 자립지원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현장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영역에 걸친 자립지원 서비스가 필요함이 지지되었다. 원가족과의 연계 영역은 현장전문가 델파이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강조된 영역으로, 원가족으로 인한 부정적 피해 최소화와 긍정적 연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자립지원 영역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각 영역에서 목표로 하는 바와,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는 표 4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41. 9가지 자립지원 영역별 목표 및 지원 서비스

| 영역 | 자립 목표 | 지원 서비스 |
|------------------|---|---|
| 주거 | ·독립적인 주거 공간 유지 | ·주택 지원 ·집 구하기 방법 교육 |
| 일상생활기술 및 건강관리 | ·신체청결 및 주변 환경 청결 유지 ·건강 유지 | ·일상생활기술 훈련 ·일정 기간 의료보호 지원 ·건강관리기술 훈련 |
| 심리/정서 | ·안정적인 심리 상태 유지 ·긍정적인 자아상 ·좌절에 대한 인내 | ·심리치료 지원 ·지속적인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
| 사회성 발달 | ·직장 내 조화로운 대인 관계 유지 | ·대인관계항상훈련 ·자기주장훈련 |
| 학업 | ·기초학습능력 ·고등교육기관 진학(선택) | ·학습지도 ·진학정보 제공 |
| 진로 (취업) |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 ·경력개발 | ·진로설계 및 진로정보 제공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 ·구직기술 훈련 |
| 경제기술 | ·합리적인 경제생활 ·신용등급 유지 | ·합리적인 경제의식 함양 ·체험식 경제교육 ·경제관리 자문 및 정보제공 |
| 자원활용 | ·지역 사회 자원 탐색 및 활용 | ·자원활용기술 훈련 |
| 원가족과의 연계 | ·원가족과의 문제 해결 ·원가족으로부터의 긍정적 연계 | ·원가족과의 문제해결 지원 |

5단계로 나누어진 자립지원의 단계는 자립준비 기초단계, 자립준비 심화단계, 생활 전환단계, 준독립생활단계, 독립생활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자립준비 기초단계 및 자립준비 심화단계는 청소년기(만 18세 이전)에 이루어져야할 자립기술훈련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활전환단계, 준독립생활단계, 독립생활단계는 만 18세 이후 자립생활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져야할 지원을 단계화한 것으로 점차적으로 지원을 줄여나가 청소년이 자립을 달성할 수 있게끔 조력하는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자립지원의 단계는 언제, 어떻게 자립지원 서비스가 전달되어야 하는가를 나타낸 것이므로, 각 청소년의 소속에 따라 차별적인 순서나 과정의 서비스 전달이 필요하다.

특성조사, 전화이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양육시설, 그룹홈, 위탁가정의 청소년

년의 경우 유사한 발달과정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중복 및 유사성으로 인하여 공통적인 단계의 지원이 적용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양육시설, 그룹홈, 위탁가정 청소년의 자립지원 모형은 하나의 모형으로 통합하였다. 그러나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특성 조사에서 양육시설, 그룹홈, 위탁가정 청소년보다 심리적 취약성을 더 많이 나타낸 점, 연령순이 아닌 가출 발생시점 또는 학업중단시점부터 자립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개별적인 모형을 구성하였다.

나. 양육시설·그룹홈·가정위탁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시설 입소 및 가정 위탁이 대부분 어린시절부터 시설보호가 시작되므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의 모형은 시작 단계를 중학교 시기부터로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자립준비를 위한 과정을 제안하였다.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등은 각각 시설의 구조 및 대상의 차이가 존재하나, 대상에 따른 자립준비 모형을 모두 세부적으로 기술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현장전문가 델파이 조사, 취약 청소년 특성조사,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세 집단이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및 서비스 제공 내용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위와 같은 지원모형을 아래 자립지원 서비스운영 주체는 상이함을 제안하였다. 국가의 공식적이고 정책적 지원은 타대상보다 많으나 자립준비 및 대상기관별 특성 및 운영형태가 상이하므로, 양육시설은 생활지도원 및 자립전담요원이, 위탁가정은 주거·일상생활기술 등 생활관리 영역은 위탁부모가, 훈련 제공, 심리/정서·사회성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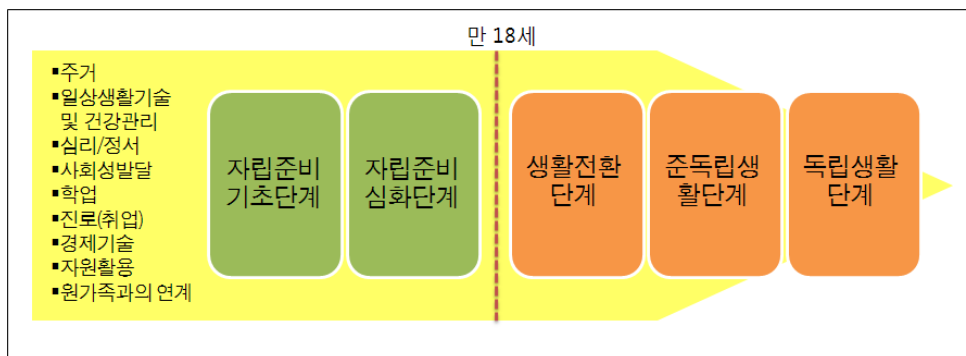


그림3. 양육시설·그룹홈·가정위탁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등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은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중심으로 실시하며, 그룹홈은 실무자 중심으로 자립준비를 제공하고, 시설보호의 종료 후에는 자립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형태로 공식적인 서비스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표 42. 양육시설·그룹홈·가정위탁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 자립지원 영역 | 자립준비 기초단계 | 자립준비 심화단계 | 생활전환 단계 | 준독립생활 단계 | 독립생활 단계 |
|----------------|--|--|--|------------------|-------------|
| | ·중학생 연령 | ·고등학생 연령 | ·퇴소후 1년 이하 | ·퇴소후 2년이상 5년 이하 | ·퇴소후 5년 이상 |
| 주거 | ·주거관리기술 (가전제품 사용방법, 청소 등) | ·집구하기 체험 ·독립생활(자립생활관) 체험 | ·자립지원시설 ·24시간 슈퍼 바이징 ·관리비 청소년 부담 | ·소속사 형태의 주거공간 | ·독립생활 주거 공간 |
| 일상생활 기술 및 건강관리 | ·의복 및 청결 유지 ·술/담배/약물 교육 ·의료보호 | ·응급상황 대처 교육 ·성교육 ·의료보호 | ·일상생활관리 ·의료보호 | ·의료보호 | |
| 심리/정서 | ·심리검사 ·정기상담 ·불안/우울 관리 ·자아존중감 훈련 ·자립동기 부여 ·원가족과의 문제해결 훈련 | ·정기상담 ·불안/우울 관리 ·자립준비 구체화 ·시설 벗어나기 연습 ·원가족과의 문제해결 훈련 | ·정례적 상담 | ·요청시 상담 | ·분기별 사례관리 |
| 사회성발달 | ·대인관계 훈련 ·예절/습관 교육 | ·시설선배 멘토 조성 ·또래 모임조성 ·의사전달방법 교육 ·스트레스 관리 훈련 | ·사회기술 멘토링 ·홈커밍데이 운영 | ·홈커밍데이 운영 | ·홈커밍데이 운영 |
| 학업 | ·고교유형 결정 ·집중력 훈련 ·학습습관 조성 | ·진로결정(문/이과) ·대학입학정보 ·대학진학준비 | ·학업바우처 | ·학업바우처 | |
| 진로(취업) | ·진로탐색 ·직업세계 이해 ·자립계획수립(ISP) | ·진로계획 수립 ·직업체험 ·직업훈련 ·직업인 멘토 ·근로권 교육 | ·인턴십 ·직업훈련 ·직장인 멘토 연계 | ·직장유지기술 ·직업후련 | |

| | | | | |
|-----------------|---|---|----------------------|---------------|
| 경제 기술 | ·용돈관리 ·저축목표 수립 ·저축방법 이해 | ·합리적 경제사 고 수립 ·실물경제체험 | ·급여관리(취 업) | ·급여관리(취 업) |
| 자원 활용 | ·지역사회 자원 조사 ·대중교통이용 | ·지역사회자원 체험(학자금/ 장학금정보/자 립 정착금 / CDA) ·자원활용기술 훈련 | ·자원정보유지 관리 | ·자원정보유지 관리 |
| 원가족 과의 관계 | ·원가족과의 관계회복 지원 ·원가족과의 문제해결 지원 ·원가족 복귀지 원 | ·원가족과의 관계회복 지원 ·원가족과의 문제해결 지원 ·원가족 복귀지 원 | ·가족 및 친척과 의 관계 유지 | |

1) 자립준비 기초단계

- **주관리기관** : 아동양육시설,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청소년 그룹홈
- **지원형태** : 중학생 연령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육시설 및 그룹홈은 시설내에서, 가정위탁은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직접 및 부모들에게 지속적이고 교육 중심의 활용가능한 초기 자립준비기술 훈련 지원. 가능한 모든 영역별로 집단형태의 세부프로그램 정례적 운영
- **주거** : 가전제품 사용방법, 청소 등 실생활 중심의 기초 교육
- **일상생활기술 및 건강관리 교육**: 의복 및 신체청결 유지하기, 자기주변 정리하기, 건강한 식습관 기르기, 술담배 등 유해약물 차단을 위한 예방교육, 상비약 종류 및 사용법 교육, 의료보호, 질병치료
- **심리/정서**: 성격검사, 진로검사 등 자신의 심리파악 및 자립준비를 위한 동기부여 과정, 불안/우울관리, 자기존중감 훈련, 원가족과의 복귀가 가능한 청소년들에게는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 **사회성 발달**: 친구사귀기, 친구간의 예절 및 성인과의 예절 습득, 좋은 습관 만들기 개발 과정
- **학업**: 일반계·전문계 등 학교유형 선택 준비, 학업지도, 학습능력 강화를 위한 집중력훈련 실시, 학습습관 기르기

- **진로(취업):** 다양한 직업의 세계 이해하기, 자신의 적성 및 능력 알기, 자립계획 수립(Individual Self-reliance Plan)
- **경제:** 용돈관리 훈련, 저축기간·목적 등에 따른 저축의 종류 및 방법 이해하기
- **자원활용:** 지역사회에 청소년기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에 대한 조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는 법 알기
- **원가족과의 관계 :** 양육시설·그룹홈·가정위탁 청소년들의 가족 내 문제 사정을 통한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 여부 파악. 원가족과의 접촉이 불가능한 사례의 경우에도 원가족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하여 위험요인은 대비시키고, 보호요인은 강화할 수 있도록 개입.

자립준비 기초단계는 청소년 초기단계로 자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이기보다는, 그 발달연령에 맞는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습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등화된 교육보다는 위에 제시된 자립준비영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며,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2) 자립준비 심화단계

- **주관리기관 :** 아동양육시설,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청소년 그룹홈
- **지원형태 :** 고등학생 연령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실습 중심의 자립준비기술 훈련 지원. 기초단계에서 배운 기술의 심화 프로그램 운영 및 실생활 중심의 현장 적용성 강화
- **주거:** 집을 구할 때 필요한 기본요소 습득, 독립생활관 체험을 통한 주거관리 이해하기
- **일상생활기술 및 건강관리:** 식사 준비하기, 응급상황 발생 대처교육, 성교육(성병예방, 피임, 임신에 대처하기, 건전한 이성관계 교육 등), 의료보호, 질병 치료
- **심리/정서:** 정례적 개인상담,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퇴소에 대한 인식 강화, 불안/우울 관리 훈련, 원가족과의 문제해결 훈련
- **사회성 발달:** 시설선배 멘토조직, 갈등문제 제시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향상 훈련

- 런, 시설의 청소년들과의 또래 모임 구성, 스트레스 관리 훈련, 나의 감정 및 타인의 감정 수용하기, 의사전달 방법 교육, 건강한 가정구성
- **학업:** 문/이과 진로결정 준비, 학업지도, 진학의 욕구가 높은 청소년들에게는 대학 정보사이트 활용, 수능 모의시험 결과에 따른 대학진학 예측, 수능 준비
 - **진로(취업):** 구직과정 이해, 목표 직업 성취를 위한 경력과정 이해, 취업의 욕구가 높은 청소년들에게는 자격증 취득 지원, 직업인 멘토 연계, 직업훈련제공, 인턴십, 근로권 교육,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자립지원계획수립(ISP)
 - **경제:** 경제원리 교육, 합리적 경제사고 수립(수요·공급 법칙 등), 실물경제 체험
 - **자원활용:** 아동·청소년 직접활용 가능 자원 정보제공(학자금, 장학금, 자립정착금, CDA 등), eco-map을 통한 인적·물적 자원 조사, 법관련 자원활용 정보교육, 구직 사이트 활용 등 다양한 접근방법 및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원가족과의 관계 :** 양육시설 및 그룹홈 청소년들은 가족 내 문제 사정을 통해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 여부를 파악하고, 회복 가능한 경우에는 원가정 복귀 지원, 관계회복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정적 피해 방지 상담 또는 긍정적인 관계수립을 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 지원. 가정위탁 청소년들은 현재의 가족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긍정적인 관계수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퇴소 및 서비스 종결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자립준비를 본격화하여 준비하는 시기로 특히, 주거와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퇴소전에 선행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퇴소에 따른 경제·학업지원 등의 정보에 대해서 숙지하게 하고, 현장적용성 강화를 위한 체험 중심 및 실생활 중심의 자립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시설퇴소가 서비스의 종료로 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숙지하도록 하여, 불안 및 우울심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생활전환 단계

- **주관리기관** : 자립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청소년 그룹홈
- **지원형태** : 만 18세 시설퇴소 및 시설퇴소와 동시에 군에 입대한 청소년들에게, 독립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전환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로 자립준비 및 심화단계의 기술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습득한 자립영역훈련 활용 점검 및 정례적 사례관리를 통한 사회적응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립영역서비스 지원. 이 시기부터는 시설퇴소 및 서비스 종료에 따라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는 자립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심리/정서·일상생활관리 등 기관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필요영역은 퇴소 전 시설에서 지원
- **주거**: 퇴소 후 2년간 기숙사 형태의 자립지원시설과 24시간 슈퍼바이징 제공. 물리적·정서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이전 단계에서 배운 자립기술들을 적용. 자립지원관 확대를 통해 양육시설 청소년 및 그룹홈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시설을 제공하고, 가정위탁 청소년은 가정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하는지 점검. 사례관리자가 교대로 24시간 근무하여 안전한 물리적·심리적 환경 제공. 소액실비 청소년 부담, 대학진학시 기숙사 우선 제공 혜택.
- **일상생활기술 및 건강관리**: 이전 단계에 배운 일상생활기술 및 건강관리기술 적용 활용 점검, 퇴소 후 5년까지 안정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보호 제공
- **심리/정서**: 사례관리자의 슈퍼바이징을 통한 정례적(월 1회)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 **사회성 발달**: 취업 후 나타날 수 있는 미묘한 직장갈등상황에 대한 사회기술 멘토링 제공
- **학업**: 어학·자격증 취득을 위한 바우처 제공으로 학업역량 강화 습득 기회 제공, 장학금 지속 연계
- **진로(취업)**: 인턴십을 통해 진로 결정을 내리고,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술 향상, 이력서 쓰기, 면접 기술 등 구직에 필요한 기술을 연습할 수 있게 지원, 근로자 권리(4대 보험 가입 등)에 대한 교육, 안전한 직업환경 선택하기, 직업훈련 제공, 취업청소년들에게는 직장내 멘토 연계
- **경제 지원**: 자립정착금 및 취업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저축계획을 수립하고, 규모있게 지출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

- **자원활용:** 청소년이 문제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도움요청행동 강화로 법률·의료적 자원 활용 유지관리 기술, 자립정보 이메일 또는 문자 전송
- **원가족과의 관계 :** 가족 및 친척과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회복시점에 있는 경우,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관계유지 점검

생활전환단계는 퇴소에 따른 사회적응을 유지하는지 전환생활(Transitional Living)을 실시하는 단계로, 주거와 관련된 부분은 청소년의 개별욕구에 따라 상이한바, 집단생활을 거부하고 독립생활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주거형태는 독립생활 단계를 유지하되, 정례적 사례관리를 통한 사회적응성을 점검하도록 한다. 퇴소에 따른 독립생활을 강조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사례관리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대한 서비스 등의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환생활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지속적인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자립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4) 준독립생활 단계

- **주관리기관 :** 자립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청소년 그룹홈
- **지원형태 :** 퇴소후 2년 이상 ~ 5년 미만 아동·청소년들에게 센터형 그룹홈 형태로 사례관리자가 순환근무하며 그룹홈별로 1일 8시간씩 근무. 준독립생활 형태로 성인기로의 자립이행단계에서의 최소한의 서비스 지원, 자립생활을 위한 본격 준비단계로 청소년들이 지원체계가 중단됨이 아닌, 독립생활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단계 교육
- **주거:** 5~6명이 거주하는 여러 소속사 형태의 센터형 주거 공간 제공. 주거 비용에 대한 부분적인 수익자 부담: 예) 월세 50% 및 관리비 부담 등. 자립지원관을 메인 오피스로 하고, 사례관리자가 순환근무하며 그룹홈별로 1일 8시간 근무
- **심리/정서:** 사례관리자는 청소년의 정서 및 심리적 상태, 건강상태에 대해서 점검하며 청소년 요청 시 관련 지원 서비스에 연결
- **진로(취업):** 구직 기술, 직장 내 예절, 지속적인 자기개발 등 직장 유지에 필요한 지도 제공

- **경제:** 수입에 대한 지출관리, 신용등급 유지하기
- **자원활용 :** 자립정보 이메일 또는 문자 전송

생활전환단계를 통해 보호형에서 독립형으로 이행과정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단계로,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만을 지원하도록 하고, 취업과 관련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5) 독립생활 단계

- **주관리기관 :** 자립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청소년 그룹홈
- **지원형태 :** 퇴소후 5년 이상 아동·청소년들에게 독립생활 유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서비스 지원
- **주거:** 1~2명이 생활하는 독립생활 주거 제공. 주거 비용에 대한 상당 부분 자가 부담으로 본인의 자가부담율에 따라 지속적인 주거 유지 가능
- 사례관리자는 분기별 1회 전화상담을 통해 생활 전반에 대한 점검 진행
- 청소년이 요청할 시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자문 제공
- 사후 사례관리체제 운영
- **자원활용 :** 자립정보 이메일 또는 문자 전송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하고, 필요시 언제든지 심리/정서 서비스를 요청하도록 안내하며, 청소년 및 자립지원센터와의 관계의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하고, 입직하였을때는 취업유지 및 취업전의 청소년들은 취업정보 및 직업훈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다. 가출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가출청소년의 경우 자립지원 단계의 출발점이 연령이 아닌 가출발생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령이 아닌 서비스 지원의 흐름에 따라 자립지원 단계를 구성하였다. 우선 쉼터 입소 단계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진단의 실시를 주요 서비스로 설정하였다. 자립준비 단계에서는 이전의 진단 결과에 따라 가출청소년에게 필요한 자립기술훈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가출청소년의 경우 이전의 경험에 따라 결핍정도의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거나,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 방식보다는 개인별로 맞춤형, 선택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퇴소 후 단계 구성에 있어서는 가출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개입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생활하면서 필요 시 자문 및 정보제공, 상담 등을 요청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다. 이렇듯 가출청소년의 자립지원 모형에서는 표준화된 서비스의 일괄적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형,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개별형,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화된 인적 자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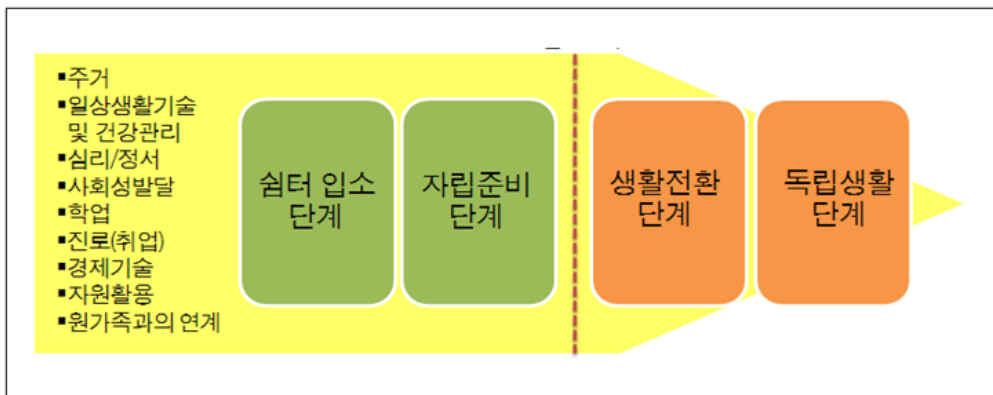


그림4. 가출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표 43. 가출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 영역 | 단계 | | 생활전환 단계 | 독립생활 단계 |
|------------------|---|---|-----------------------------|-----------------------|
| | 쉼터 입소 단계 | 자립준비 단계 (맞춤형 지원) | ·퇴소후 2년 이하 | ·퇴소후 2년이상 5년 이하 |
| 주거 | ·주거에 대한 욕구 분석 | ·집 구하기 체험 ·독립생활(자립생활관) 체험 | ·5-6명이 생활하는 그룹홈 형태의 주거공간 | ·1-2명이 생활하는 독립생활 주거공간 |
| 일상 생활 기술 및 건강 관리 | ·일상생활기술 평가 ·건강과 발달상태 평가 ·공동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활기술 훈련 | ·규칙적 일상생활 체득 ·일상생활기술 훈련 ·술/담배/약물교육 ·성(性)교육 ·건강검진 및 의료보호 | ·일상생활점검 ·의료보호 | ·의료보호 |
| 심리 /정서 | ·가출력/비행력 조사 ·종합적 심리평가(우울, 불안, 분노조절, 정신장애 등) ·담당자와 라포 형성 | ·지속적인 개인상담 ·분노조절/스트레스 관리 훈련 ·자아존중감 훈련 ·공격성 감소 훈련 | ·필요시, 상담제공 | ·요청시 상담제공 |
| 사회성 발달 | ·도래의 위험요인, 보호요인 분석 | ·대인관계훈련 ·예절/습관 교육 ·의사전달방법, 자기주장훈련 ·사회규칙 준수 강화 훈련 | ·사회기술 멘토링 ·홈커밍데이 운영 | ·홈커밍데이 운영 |
| 학업 | ·학업중단 여부 확인 ·학업에 대한 욕구 분석 | ·학업동기강화 ·학습흥미유발 ·학업계획 수립 ·고교/대학입학정보 ·복교/검정고시 정보제공 | ·장학금 지원 ·학업바우처 | ·학업바우처 |
| 진로 (취업) | ·진로탐색 ·진로영역의 욕구 분석 | ·직업세계이해 및 직업 체험 ·자립계획수립(ISP) ·자격증 취득 및 직업 훈련 ·직업인 멘토링 | ·인턴십 ·직업훈련 ·직장인 멘토 연계 | ·직업훈련 |
| 경제 기술 | | ·합리적 경제사고 수립 ·구체적인 돈관리 방법 ·실물경제체험 | ·급여관리(취업) | |
| 자원 활용 | ·교사, 선배, 종교인 등 주변의 긍정적 자원 파악 | ·지역사회 자원조사(주거, 심리/정서, 학습) | ·자원정보유지관리 | ·자원정보 유지관리 |
| 원가족과의 연계 | ·가족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파악 ·부모/친척 자원 및 욕구 파악 ·원가정 복귀 지원 | ·원가족과의 문제 해결 지원 | ·가족 및 친척과의 관계 유지 | |

1) 쉼터 입소 단계

첫 단계는 쉼터 입소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가출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후 개입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가출청소년 자립지원 모형의 경우, 연령에 따른 구분이 아닌 가출시점을 중심으로 자립단계가 구성되도록 설계하였다. 가출청소년은 입소 연령이 일정치 않고, 이전의 결핍정도의 차이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쉼터 입소 단계의 진단 절차가 중요하다. 단기쉼터에 들어온 청소년들은 일시적으로 비행이나 노숙 생활로부터 이탈한 상태이므로 종합진단을 실시하여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거나, 원가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주관리기관** : 단기청소년 쉼터
- **지원형태** : 단기 청소년 쉼터의 전문가들에 의한 각 자립지원 영역에 대한 종합 진단 실시
- **주거**: 이전의 주거공간 탐색, 주거에 대한 욕구 분석
- **일상생활기술 및 건강관리**: 쉼터 입소 시점에서의 일상생활기술을 평가하여 향후 어떠한 내용의 훈련이 제공될 필요가 있는지 계획 수립,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상태를 평가하여 필요한 의료 서비스 지원, 단기쉼터에서의 생활을 위해 신체 청결, 의복청결, 식사예절 등에 대한 기초 생활기술 훈련 실시.
- **심리/정서**: 가출력/비행력 조사 및 종합적 심리평가(우울, 불안, 분노조절, 정신장애 등)를 실시하여 가출에 이르게 된 심리적 요인에 대해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입 계획 수립, 무엇보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실무자와 청소년 간의 라포를 형성하여 이후의 자립지원 서비스 지원 체계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것.
- **사회성 발달**: 또래의 위험요인, 보호요인 분석, 또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원 분석.
- **학업**: 학업중단 여부 확인, 학업중단일 경우 검정고시, 복교, 직업훈련 등 학업 중단에 맞는 학업계획 수립, 학업에 대한 청소년의 욕구 분석.
- **진로(취업)**: 진로탐색, 진로 영역에 대한 욕구 분석, 이전의 일과 관련된 경험

탐색(아르바이트 등), 필요시 진로적성검사 실시.

- **자원활용:** 교사, 선배, 종교인 등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 사회적 자원의 정도에 대한 파악,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 수준 파악.
- **원가족과의 연계:** 가족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파악하여 원가족 복귀 여부 판단, 부모/친척 등의 자원 및 욕구 파악, 진단결과 원가정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는 원가정 복귀 지원.

2) 자립준비 단계

자립준비 단계에서는 9가지 영역에 걸친 다양한 자립기술들을 연습하며 성인기의 자립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이전 단계의 종합진단의 결과에 따라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춰 순차적인 훈련이 제공될 수도 있고, 청소년 개인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또는 선택형으로 지원의 순서가 정해질 수도 있다. 이 단계는 모든 영역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청소년의 욕구에 따라 일대일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다. 각 영역의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예, 세탁기 사용하는 법) 개발, 외부전문가 활용 등 서비스 전달 방식의 효율화, 다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매뉴얼 개발이나 외부전문가 활용에 있어 가출청소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 **주관리기관:** 중장기청소년쉼터
- **지원형태:** 원가족 복귀가 어려운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전 단계의 종합진단 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주거:** 집 구하기 체험을 통한 집 구하기 기술 훈련, 독립생활관 체험을 통한 주거관리 훈련.
- **일상생활기술 및 건강관리 :** 규칙적인 생활습관 체득, 의복청결 유지하기, 자기 주변 정리하기, 응급상황(도난, 화재 등) 대처방법 익히기, 건강한 식습관 기르기, 신체청결 유지하기 등 일상생활기술훈련, 술담배 등 유해약물 차단을 위한 예방교육, 상비약 종류 및 사용법 교육, 질병치료, 성교육(성병예방, 피임, 임신)에 대처하기, 건전한 이성 관계 교육 등), 주기적인 건강검진 및 의료보호서비스

스 제공.

- **심리/정서:** 지속적인 상담 및 치료 제공, 분노조절, 스트레스 관리 훈련, 공격성 감소 훈련,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심리적 개입 지원.
- **사회성 발달:** 친구사귀기, 친구간의 예절 및 성인과의 예절 등 대인관계훈련 및 예절/습관 교육, 의사전달방법, 자기주장훈련 제공, 법·규범 등 사회규칙 준수 훈련.
- **학업:** 학업동기강화, 학습흥미유발, 복교/검정고시/대학진학 등 학업계획 수립, 고교/대학입학정보 및 복교/검정고시 정보제공, 검정고시 준비 및 기초학습 지도.
- **진로(취업):** 직업체험을 통한 다양한 직업 세계의 이해, 자신의 적성 및 능력 알기, 향후 취업 계획을 포함한 자립계획수립(ISP), 자격증 취득 지원, 직업인 멘토 연계, 직업훈련제공, 인턴십, 근로권 교육,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구직과정 이해.
- **경제:** 수입, 지출에 대한 합리적인 경제사고 수립, 구체적인 돈관리 방법 연습 및 체험, 합리적인 소비, 통장 만들기 등 구체적인 실물경제체험.
- **자원활용:** 청소년기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조사하기, 긴급사고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정보 탐색, 법관련 자원활용 정보교육, 구직 사이트 활용 등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원활용기술 훈련.
- **원가족과의 연계:** 향후 자립이행과정에 있어 원가족과의 부정적 관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원가족과의 문제 해결 지원.

3) 생활전환 단계

현재 가출청소년의 경우 쉼터 퇴소 후에는 주거 지원, 의료보호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이 제공되지 않으므로(부록5 자립지원영역별 지원 현황 참조) 쉼터 퇴소 후에도 일정기간 위 영역에 대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모형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 이행을 위하여 퇴소 후 5년까지 그룹홈 형태의 주거 시설 제공, 의료보호서비스 지원, 직업훈련비 또는 대학등록금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도록 제안하였다.

생활전환 단계에서는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독립에 대한 욕구를 존중하며 지나친

지도감독 과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청소년이 직장생활 또는 사회생활 중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요청행동 강화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방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통하여 향후 자립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관리기관 : 중장기 청소년쉼터**
- **지원형태:** 5-6인이 생각하는 그룹홈을 중심으로 만 18세 서비스 제공 시점 종료이후, 즉, 중장기쉼터 퇴소 이후 2년간의 서비스 제공 단계.
- **주거:** 5~6명이 거주하는 그룹홈 형태의 센터형 주거 공간 제공. 주거 비용에 대한 부분적인 수익자 부담: 예) 월세 50% 및 관리비 부담 등. 자립지원관을 메인 오피스로 하고, 사례관리자가 순환근무하며 그룹홈별로 1일 8시간 근무
- **일상생활기술 및 건강관리:** 이전 단계에 배운 일상생활기술 및 건강관리기술 적용 활용 점검, 퇴소 후 5년까지 의료보호 제공
- **심리/정서:** 사례관리자의 슈퍼바이징을 통한 정례적(월1회)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 **사회성 발달:** 취업 후 나타날 수 있는 미묘한 직장갈등상황에 대한 사회기술 멘토링 제공, 결혼의 의미와 배우자의 부모역할,
- **학업:** 어학·자격증 취득을 위한 바우처 제공, 장학금 지속 연계
- **진로(취업):** 인턴쉽을 통해 진로 결정을 내리고,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술 향상, 이력서 쓰기, 면접 기술 등 구직에 필요한 기술을 연습할 수 있게 지원, 근로자 권리(4대 보험 가입 등)에 대한 교육, 안전한 직업환경 선택하기, 취업청소년들에게는 직업내 멘토 연계
- **경제:** 자립정착금 및 취업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저축계획을 수립하고, 규모있게 지출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
- **자원활용:** 청소년이 문제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도움요청행동 강화하여 다양한 법률, 의료적 자원 활용 유지관리기술

4) 독립생활 단계

독립생활 단계는 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기보다는 필요 시 요청에 따라 정보제공,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차원의 간접적 지원을 제공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주거나 취업, 경제 등에 있어 예기치 못한 사고나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즉, 독립생활 단계는 자립 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갈등에 의해 자립 생활이 좌절되지 않도록 사회적 지지망과의 긍정적 연계를 유지하고, 서비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단계이다.

- **주관리기관** : 중장기 청소년쉼터
- **지원형태**: 퇴소후 3년 이상 ~ 5년 미만 아동·청소년들에게 독립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내용. 분기별 전화 점검.
- **주거**: 1~2명이 생활하는 독립생활 주거 제공. 주거 비용에 대한 상당 부분 자가부담으로 본인의 자가부담율에 따라 지속적인 주거 유지 가능.
- **심리/정서**: 사례관리자는 청소년의 정서 및 심리적 상태, 건강상태에 대해서 점검하며 청소년 요청 시 관련 지원 서비스에 연결.
- **진로(취업)**: 구직 기술, 직장 내 예절, 지속적인 자기개발 등 직장 유지에 필요한 지도 제공.
- **경제**: 수입에 대한 지출관리, 신용등급 유지하기.

마. 학업중단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학업중단청소년은 학업중단으로 인한 교육습득 기회의 중단으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심리/정서, 사회적 발달 등 이차적인 문제로 인해 자립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집단으로 현재 대상에 대한 지원 책임이 불분명하나, 어느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학업중단청소년들은 전국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자립준비에 대한 지원을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함을 제안하였다.

학업중단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역시 가출청소년과 같이 연령이 아닌 학업중단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모형을 구성하였다. 학업중단 초기에는 자립영역에 있어 자립준비

에 필요한 개별육구조사 및 학업중단으로 인한 심리/정서 지원 영역의 지원을 강조하였다. 학업중단청소년은 구조적인 가족해체가 아닌 대상으로 주거영역은 모형에서 제외하고, 소속이 없는 청소년들이 필요한 자립영역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자립지원 모형을 제시하였다.

구조적인 가족해체가 아닌 대상으로 주거영역은 모형에서 제외하였으며, 학업영역 및 심리/정서 영역에서 특히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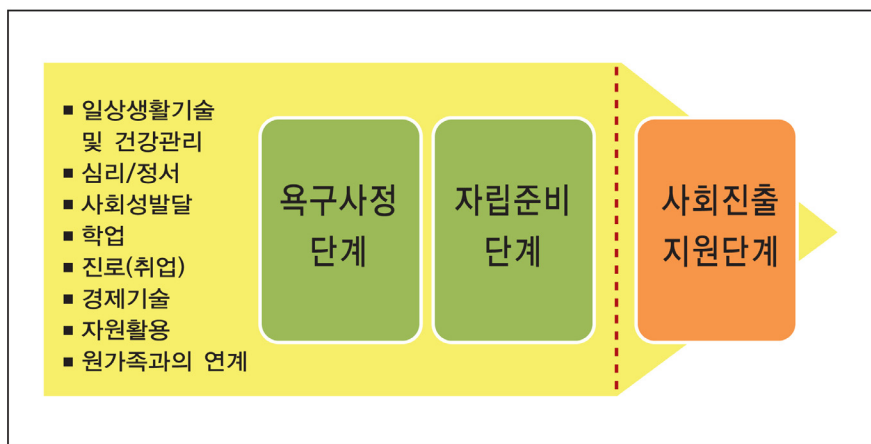


그림5. 학업중단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표 44. 학업중단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 자립지원 영역 | 육구사정 단계 | 자립준비 단계 | 사회진출지원 단계 |
|------------------|---------------------------------|---|-------------------------|
| | ·학업중단후, 초기 | ·자립준비수준 점검 ·학업중단 시기에 따른 자립기술훈련 | ·사회진출후, 1년 |
| 일상 생활 기술 및 건강 관리 | ·일상생활기술 평가 | ·규칙적 일상생활 체득 ·술/담배/약물교육 ·성교육 ·자기보호기술 | ·일상생활관리 |
| 심리 /정서 | ·종합적 심리평가(우울, 불안, 분노조절, 정신장애 등) | ·위기 스크리닝 ·분노조절 훈련 ·자아존중감 훈련 | ·정례적 사례관리 ·필요시, 상담제공 |

| | | | |
|---------|-------------------------|---|-----------------------------|
| | ·라포형성 ·부모와의 관계 분석 | ·공격성 감소 훈련 | |
| 사회성발달 | ·또래 위험 및 보호요인 분석 | ·대인관계훈련 ·예절/습관 교육 ·멘토연계 ·의사전달 방법교육 ·사회규칙 준수 강화 훈련 | ·자조집단 운영 |
| 학업 | ·학업중단 원인 평가 ·학업욕구 분석 | ·학업동기강화 ·학습흥미유발 ·복교/검정고시 정보제공 ·해밀사업 | |
| 진로 (취업) | ·진로탐색 ·진로영역의 욕구분석 | ·자립계획수립(ISP) ·진로미결정 완화 ·진로행동 강화 | ·인턴쉽 ·직업훈련 ·직장인 멘토 연계 |
| 경제 기술 | ·용돈관리실태 분석 | ·합리적 경제사고 수립 ·실물경제체험 ·특별지원 청소년 선정 ·구체적인 돈관리 방법 | |
| 자원 활용 | ·인적, 물적 지지자원 조사 | ·지역사회 자원조사(심리/정서, 학습, 취업, 정보의 지지 | ·자원정보유지관리 |

1) 욕구사정 단계

학업중단이후 욕구사정단계는 자립준비를 위한 초기단계로 정례적으로 상담지원센터의 방문 및 실무자와의 라포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초기 사례관리 강화와 이를 토대로, 자립준비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동기화를 제공하여 이후 자립준비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주관리기관 :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 **지원형태 : 교과부 및 지역교육청을 통해 자립지원을 위한 학업중단청소년을 확보하고, 필요한 욕구를 사정하는 단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전문가들에 의한 학업중단 원인, 주변자원 조사 등 종합진단 실시**

- **일상생활기술 및 건강관리:** 학업중단 이후 시기의 일상생활기술을 평가하여 향후 지원 필요 계획 수립함.
- **심리/정서:** 학업중단의 유형을 살펴보고 종합적 심리평가(우울, 불안, 분노 조절, 정신장애, 부모와의 관계형성 등)를 실시하여 학업중단에 이르게 된 심리적 요인 평가. 실무자와의 라포형성 시작하고 소속감을 갖게 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을 구조화하여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사회성 발달:** 또래의 위협 및 보호요인 분석, 부모 및 어른들과의 관계 평가 필요
- **학업:** 학업중단에 대한 원인 분석. 학업중단의 유형(능동형, 도피형, 불가피형)에 따라 진학에 대한 욕구가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복교·검정고시·(학력 인정형)대안학교에 대한 정보 제공
- **진로(취업):** 진로탐색, 직업세계에 대한 안내를 제공. 취업 및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 조사.
- **경제:** 용돈관리 실태 분석
- **자원활용:** 부모·친구·형제 등 인적 지지자원 및 물질적·정보적 지지를 할 수 있는 물적 지지자원에 대한 조사로 주변활용자원 평가

2) 자립준비 단계

자립준비단계에서는 학업중단에 따른 기초적인 자립준비 교육 및 개별 특성, 욕구에 따른 지원과 경제, 자원활용, 심리/정서, 일상생활기술 등 기본적인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시기로 다양한 교육 및 체험과 동시에 미래의 자립지원계획(ISP)의 수립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주관리기관 :**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 **지원형태 :** 개인의 욕구 및 자립목표에 따라 교육·체험·실습 중심의 자립준비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단계
- **일상생활기술 및 건강관리:** 학업중단으로 인해 흐트러진 생활을 규칙적인 생활습관으로 체득, 응급상황(도난, 화재 등) 대처방법 익히기, 건강한 식습

관 기르기, 신체청결 유지하기, 질병에 대처하기, 술·담배 등 유해약물 차단을 위한 예방교육, 상비약 종류 및 사용법 교육, 성교육(성병예방, 피임, 임신에 대처하기, 건전한 이성관계 교육 등).

- **심리/정서:** 위기 스크리닝, 학업중단의 원인 파악, 분조조절,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심리적 개입, 공격성 감소 훈련
- **사회성 발달:** 친구사귀기, 친구간의 예절 및 성인과의 예절 습득, 좋은습관 만들기 과정, 문제 봉착시 문제해결에 필요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법·규범 등 사회규칙 준수 훈련,
- **학업:** 진학에 대한 욕구가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학업동기강화, 학습흥미유발, 학업계획을 수립하여 복교/검정고시/대학(고교)진학 등 학업계획 수립, 고교(대학)입학정보 및 학습지원반 및 학습지원멘토 연계를 통한 학업능력 강화 지원, 해밀사업 연계를 통한 지속적 학업지원
- **진로(취업):** 다양한 직업의 세계 이해하기, 자신의 적성 및 능력 알기, 구직과정 이해, 목표 직업 성취를 위한 경력과정 이해, 직업체험, 자격증 취득 지원, 직업인 멘토 연계, 직업훈련제공, 인턴십, 근로권 교육,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자립계획수립(ISP), 직장인의 이해, 창업에 대한 욕구가 있는 청소년들은 창업교육
- **경제:** 수입·지출에 대한 이해, 합리적인 경제사고 수립, 구체적인 돈관리 방법 연습 및 체험, 특별지원 청소년 선정이 가능한 청소년은 선정으로 경제적 지원, 실물경제체험
- **자원활용:** 지역사회에 청소년기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조사하기, 긴급사건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정보 탐색, 법관련 자원활용, 구직사이트 활용 등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정보제공, 복교 및 검정고시 등 진학과 관련 정보제공, 직업훈련 및 취업 등 취업과 관련 정보제공

3) 사회진출 지원 단계

사회진출을 실시한 청소년들에게는 정례적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연계자원이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필요시 추가적으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취업에 대한 욕구가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취업정보, 직장유지기술을 제공하고 자립이행과정

에서 필요한 자립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 **주관리기관** :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 **지원형태** : 진학, 취업, 직업훈련 등 사회진출 후, 1년간의 서비스 제공 단계
- **심리/상담**: 정례적 사례관리(월 1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심리/정서 부분의 어려움을 겪을 경우 상담서비스 제공
- **사회성 발달**: 진학 및 취업 후 나타날 수 있는 미묘한 갈등상황에 대한 사회기술 멘토링 제공, 자조집단 운영으로 어려움을 함께 겪은 또래들과의 지지 자원 확보 및 후배들과의 멘토로서의 역할 부여
- **진로(취업)**: 인턴십을 통해 진로 결정을 내리고,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술 향상, 이력서 쓰기, 면접 기술 등 구직에 필요한 기술을 연습할 수 있게 지원, 근로자 권리(4대 보험 가입 등)에 대한 교육, 안전한 직업환경 선택하기, 취업청소년들에게는 직장내 멘토 연계
- **자원활용**: 청소년이 문제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도움요청행동 강화하여 다양한 법률, 의료적 자원 활용 유 지원 관리 기술, 자립정보 이메일 또는 문자 전송

3.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개발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일반청소년과 함께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및 학업중단청소년 등의 자립관련 특성 조사자료와 관련 전문가들의 델파이 방식의 의견조사, 외국의 자립관련 프로그램 개관 등의 선행연구,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개발된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취약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제공되어야 할 지원 내용은 크게 9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거관련 지원뿐 아니라, 일상생활 기술, 심리정서, 사회기술, 학업, 진로 및 취업, 경제, 의료 및 법률, 자원활용, 부모관련 지원 등의 영역이 그것이다. 선행연구 및 델파이 조사, 청소년 특성조사 뿐 아니

라 모형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대략적으로 이러한 9가지 영역에 포괄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취약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9가지 영역의 지원이 모두 필요함이 시사되고 있다.

둘째, 이와같은 9가지 영역의 지원이 취약 청소년들의 대상군 특성과 관련 없이 전반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영역이기는 하나, 몇 가지 측면에서 크게 양육시설 및 그룹홈, 위탁가정청소년들의 지원과 청소년쉼터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 학업중단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차별화된다. 즉, 양육시설이나 그룹홈, 위탁가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환경적 문제에 의해 기관 및 위탁가정에 의뢰되어 거주하고 있는 경우이며, 이러한 경우 연령으로 인한 기관보호 종료 이후의 지원여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 청소년쉼터의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집을 가출한 사례가 많으며 심리정서 및 사회기술 측면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또한 이들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에 이르러 나타나는 ‘가출’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므로, 대상연령이 양육시설 등에 비해 늦은 편이다. 학업중단청소년들은 부모의 보호하에 있고, 거주할 주거공간은 있으나 심리정서 및 행동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체계 내에서의 교육을 중단하게 된 청소년들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이들 취약 청소년들의 자립지원 모형을 양육시설 및 그룹홈, 가정위탁(이하 양육시설 등) 청소년 지원모형,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모형, 학업중단청소년 지원모형 3가지로 제안하였다.

셋째, 본 모형에서는 단계 이행에 따라 지원되는 서비스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으나, 이와함께 사례관리의 빈도 및 직접 서비스 제공 등의 사례관리 집중도에도 차이가 있다. 즉, 퇴소 전 시기 혹은 고등학교 졸업 전 단계까지는 매우 집중적이고 빈번한 사례관리를 하게 하나, 퇴소 후 혹은 고등학교 졸업시기 이후에는 점차 간헐적이고 간접적, 연계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사례관리로 그 집중도가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양육시설 및 그룹홈, 가정위탁 청소년 지원모형의 경우 시설 퇴소 전 2단계, 퇴소 후 3단계의 모두 5단계 모형을 가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퇴소 전에는 자립준비기초단계(중학생 시기)와 자립준비심화단계(고등학생 시기)의 2단계를 통해 퇴소

후의 자립을 계획적으로 발달단계에 맞추어 준비한 뒤, 퇴소 시부터는 생활전환단계(1년), 준독립단계(2년-5년이하), 독립생활단계(5년이후)의 3단계로, 이후의 자립에 따른 지원을 차별화하여 점차적으로 완전독립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양육시설 및 그룹홈, 가정위탁 청소년 지원에 있어 각 단계의 핵심은 퇴소 전 2단계에서는 발달단계에 맞추어 9가지 서비스를 체계화하여 제공하고, 퇴소 후에는 지원되는 주거양식과 사례관리 정도에 점차적인 변화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자립준비 기초단계에서는 각 영역의 교육과 준비를 통해 자립준비를 위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자립준비심화단계에서는 체험중심, 실습 및 적용 중심을 통해 퇴소 후의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퇴소 후 1단계에 해당하는 생활전환단계에서는 기존의 자립지원시설을 활용하여 24시간 상주하는 슈퍼바이저가 시설에 거주하면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제공하나, 전반적인 생활은 자신이 스스로 관리하며 책임지도록 지도하는 시기이다. 퇴소 후 2단계에 해당하는 준독립생활단계는 퇴소 후 2년 이후부터 5년 이하까지 가능한 단계로 소속사 형태의 주거공간에 거주하면서 대부분의 생활을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이들의 생활을 지도하며 사례관리를 통해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주는 방식이다. 이후 독립생활단계에서는 독립공간에 개인적으로 거주하며 필요시 사례지도와 자원연계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다섯째, 청소년 쉼터 청소년의 경우에는 크게 쉼터 입소단계와 자립준비단계, 생활전환단계와 독립생활단계의 4단계로 구분하여 모형을 구상하였다. 먼저 입소단계에서는 단기쉼터 혹은 장기쉼터에서 이들 청소년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가정복귀가 아닌 쉼터의 중장기 지원이 필요한 사례로 파악되는 경우 이들을 위한 자립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 쉼터 청소년들의 경우, 가출원인부터 환경, 특성 및 입소연령과 학력수준에 있어 매우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의 자립지원 관련 영역에 대한 총괄적인 사정에 근거하고,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한 후, 맞춤형, 개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많은 가출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만성적인 가출에 의해 조직에 적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만성적인 가족갈등 혹은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경우가 많아, 기초학습능력의 어려움 뿐 아니라 정서적인 불안정성, 대인관계 불신 및 사회기술, 생활기술의 부족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개별적,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이후의 자립이 가능한 것으로 시사된다. 이와같이 자립지원 단계에서의 다양하고 집중적인 개별적 맞춤형 지원에 의해 어느 정도의 자립역량이 강화된 후, 연령적 한계에 의해 퇴소를 하게 되는 경우, 이들 청소년들에게 5-6명이 함께 생활하는 그룹홈 형태의 주거공간이 제공되고 일상생활 및 다양한 영역에 대한 주기적인 사례관리와 슈퍼비전이 제공되는 생활전환단계가 요구된다. 특히 이 시기 인턴쉽 및 직장훈련을 경험하거나 학업을 지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도 연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시사된다. 마지막으로 쉼터 퇴소 후 2년 이후 5년 이하의 시기에는 1-2명의 청소년이 그들의 독립생활을 영위하고, 운영하면서 필요한 상황에 대한 지원이나 슈퍼비전, 사례관리를 제공받는 독립생활 단계가 제공됨으로써 안정적인 방식의 자립과 독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학업중단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위의 양육시설이나 쉼터 청소년과는 달리 주거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가장 저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 청소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가정 내 안주하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아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더욱 자립이 어려워 수도 있다는 점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 청소년 특성조사에서도 이들 학업중단청소년들의 정서적 불안정성, 진로성숙도와 생활기술, 사회기술 등이 가장 열악하면서도 그들에게 필요한 자립지원 욕구도 매우 낮아 현재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도 잘 모르고 있음이 드러났다. 즉, 이들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정규적인 학교제도를 통한 사회화 과정 및 자립역량 개발을 스스로 거부하는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많은 경우 이들의 부모들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주거 및 물질적 지원은 기본적으로 제공하지만, 이들을 건전한 성인기로 이행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혼란을 경험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 학업중단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업중단의 문제를 현재와 같이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책임으로 돌리고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등교육까지는 의무교육인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셈이다.

우선 이러한 학업중단청소년들에게 적절히 개입하기 위해서는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이를 담당할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와 연계

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체계는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합적, 체계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교육제도 내에서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만약 그럼에도 이러한 학업중단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기본적인 개입 후 이들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담당할 지역사회의 기관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들 학업중단청소년들에 대한 전문기관은 명확치 않으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밀사업, 두드림존, 청소년동반자 운영을 통해 이들 학업중단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한적이거나 제공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 모형에서는 이들 학업중단청소년에게 첫 단계로 정확한 욕구사정을 실시하여 이들 청소년의 상태와 자립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고, 자립준비단계에서는 개별화 맞춤형 서비스와 다양한 자원의 연계지원을 통해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경우, 1년 동안은 정례적 사례관리와 상담제공을 통해 이를 사회복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한 취약 청소년들의 자립지원 모형 개발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취약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제시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후의 자립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양육시설과 그룹홈, 가정위탁 청소년들과, 가출을 통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게 된 청소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가진 상이한 상황과 특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영역으로 고안하여 청소년들의 각 발달단계 혹은 그들의 지원단계에 따라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이러한 모형을 통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청소년들의 경우 정규교육과정과 가정의 지원을 통해 무사히 이행하게 되는 자립과정을 이들 취약 청소년들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사회적 차원으로 어떠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고안하였다.

둘째, 다양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조사, 각 대상 청소년들의 특성 조사 등 모형개발 과정에 다양한 자료를 참조하고 자료를 통합하여 이러한 모형을 개발하였다는 것

이 또 다른 의의일 것이다. 본 연구과정에서는 이들 취약 청소년들의 자립과 관련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실무자와 학계전문가에게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72명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모형 내에 수렴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외국의 선행 프로그램을 참조하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본 모형에서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취약 청소년들의 정서안정성, 생활기술, 사회기술, 진로성숙도, 진로장애 등의 다양한 영역의 조사를 통해 이들 청소년들에게 더욱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이를 모형 내에 통합하고자 하였다.

셋째, 취약 청소년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9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양육시설과 그룹홈, 가정위탁 청소년들에게는 5단계 지원을, 청소년 쉼터 청소년들에게는 4단계 맞춤형 지원을, 학업중단청소년들에게는 3단계 맞춤형 지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9가지 영역은 학업중단청소년과 일부 가정위탁 청소년을 제외한 양육시설과 그룹홈, 가정위탁청소년, 쉼터 청소년에게는 매우 공통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필수적인 영역인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확인하였다.

넷째, 전문가 델파이 조사 뿐 아니라 전문가 자문, 청소년 특성조사 등을 통해 9가지 영역의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성을 최소한 일정시기까지 제공하는 것이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심리정서적 지원임을 파악하였다. 즉, 이들 취약 청소년들이 경험한 다양한 학대, 방임 및 상처로 인해 그들의 자존감과 자신감 부족, 미래에 대한 희망없음 등 심리적 취약성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심리적 취약성이 이후에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러한 심리적 취약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수적이고 중요하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취약 청소년의 자립에 있어서 물질적, 복지적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적 지원이 필수적인 영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위에서 제시한 중요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모형 개발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었으며, 이러한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치명적인 한계로서는 이러한 제공되어야 할 지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혹은 어떤 부처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게 할 것인지 등을 구상하지 못한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영역을 구분하고, 이들 청소년들의 상태를 파악하며,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파악은 하였으나, 이들에게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지원을 제공할 것인가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측면의 한계가 있었다. 추후 서비스 전달체계 구상, 정책적 협력 마련 방안 등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점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양육시설 및 그룹홈, 가정위탁 청소년들의 지원방안을 하나의 모형으로 간주하면서 이들 기관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육시설과 그룹홈의 경우에는 그나마 대상과 지원방식에 유사성이 크나, 가정위탁의 경우에는 친인척위탁, 대리양육, 일반위탁 등의 위탁의 종류에 따라 매우 큰 지원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큰 모형 아래, 각 유형별 세부적인 자립지원 모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쉼터와 학업중단청소년의 자립모형의 현실성 및 실용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양육시설 및 그룹홈, 가정위탁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이 일부나마 제공되는 모델 양육시설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모범사례도 제시되고 있어 이러한 모형에 대한 현실가능성이 있으나, 청소년쉼터와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자립모형은 현재 이러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체계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형이 '상상적 모형'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청소년 특성 조사에서도 제시되었던 것처럼 이들 청소년들의 상태는 더욱 열악한 상태이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그 어떤 대상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추후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지원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정선 (2003). **아동양육시설 퇴소예정아동의 자립준비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현아, 신혜령, 박은미 (2009). 시설 퇴소청소년의 성인전환 단계에 따른 자립 및 사회적응 현황. **한국아동복지학**, 30, 41-67.
- 구본용, 신현숙, 유제민 (2002).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중퇴 모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0(2), 35-57.
- 구본용, 유제민 (2003). 중퇴에 관한 위험 및 보호요인의 신경망 모형. **한국건강심리학회지**, 8(1), 133-146.
- 권세은 (2002).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 정서조망능력과 자기역량 지각의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이종 (2004). 학교 밖 청소년 길 찾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현판식 및 학술세미나.
- 김미숙 (2009). 일본의 니트(NEET) 현황과 자립지원정책에 관한 고찰. **청소년복지연구**, 11(4), 173-199.
- 김미연 (2009). **그룹홈 청소년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자 (1991). **일반 및 시설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지위와 환경지각에 관한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김아영, 차정은, 이은경 (2006). **청소년용 진로발달검사 개발(2차년도)**. 한국고용정보원.
- 김은영 (2000).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인숙 (1994). **빈곤여성의 사회적 환경요인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준호, 박정선 (1993).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향초 (2001). **가출청소년의 이해와 개입방법**. 나눔의 집.
- 노승용 (2006). **텔파이 기법: 전문적 통찰로 미래예측하기**. 국토연구원, 국토, 299.

- 노충래 (2001). 한국 및 미국의 요보호아동의 자립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분석. 한국아동복지학회, 제 14회 학술대회.
- 노충래, 김미영, 박은미, 강현아, 신혜령 (2008). 발달단계 및 위탁형태에 따른 가정 위탁보호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8, 238-264.
- 박경준 (2008). 리얼타임 텔파이 기법: 익명성이 보장된 전문가 예측. 국토연구원, **국토**, 317.
- 박미양 (2005). **그룹홈 거주 청소년들의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정 (2009). **자립준비프로그램과 사회적 지지가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자립생활준비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미, 장신재 (2009). 시설보호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47(4), 111-119.
- 박은선 (2004).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일반주의 실천 접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실천**, 4, 85-112.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영태 (2003). **중고생의 중도탈락 인과모형 검증과 판별척도 개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서영인 (2008). **대학 경쟁력 평가를 위한 평가준거 및 지표의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혜옥, 최외선, 이미옥 (2008). 시설청소년의 자립 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가족복지학**, 13(4), 185-203.
- 송복, 손승영, 조혜정, 황창순, 김병관, 정경희 (1996). 학업중퇴자 연구-실태와 대책.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신현숙, 구분용 (2002). 중퇴생, 중퇴 고위험 및 저위험 재학생의 비교: 개인 및 사회 환경 변인들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6(3), 121-145.
- 신혜령 (200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시설청소년과 보육사들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1, 90-124.
- 신혜령 (200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시설청소년과 생활복지사의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혜령, 김성경, 안혜영 (2003). 시설 퇴소아동 자립생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6, 167-193.
- 신혜령, 박은미, 강현아, 이현주, 한규제, 김경희 (2008).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 안창규 (1995). **가출청소년과 학교관리체제**. 집문당.
- 안현의, 이소영, 권혜수 (2002). 학교 중도탈락 청소년의 욕구와 심리적 경험 조사,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46**, 19-31. 한국청소년상담원.
- 양심영 (2003). 가정위탁서비스의 보호형태별 특성과 위탁아동의 적응에 관한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14(5), 131-148.
- 오경자,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중앙적성출판사.
- 오승환 (2001). **저소득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성경, 이소래 (1998).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개입체계 개발 연구**. 청소년대화의광장.
- 원지영 (2008). 아동복지시스템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 현황과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5(7), 79-107.
- 이강훈 (2003). **육아시설퇴소예정아동의 자립지원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림 (1999). **실업계고등학교 중퇴와 관련된 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체계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영 (2000). **학교중단 청소년의 중퇴 이후 적응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숙 (2004). 취약계층의 방문간호 서비스 요구 특성. **대한간호학회지**, 34(6), 1025-1034.
- 이혜은, 최재성 (2008). 아동양육시설 퇴소청소년의 경제적 안정성, 거주 안정성,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5(2), 209-233.
- 전광현 (2002). 일본의 시설아동 자립지원정책. 시설아동자립지원정책토론회자료집.

국립보건원.

- 정선욱 (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선욱 (2008). 시설 퇴소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관련 요인. **청소년학연구**, 17(2), 233-252.
- 정익중 (2007). 미국 요보호아동의 퇴소후 자립관련 프로그램과 시사점.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 조용태, 배영태 (2003). 학교 중도탈락의 요인에 관한 고찰. **교육학 논총**, 24(1), 173-192.
- 조현경 (1995). **시설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금옥 (2002). **정규교육 중도탈락 청소년의 진로장애 지각에 관한 탐색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아 (2007).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가정 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허남순 (2004). 친인척 가정위탁과 일반가정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위탁가정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8, 243-270.
- 홍봉선, 남미애 (2002). **청소년 복지론**. 양서원.
- 황미정 (2009). **빈곤청소년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개인적 변인, 환경적 변인, 진로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황실리 (2000). **육아시설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day, L. A. (1993). Indicators and Predictors of Health Services Utilization, In Williams, S. J. & Torrens, P. R.(Eds), *Introduction to health services*(4th ed., pp. 46-70). Albany, NY: Delmer.
- Barth, R. P. (1990). On their own: the experiences of youth after foster care.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7, 419-440.
- Coddington, R. D. (1972). The Significance of Life Events as Etiologic Factors in the Diseases of Childre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6, 7~18.

- Collins, M. E., Paris, R., & Ward, R. L. (2008). The permanence of family ties: implications for youth transitioning from foster car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8*, 54-62.
- Cook, R. J. (1986). *Independent Living Service for Youth in Substitute Care, Prepared for Administration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Rockville, MD:Westat, INC.
- Courtney, M. E., Piliavin, I., Grogan-Kaylor, A., Nesmith, A. (2001). Foster Youth transitions to adulthood: a longitudinal view of youth leaving care. *Child Welfare, 80*, 685-717.
- Dupper, D. R. (1993). Preventing School Dropouts : Guidelines For school Social Work in Practice. *Social Work in Education, 15*(3), 141-149.
- Harvey, R. D. (2001).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Phenomenological Impact of Social Stigma.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2), 174~189.
- Hines, A. M., & Wyatt, P. (2005). Former Foster Youth Attending College: Resilience and the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5*, 381-394.
- Malluccio, A., Krieger, R. & Pine, B. A. (1990). Assessing skills for interdependent living. In A. N. Maluccio, R. Kreiger, & B. A. Pine(eds.), *Preparing adolescents for life after foster care*. Washington DC: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77-89.
- Nollan, K. A. M., Wolf, D., Ansell, J., Burns, L., Barr, W., Copeland, & Paddock, G. (2000). Ready or not: Assessing Youths Preparedness for Independent Living. *Child Welfare, 79*(2), 159-176.
- Pasztor, E. M., Clarren, J., Timmberlake, E. M., & Bayless, L. (1986). Stepping Out Foster Care into Independent Living, *Children Today, 3*, 32-35.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wanson, J. L., Danniels. K. L., & Tokar, D. M. (1996). Measuring perception of career-related barrier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219~244.

Touchton-Cashwell, S. A. (1999). *Redefining welfare dependency and self-sufficiency: Dependency targets of former rural welfare mot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Tallahassee.

Zimmerman, R. B. (1982). *Foster Care in Retrospect*. New Orleans, LA: Tulane University Press.

http://www.acf.hhs.gov/programs/opre/abuse_neglect/chafee/reports/eval_1st/eval_1st.pdf

<http://www.connexions-direct.com/>

<http://www.jobcorps.gov>

http://www.mass.gov/Eeohhs2/docs/dss/Chaffe_etv_plan.pdf

<http://www.yobaltimore.org>

<http://www.youthbuild.org>

<http://www.schotland.gov.uk/consultations/health/syplc.pdf>

부 록

1. 국내 취약 청소년 법, 정책, 제도 상세 현황
2. 델파이 조사 집단 간 차이 검증표
3. 델파이 조사 설문지
4. 취약 청소년 특성조사 설문지
5. 자립지원영역별 지원 현황

부록 1. 국내 취약 청소년 법, 정책, 제도 상세 현황

가. 국내의 취약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법규

1. 아동복지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자립지원'에 관한 규정 없음

2. 청소년기본법

- 법

· 제 46조(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설치)

① 시·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 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의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 제 50조(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비행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시행령

- 제 33조(시·도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 기관의 기능 등)
 -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3. 청소년복지지원법

‘자립지원’에 관한 규정 전혀 없으나, “특별지원청소년” 지원항목에 유사 의미포함

- 시행령

· 제7조(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기준)

- ① 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은 다음의 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 1.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2. 「초·중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로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
 - 3.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중에서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를 특별지원청소년으로 선정한다.
 - 1. 9세 이상 18세 이하일 것
 - 2.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 있을 것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

센터,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대상아동·청소년의 보호·자립지원
3.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아동·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지원시설의 종류)

- ①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외국인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는 그 해당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 ② 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은 청소년이 19세가 될 때까지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지원시설의 설치기준·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7조 (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숙식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9.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10. 그 밖에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청소년 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외국인여성 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업무와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활공동체 등의 운영
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의2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조정 등을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시설 및 상담소간 종합 연계망 구축
2. 성매매피해자 구조체계 구축·운영 및 성매매피해자 구조활동의 지원
3. 법률·의료 지원단 운영 및 법률·의료 지원체계 확립
4.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자립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대책 연구 및 홍보활동
6. 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7.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8. 상담원의 교육 및 양성,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기관 현황

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아동복지법 제 16조)-아동복지시설에 대부분의 시설포함

| 구 분 | 내 용 | 자립관련 해당시설 |
|-----------|---|--------------|
|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보육시설, 가정위탁 |
| 아동일시 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 아동보호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 | |

| | | |
|----------|--|--------|
| 치료시설 | 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자립생활관 |
|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청소년그룹홈 |
|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2. 가정위탁보호(대안가정에서 보호중심의 지원서비스/ 자립관련 내용이 전무)

1. 목적

-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2. 근거

- 아동복지법 제2조(정의), 제 10조(보호조치), 제 28조의 2(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 28조의 3(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 31조(비용보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3항, 제5조 제3항, 제 7조, 제 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조 등 관련조항
- 의료급여법 제 3조(수급권자)

3. 연혁

- 1990년 : 가정위탁사업 시범실시
- 2000년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2000년 ~ 2002년 : 가정위탁지원센터 시범운영(강원도)
- 2003년 : 가정위탁지원센터 전국 확대(16개 시도, 총 17개소)
- 2004. 7월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 2005년. 7월 : 아동복지법 개정(가정위탁보호의 법적근거 규정)
- 2006년 1월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4. 가정위탁의 정의(아동복지법 제 2조)

- 가정위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

5. 가정위탁의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6. 가정위탁기관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목적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 지원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문성 및 활성화를 도모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49,083천원), 가정위탁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가정위탁 연구·교육·홍보(140,000천원), 통합전산망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36,000천원)
- 기능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평가
 -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정책연구팀과 교육홍보팀으로 구성하여 가정위탁교육 홍보사업과 정책연구사업을 가정위탁의 발전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게 시행함

□ 소년소녀가정 지원(가정위탁에 포함)

1. 목적
 -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도모
2. 사업추진경위
 - 1984. 3. 13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대책”수립
 - 1985. 6. 11부터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실시
 - 2000. 9 지원대상의 명칭을 소년소녀가정(youth family)으로 변경
3. 추진방향
 - 소년소녀가정 지원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로 전환 추진
 - ※ 소년소녀가정 제도는 아동에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고 UN등에서도 폐지 권고

4.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부모제외)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 10조 제 1항 제 2호의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 10조 제1항 제3호의 가정위탁으로 선정
-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원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입소 강구
 - 다만, 형제, 자매 등 2인이상으로 당해 아동이 지역사회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인척 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를 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정
- 지원아동이 만 18세 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5. 지원내역

- 생계·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 ※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
 - ※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부가급여 : 70천원 이상/인·월(지방이양)
 - 부가급여액은 소년소녀가정 결정일이 그달의 15일 이전인 경우는 전액 지급하고, 16일 이후인 경우는 반액지급하되, 기초생활보장비와 같은 일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소년소녀가정지원 중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또는 중지 결정

일)의 다음부터 중지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가급여 등 필요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 전세자금 지원(국토해양부)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로서 무주택인 소년소녀가정
- 지원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포함)을 받아 지원대상가정을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지원대상가정이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함)에 전세자금 지원대상 추천

6. 정서적 후원

가. 후견인 지정

-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대해서는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종교인, 지역여성지도자, 공무원, 대학생 멘토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의논, 해결
- 후견인은 결연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후원금의 부적절한 사용방지
- 지정방법
- 지역사회내 근거리에서 아동을 보살필 수 있고 아동문제에 대한 열의가 있고 관심이 있는 자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 소년소녀가정 중 후견인이 없는 경우 선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신규로 책정한 경우 지정후 1개월 이내에 후견인을 지정토록 함

3. 공동생활가정 운영(그룹홈)

1. 목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근거

- 아동복지법 제16조(자립지원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배경

-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 보호로의 전환 강조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형태로 논의
- “국민복지기획단”(95. 3. 23)에서 마련한 국민복지기본구상에 그룹홈 도입 논의
- '96. 12월 그룹홈제도 도입을 결정하여 '97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공동생활가정을 추가('04년. 1월)

3. 운영

- 그룹홈 유형
 - 남녀의 구분에 따른 분류
 - 남녀분리형/ 남녀혼합형

4. 종사자의 역할

- 보호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갖도록 보호
- 보호하는 청소년의 개별적인 잠재능력과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별적인 자립지원대책을 수립하여 보호 양육**

4.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 목적
 - 도움이 필요한 아동 중 입양, 대리양육,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함
- 기본방향
 -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성격에 아동상담, 보호 및 치료, 일시호보, 가정위탁, 입양, 급식, 프로그램 제공 등 추가하는 아동복지시설 기능 다양화 추진
 - 아동복지시설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보호아동 보호· 양육기능에서 지역사회

- 회 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 시설로 운영추진
- 시설내에서 소숙사제도 등 소규모 가정단위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의 성장유도
- 시설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되 지원기준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경비, 공통경비, 간접경비를 통합, 총액기준으로 지원하여 예산집행의 탄력성 확보
- 시설운영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
- 조기자립유도를 위한 시설아동 자립지원대책 추진

5.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지원관)

- 1) 지원대상
 - ①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중인 아동(우선)
 - ②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준비중인 18세 이상 25세 미만인 자
 - ※ 취업준비중인 퇴소아동에 대한 이용이 확대되도록 복지부에서 권고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25세 미만인 자
- 2) 이용아동 생계비 지원 대상과약 및 지원
 - 지자체 및 시설장은 이용아동실태를 파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에게는 수급지원이 되도록 적극 안내(지원)
- 3) 자립지원시설을 운영하는 각 시도는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아동복지시설 운영활성화 방안 참조)
 - 지역내 최소아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확대 유도

<참고자료>

1. 아동복지시설 퇴소절차
 -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하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된 경우 퇴소. 다만, 다음이 경우 보호기간 연장가능(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11조)
 -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 아동직업훈련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중인 자
- 학원에서 교육중인 20세 미만의 자
- 질병, 장애 등을 이유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자

○ 시설별 보호기간 및 연장기간

- 일시보호시설 : 3월, 1회에 한해 3월 연장
- ※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하는 날까지 보호 가능
- 자립지원시설
 - 입소후 25세까지 이용가능하며(입소대상 연령이 25세 미만임) 26세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소후 기본 이용 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1년씩 2회 연장가능

2. 개인운영 아동복지시설 관리 및 아동보호 대책(청소년 그룹홈)

1) 미신고시설(개인운영시설) 아동보호대책 수립·추진

- 아동 자립지원 등 사후관리 강화

○ 아동사후관리 및 추가 지원방안 강구

- 아동은 국가의 미래자원이므로 지속적인 보호·육성 지원이 필요
-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등의 궁극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취업·상담지원·직업훈련 및 자립자본형성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 아동후원, 직업 및 특기교육, 자립저축 등 자립지원 방안 강구

○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 지자체는 시설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운영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단위 : 원, 인/월)

| 양육시설 | | 보호치료시설 | 직업훈련시설 | 자립지원시설 | 일시보호 시설 |
|---------|---------|---------|---------|--------|---------|
| 3세미만 아동 | 3세이상 아동 | | | | |
| 81,202 | 111,375 | 176,178 | 176,178 | 72,394 | 79,338 |

6. 자립지원센터

가. 목적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취업지원, 주거지원, 진학 및 학업지원, 생활상담 등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퇴소청소년들의 초기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 양성

나. 연혁

- 1976년 : 불우아동건정육성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성장고아 직장 알선 시작
- 1993년 :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서울자립지원센터의 5개소 설치 운영(보건복지부 위탁)
- 1998년 : 전국 16개 시도 자립지원센터 확대 운영
- 2007년 :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사무실 개소

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한국아동복지협회 및 시도 지부
- 지원내용
 - 인건비 : ('08년) 498,157천원
 - 전산운영경비 : ('08년) 20,188천원/년(16개소)

라. 사업추진방향

- 퇴소를 앞둔 고3 재학생과 퇴소아동에게 취업알선, 대학진학 상담, 자격증 취득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 사회적 자립 유도
- 상담기능과 역할강화로 욕구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비행청소년으로 탈선 예방활동
- 직업훈련, 기능교육, 사설학원 등의 교육을 통해 자립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자립능력 배양
- 자립에 필요한 상담 및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지원체계 확립 등

마. 사업대상

- 아동복지시설 고등학생 3학년 재학생
- 퇴소아동(만 18세 이상) 중 당해연도 기준 3년 이내 퇴소자
- 연장아동(만 18세 이상으로 시설보호기간이 연장 된 아동)
 - ※ 퇴소한 아동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자

바. 센터운영방침

-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를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 자립지원센터 설치 운영
- 시·도별 자립지원센터 전문상담원 배치 및 운영
 - ※ 경남 자립지원센터는 울산지역 포함하여 공동운영
- 자립지원센터 국고지원 예산외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시·군·구)로부터 예산·시설·인력·프로그램 등 자립지원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하며 지자체는 퇴소아동 자립지원에 적극 참여함

사. 사업내용

- 취업, 주거, 교육, 진학 등 자립전반에 관한 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
- 지역사회 자원 개발을 통한 전국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망(network)을 구축하여 체계적, 적극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정된 생활환경 지원
- 퇴소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사례관리를 통해 정서적 안정지원
- 시설 퇴소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관련기관 연계·협력체계 구축·운영
 - 정부 각 부처, 지방노동사무소, 취업알선센터, 직업훈련원, 기업체, 사회복지관, 종교단체, 각종 사회단체 등과 연계
- 인성검사, 적성검사, 성숙도 검사, 만족도 조사, 사회적응 프로그램(직장 체험활동) 등 실시
- 시설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자립에 필요한 조사·연구사업 및 자료전산화 및 체계적 관리
- 퇴소(예정)아동에 대한 1인 1기술갖기 운동 전개 및 1:1 지역사회 인사 등의 결연을 통한 상담·정서지지 및 후원추진
 - 지역사회기업·단체·인사 등의 참여유도

예) SK와 함께 하는 행복날개 프로그램/ '05년 ~ '11년 161억원

LG CNS지원 “IT지원 프로젝트 사업”/ IT관련 자격증 취득 및 장학금 지원 : 40명 '08년~'09년 2.2억원

공동모금회 지원 “청소년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이·미용, 요리, 간호사 등 자격증 취득지원, 150명, '06년~'08년 4억원

- 퇴소(예정)아동에 대한 욕구 및 실태조사 실시
- 각 지자체는 자립지원센터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지원

아. 예산현황

| 연도 | 2008 | 2009 | 비고 |
|----|---------|---------|--------|
| 예산 | 518,345 | 518,345 | 민간단체보조 |

자. 행정사항

- 한국아동복지협회는 09년 2월 10일까지 09년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내역,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보고해야 함
- 한국아동복지협회는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자립지원센터 운영실적을 보고해야 함
-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립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 지방비로 추가지원 가능

7.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기본법(제 46조- 사·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설치)

- ① 사·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자활연수팀
 - 지역내 위기청소년 현황 실태조사 및 관리
 -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직업능력향상(직업소개), 진로지도, 자활 지원사업
 - 위기청소년의 자립준비를 위한 토탈자활지원사업(두드림존 운영), 학습능력 향상지원
 -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인턴쉽 및 실습상담제도 운영

2.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

○ 통합지원팀

- 진로지도, 직업체험 안내, 직업능력향상 등 자립지원사업

8. 청소년쉼터

1. 법적정의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4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쉼터란 ①가출청소년의(대상) ②일시적인(보호기간) ③생활지원과 보호(서비스) ④가정·사회로의 복귀(단기목표) ⑤중장기적으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중장기목표) ⑥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시설 유형)을 의미함

-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 운영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청소년 복지사업, 선교·포교 등 행위를 수행하는 시설 또는 단순 청소년보호기관 등은 청소년쉼터가 아님

2. 청소년쉼터의 역할(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 13조 13항)

-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 그밖에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와의 연계협력 강화
- 청소년전화 “1388”과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선도·보호서비스확충
- ※ 쉼터는 보호뿐만 아니라 상담, **자활**, 고충처리 등 청소년 종합선도 터전으로서의 역할 수행

○ 운영내용

| | |
|------|--|
| 기간 | - 2년내의 중장기보호 |
| 이용대상 | -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 |
| 핵심기능 | -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 |
| 기능 |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환형, 가족형, 자립형, 치료형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
| 지향점 | - 자립지원 |
| 비고 | - 1회에 1년에 한하여 연장가능 |

○ 예산과목

사업비-자립지원 : 진로상담 및 교육비용, 직업체험비용, 직업훈련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등

3. 중장기 쉼터

○ 운영모형

| 표적집단 | 목적 | 서비스 요소 | 활동내용 | 산출 | 성과 |
|---------------------------------|-------------------------|-------------------|--------------------------------------|---|--------------------|
| 자립지원이 필요한 갈곳 없는 청소년 |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 | 보호 | · 생활지원 · 건강지원 · 상담지원 · 활동지원 | · 의식주지원 건수 · 의료지원건수 · 개인,집단상담건수 · 활동참여건수 | · 보호인원만족도 |
| | 청소년이 자립할수 있도록 지원 | 자립지원 | · 학업지원 · 직업지원 | · 교육지원건수 · 직업지원건수 | · 학업취득인원 · 취업인원 |
| | 청소년이 가정·사회복귀 | 가정·사회 복귀 지원 | · 가정·사 회적응지 원 | · 사후관리건수 | · 가정·사회 복귀인원 |
| (공통사항) | 보다 나은 청소년복지서비스 제공 | 지속개선 | · · · | · 훈련건수 · 홍보건수 · 개선건수 | · 전년대비 개선도 |

○ 운영목적

-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청소년의 사회복귀 지원
 - 연계서비스 : 핵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타 서비스
- 이용대상
 - 가정이 없거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출청소년 중 자립의 의지와 동기가 있는 청소년
- 서비스 기준
 - 서비스 내용
 - 의식주 생활관리 : 취침 및 기상, 식사, 공동생활 규칙 준수
 - 경제생활관리 : 소비지출관리, 저축관리 등
 - 건강관리 : 정기적 건강검진, 응급치료, 질병치료 등
 - 문화체험활동 : 다양한 문화체험, 취미생활지원, 봉사활동
 - 직업지원 서비스
 - 직업능력평가 : 진로탐색검사, 직업적성검사 등
 - 취업준비 : 직업정보 탐색, 구직전략 세우기 등
 - 취업훈련 : 인턴쉽 체험, 직업전문학교, 자격증 취득교육 등
 - 취업지도 : 구직활동지원, 직업생활유지 지원 등
 - 학업지원 서비스
 - 학력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 중·고등학교 복학지원 및 학교적응 지원
 - 학비지원
 - 상담서비스
 - 개별사례관리
 - 개인상담
 - 사례회의
 - 집단상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 | | | |
|-----------|---|-----------|--|
| 집단상담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기술훈련 · 대인관계훈련 · 자존감향상훈련 · 진로탐색 집단프로그램 ·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등 | 교육훈련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교육 프로그램 · 금연교육 프로그램 · 금전관리 프로그램 · 경제교육 프로그램 · 식습관, 예절교육 등 |
|-----------|---|-----------|--|

다. 취약 청소년 지원서비스

1. 아동복지시설 운영내실화

- 자립준비프로그램 운영확대
 - 시설입소단계부터 아동발달 단계에 따른(미취학·초·중·고·대학) 자립준비프로그램 운영
 - 시·도(시·군·구)는 입소때부터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재정적 지원과 기업체 등 지역사회를 연결해 주는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함
 - 시설은 입소부터 아동자립지원을 위한 아동의 개인별 특성을 파악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
- 시설유형별 세부 운영 지침
 -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시·도는 지역내에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지역실정과 시설여건이 적합한 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 또는 일시보호기능 추가하여 아동의 특성과 자립에 적합한 보호양육방안 강구함
 - 자립지원시설 운영이 미흡한 시·도 또는 시설환경 개선, 취업·상담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함
 - 단순 숙식제공에서 자립지원센터, 노동부 고용관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이 용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 추진
 - 자립지원시설이 없는 시·도(경기 등 6개 시·도)는 지역실정과 시설여건이 적합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함
 - 기존 아동복지시설중에서 입소률이 낮거나 시설유휴공간이 있는 경우 지역의 아동수요 등을 감안하여 자립지원시설 추가 운영
 - ※ 지자체는 자립생활관 운영비용을 추가 지원함.
- 자립준비 프로그램 내용
 - 자립준비의 영역은 다음의 8개 분야로 나눌 수 있음.
 - 1) 일상생활기술 2) 자기보호기술 3)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4) 돈관리기술
 - 5) 사회적 기술 6) 직업찾기 7) 직장생활 8) 다시 집 떠나기

- 각각의 영역 세분화 내용

| 영역 | 내용 | |
|-----------------|--------------|---|
| 1. 일상생활기술 | 의복의 구입과 손질 | - 옷장 계획, 빨래하기 |
| | 집 관리 | - 방청소, 욕실청소, 부엌청소, 전등 갈기 |
| | 음식준비와 요리하기 | - 식단짜기, 장보기, 요리하기 |
| 2. 자기보호기술 | 나 자신 돌보기 | - 깔끔한 나, 개인위생, 응급처치, 의료적 도움 구하기 (알콜, 담배) |
| | 건강 유지하기 | - 영양의 균형, 이럴때 이런음식, 운동, 충분한 휴식, 여가시간 |
| | 어른 되기 | - 어른이 되는 과정 : 육체적인 변화, 사춘기 |
| | 성(性) | - 성적인 행동, 성에 대한 신화들, 성적 관계는 언제? - 'NO'라고 이야기하기, 언제 부모가 될까? HIV 감염과 AIDS, 부모되는 것 미루기 |
| 3. 지역사회 자원 활용기술 | 교통 | -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전면허증 따기 |
| | 지역사회자원 활용 | - 생태도(eco-map)그리기, 여가활용, 사회복지서비스, 응급상황 |
| 4. 돈관리기술 | 돈 관리 | - 예산세우기, 올바른 지출, 요금 납부, 저축하기 |
| | 신용카드 | - 신용카드 이해, 신용카드의 용도와 활용, 신용불량 |
| 5. 사회적 기술 | 나에 대한 탐색 | - 나의가치, 내가 느끼는 감정, 나의 의사결정 스타일 |
| | 현명한 선택 | - 결과에 대하여 배우기, 현명한 선택하기, 결과 예측, 도움 얻기, 습관 바꾸기 |
| | 대처기술 | - 갈등해결, 스트레스 이해하기, 스트레스 다스리기 |
| | 대인관계 | - 친구 들여다보기, 룸메이트 고르기, 또래의 압력에 맞서기, 잘못된 관계 정리하기 |
| 6. 직업찾기 | 나에게 맞는 직업 찾기 | - 일에 대한 가치, Work-Job게임 후... - 직업의 영역 |
| | 취업 준비하기 | -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하기 |
| 7. 직장생활 | 즐겁게 일하기 | - 출근첫날, 사내규칙, 직장에서의 태도, 직장 내 갈등 다루기, 직장에서 이런일이 생긴다면..., 직장을 계속 다니거나 그만 두는 이유 |
| 8. 다시 집 떠나기 | 새로운 시작을 향한 | - 인생 선배와의 인터뷰, 나의 목표, 보물찾기 - 변화에 대처하는 법, 자립 후 필요한 기술 |

| | | |
|--|------------|---|
| | 출발 | - 어려움이 생기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면..., 마지막 말, 새로운 시작의 첫날 |
| | 혼자 살아가기 | - 살곳 결정하기, 집 찾기, 계약서 쓰기, 이사, 주택의 안정, 주택관리, 계획하여 행동하기 |

○ 자립지원전담요원

- 10인 이상 아동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직업훈련시설 당 1인

2. 자립정착금 지원(지방이양사업)

가. 목적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의 자가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활성화에 기여

나. 지원권고 내용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의 자
- 지원내용
 - 시·도별로 차이가 있고, 지원액이 낮은 자립정착금 지원 현실화 필요
 - 퇴소 후 주거마련과 생활용품 구입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금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예산증액 확보 추진이 필요함
- 지원시기
 - 시설퇴소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퇴소아동의 특성과 자립여건에 따라 퇴소시 일시지급 또는 일정기간 내 단계별 지원 등의 방법으로 퇴소아동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급함
 - ※ 단계별 지원시에는 월 또는 분기별 지원하되 전체기간은 아동 및 시설 원장과 협의하여 상담 아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정함
 - 지자체(시설) 자립정착금 지급시에는 아동에 대한 자기관리, 경제개념 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립정착금이 자립에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지도함

다. 행정사항

- 각 시·도는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따라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 실적을 보고해야함
- 시설아동의 계좌로 직접 입금 또는 시설장에게 일관송금하되, 일괄송금

하는 때에는 퇴소 아동에게 전달되었는지 추후 반드시 확인

-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자립준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호 아동이 실질적 자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
- 지자체 및 시설은 퇴소아동(고 3학생, 3년 이내 퇴소자, 연장아동)의 자립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시·도 자립지원센터와 긴밀히 연계·협력함

3. 디딤씨앗통장(디딤씨앗통장)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
- '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디딤씨앗통장(CDA:Children Development Account)” 추진
- 동 사업의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친근감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국민 사업명칭으로 '09년 1월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사용

2.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 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지원대상 아동 수> 4만 1천 5백명
- 요보호아동 : 3만 7천명

| 합계 | 시설보호 | 가정위탁 | 소년소녀가정 | 공동생활가정 |
|------|------|------|--------|--------|
| 37천명 | 18천명 | 14천명 | 4천명 | 8백명 |

- 장애인시설아동(장애인 복지법) : 4천 5백명

-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에도 희망시 계속 지원 가능

나. 지원기간

- 0세부터 만 17세까지 지원

- ※ 정부(지자체)의 매칭지원은 만 17세까지이나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 24세까지 지속적으로 저축가능

다. 매칭 및 적립

(1) 기본 매칭적립

- 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이 월 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1 펀드로 월 3만원 내에서 지원
- 기본매칭 적립금액 최고한도만 설정하고 최소단위는 미설정(월 3만원 내 적립 가능)

(2) 추가적립액

- 기본매칭 최고한도 3만원을 적립한 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7만원(연간 564만원)내에서 추가적립가능
- 추가 적립액에 대하여는 국가 매칭은 없음

라. 적립금 사용

(1) 적립금 사용용도 및 방법

-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기술자격취득비용·취업훈련비용·창업지원금·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 만기 적립금 사용시 사용 용도별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및 자금지원을 통해 아동의 자립능력 향상 및 자립달성 도모(사용 용도별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
-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립금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용을 승인하고, 계좌 운영기관(금융기관)은 적립금 사용처(채권자)에 계좌입금
- 일정기간 적립하고 일정연령에 달한 아동은 자기개발 등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용도 범위 내에서 본인의 적립금 사용 가능(5년 이상 적립한 아동으로 만 15세 이상 아동)
- 적립금의 목적외 사용, 타용도 담보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출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개인 임의사용 방지)
- ※ 대상아동(가정)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용용도의 채권자(기관)에게 지급하여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 도모

〈적립금 세부 사용용도〉

| 구분 | 종류 | 사용항목 | 사용조건 |
|----------------|---|---------------------------------------|--|
| 학자금 | · 2,(3)년제 대학 · 4년제 대학 · 대학원 | · 입학금, 등록금 · 대학 기숙사비 | · 대학(원) 수학 관련 주용 비용에 한함 |
|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 국가자격증 · 국제자격증 · 국가고시 | · 학원등록금 | ·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은 가능 · 취업관련 자격증에 한함 ※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회수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 가능 |
| 창업지원금 | | · 사무실 보증금 · 장비구입비 · 시설 설치비 | ·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타당 여부 검토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함 |
| 주거마련 지원 | | · 임대아파트 보증금 · 전세금, 주택구입 자금 | ·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 |
| 의료비 지원 | | · 진료비 · 입원비 · 재활치료비 · 기타 의료비 | ·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시까지 지원가능 |
| 결혼지원 | | · 본인 희망시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 · 안정된 결혼(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사후 지원가능) |
| 기타 | 위 사유에 상당하는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자립지원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군·구청장은 사용승인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보호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 |

부록 2. 델파이 조사 집단 간 차이 검증표

| 영역 | | 양육시 설 (N=13) | 가정위 탁 (N=10) | 그룹홈 (N=12) | 쉼터 (N=8) | 상담센 터·대 안학교 (N=8) | 학계 연구자 (N=5) | F | |
|----|--------------------------------|--------------------|--------------------|-----------------|-----------------|----------------------------|--------------------|-----------------|----------|
| 1 | 자립지원 정책 강화 | 평균 (SD) | 41.00 (2.83) | 40.30 (2.75) | 40.10 (2.08) | 41.38 (2.72) | 39.63 (1.85) | 40.80 (1.10) | 1.07 |
| 2 |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후관리 | 평균 (SD) | 12.00 (1.41) | 11.70 (1.16) | 12.00 (1.33) | 11.88 (0.64) | 12.25 (1.39) | 12.40 (1.14) | 1.22 |
| 3 | 자립지원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 평균 (SD) | 14.33 (0.98) | 13.10 (1.29) | 12.80 (1.03) | 14.25 (1.04) | 13.37 (1.06) | 14.00 (0.71) | 3.25 |
| 4 | 자립정착금 지원의 개선 | 평균 (SD) | 31.67 (2.53) | 29.00 (3.46) | 31.20 (3.82) | 32.63 (2.07) | 31.00 (2.51) | 32.00 (1.87) | 1.58 |
| 5 | 주거공간 지원의 확대 및 개선 | 평균 (SD) | 55.92 (3.68) | 52.60 (4.45) | 56.20 (4.16) | 55.75 (2.76) | 52.75 (4.53) | 53.20 (4.32) | 1.42 |
| 6 | 법률, 의료 지원 강화 | 평균 (SD) | 9.58 (0.67) | 9.00 (0.94) | 9.10 (0.88) | 9.13 (0.83) | 9.13 (0.83) | 9.80 (0.45) | 1.03 |
| 7 | 친부모 관련 대응 강화 | 평균 (SD) | 17.17 (2.25) | 18.40 (1.57) | 17.10 (2.13) | 17.75 (1.39) | 17.63 (1.77) | 18.00 (1.87) | 0.6 8 |
| 8 | 자립준비 프로그램 체계 구축 및 운영 | 평균 (SD) | 32.25 (2.53) | 30.08 (1.99) | 30.40 (2.37) | 31.88 (2.90) | 30.50 (2.56) | 32.60 (2.30) | 1.09 |
| 9 |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 평균 (SD) | 24.08 (1.38) | 21.90 (1.52) | 23.40 (2.01) | 23.75 (1.16) | 22.25 (1.91) | 22.40 (1.52) | 2.53 |
| 10 |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서비스 강화 | 평균 (SD) | 9.33 (0.89) | 8.90 (0.88) | 9.10 (0.88) | 9.76 (0.46) | 9.50 (0.53) | 9.60 (0.89) | 1.64 |
| 11 | 학업 지원 강화 | 평균 (SD) | 29.59 (3.18) | 26.90 (1.73) | 29.50 (3.03) | 31.50 (2.27) | 30.75 (3.33) | 28.00 (1.87) | 3.4 0 |
| 12 | 사회기술 역량 함양 | 평균 (SD) | 22.42 (1.73) | 21.60 (1.71) | 21.70 (2.06) | 22.75 (2.12) | 21.88 (1.96) | 22.20 (1.30) | 0.4 9 |
| 13 | 경제교육 강화 | 평균 (SD) | 9.33 (0.98) | 8.70 (0.95) | 8.70 (0.95) | 9.25 (0.89) | 8.50 (0.93) | 9.00 (1.00) | 1.14 |
| 14 | 직업준비 및 취업지원 시스템 강화 | 평균 (SD) | 32.00 (2.49) | 30.20 (1.99) | 30.20 (2.49) | 31.13 (2.17) | 31.25 (2.66) | 30.80 (2.95) | 0.9 7 |

부록 3. 델파이 조사 설문지

「취약 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세요.

본 설문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정책 및 상담 전문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취약 청소년의 자립지원 모형 개발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책임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원 배주미

공동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한국청소년상담원 김범구, 김영화

♣ 참여자 인적사항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 남 ___ 여 ___

2) 연령

▪ 25세 ~ 30세 ___ 31세 ~ 35세 ___ 36세 ~ 40세 ___

▪ 41세 ~ 45세 ___ 46세 ~ 50세 ___ 51세 ~ 55세 ___ 55세 이상 ___

3)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___ 대학교 졸업 ___

▪ 대학원 석사 졸업 ___ 대학원 박사 졸업 ___ 기타 ()

4) 전공

▪ 사회복지학 ___ 심리학 ___ 교육학 ___ 아동학 ___

▪ 가족학 ___ 청소년학 ___ 기타 ()

5) 관련경력

▪ 1년 미만 ___ 1년 이상 ~ 3년 미만 ___ 3년 이상 ~ 5년 미만 ___

▪ 5년 이상 ~ 7년 미만 ___ 7년 이상 ~ 10년 미만 ___ 10년 이상 ___

「취약 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델파이 제1회 설문

♣ 향후 취약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을 세 가지 제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1)

2)

3)

♣ 취약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세 가지 제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1)

2)

3)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모색」

- 2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 -

| <p>● 본 설문은 ‘취약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각 의견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체크해주시고, 각 범주에 대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실 경우 ‘기타의견’란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p> | | | | | |
|--|----------------------|----------------|---------|---------|---------------|
| I. 자립지원 정책 강화 | 전혀 동의 하지 않음 | 동의 하지 않음 | 보통 임 | 동의 함 | 매우 동의 함 |
| 1. 청소년관련법에 자립지원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 2 | 3 | 4 | 5 |
| 2. 자립준비지원을 위한 총괄 운영기관 설치가 필요하다. | 1 | 2 | 3 | 4 | 5 |
| 3. 자립지원 유관기관(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상담지원센터 등)간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 1 | 2 | 3 | 4 | 5 |
| 4. 정부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자립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 1 | 2 | 3 | 4 | 5 |
| 5. 자립준비지원을 위한 부처 내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 | 1 | 2 | 3 | 4 | 5 |
| 6. 체계적인 자립준비를 위한 장기적 자립지원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7. 기업에서의 취약 청소년의 채용비율 의무화, 이에 따른 세제혜택 등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 | 1 | 2 | 3 | 4 | 5 |
| 8. 자립지원 정책 홍보를 통한 일반인들의 자립지원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9. 취약 청소년의 자립지원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 기타의견 : | | | | | |
| II.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후관리 | 전혀 동의 하지 않음 | 동의 하지 않음 | 보통 임 | 동의 함 | 매우 동의 함 |
| 10. 자립지원과 관련된 통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 1 | 2 | 3 | 4 | 5 |

| | | | | | |
|--|-------------------|----------------|------------|------------|---------------|
| 11. 시설 퇴소 이후, '사례관리 의무화' 법령이 추가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12. 퇴소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 1 | 2 | 3 | 4 | 5 |
| ● 기타의견 : | | | | | |
| Ⅲ. 자립지원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보통임 | 동의함 | 매우 동의함 |
| 13. 자립준비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진로 및 상담 전문가)의 확대 및 충원이 필요하다. | 1 | 2 | 3 | 4 | 5 |
| 14. 자립전담요원(아동양육시설)의 업무집중화가 필요하다. | 1 | 2 | 3 | 4 | 5 |
| 15. 자립지원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급여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 기타의견 : | | | | | |
| Ⅳ. 자립준비 프로그램 체계 구축 및 운영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보통임 | 동의함 | 매우 동의함 |
| 16. 실질적인 자립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이 확충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17. 취약 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 시부터 자립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 1 | 2 | 3 | 4 | 5 |
| 18. 취약 청소년에게 목표와 비전을 심어주어 자립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 1 | 2 | 3 | 4 | 5 |
| 19. 취약 청소년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 1 | 2 | 3 | 4 | 5 |
| 20. 자립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욕구 파악이 중요하다. | 1 | 2 | 3 | 4 | 5 |
| 21. 각 대상의 특성이나 목표를 고려한 개별화된 자립준비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22. 자립준비 프로그램 운영 시 재정적 지원(운영비, 교통비, 식비)이 필요하다. | 1 | 2 | 3 | 4 | 5 |

| ● 기타 의견 : | | | | | |
|---|----------------------|----------------|---------|---------|---------------|
| V.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서비스 강화 | 전혀 동의 하지 않음 | 동의 하지 않음 | 보통 인 | 동의 함 | 매우 동의 함 |
| 23. 욕구파악 및 목표설정을 위한 진로탐색·진로발달검사,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의 진로설계서비스가 필요하다. | 1 | 2 | 3 | 4 | 5 |
| 24.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 기타의견 : | | | | | |
| VI. 학업 지원 강화 | 전혀 동의 하지 않음 | 동의 하지 않음 | 보통 인 | 동의 함 | 매우 동의 함 |
| 25.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학력(인가)형 특성화 대안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26. 검정고시 학원과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27. 취약 청소년의 욕구(학원, 예체능교육, 자격증)에 맞는 교육 바우처가 마련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28. 비진학 청소년에 특화된 기초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1 | 2 | 3 | 4 | 5 |
| 29. 장기 학습지원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1 학습이 제공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30. 대학등록금 지원이 청소년시설(예, 쉼터) 청소년들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31. 개별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서비스(역사탐방, 유적지 여행, 박물관 및 도서관 견학 등)가 확대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 기타 의견 : | | | | | |

| VII. 사회기술 역량 함양 | 전혀 동의 하지 않음 | 동의 하지 않음 | 보통 임 | 동의 함 | 매우 동의 함 |
|--|----------------------|----------------|---------|---------|---------------|
| 32. 생활 속에서 체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기술훈련(신체청결, 청소, 세탁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33. 또래관계와 집단생활(예, 보이스카웃)을 통한 사회적 학습이 필요하다. | 1 | 2 | 3 | 4 | 5 |
| 34. 사회생활에 필요한 대인관계(직장 상사 및 동료) 기본 예절 및 규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1 | 2 | 3 | 4 | 5 |
| 35.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및 갈등상황 대처, 분노조절 등과 관련된 사회기술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36. 1:1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생활 적응을 도와야 한다. | 1 | 2 | 3 | 4 | 5 |
| ● 기타 의견 : | | | | | |
| VIII. 경제교육 강화 | 전혀 동의 하지 않음 | 동의 하지 않음 | 보통 임 | 동의 함 | 매우 동의 함 |
| 37. 단계별 경제교육(초등·중등·고등)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행동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 1 | 2 | 3 | 4 | 5 |
| 38. 저축, 가계부 작성, 은행업무(통장, 적금, 공과금 납부) 등 실생활 속의 경제교육과 체험이 필요하다. | 1 | 2 | 3 | 4 | 5 |
| ● 기타 의견 : | | | | | |
| IX.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 전혀 동의 하지 않음 | 동의 하지 않음 | 보통 임 | 동의 함 | 매우 동의 함 |
| 39. 소규모시설, 그룹홈, 쉼터 등 서비스 사각지대에 심리 치료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40. 심리정서적 문제해결을 위한 치료비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1 | 2 | 3 | 4 | 5 |
| 41. 게임중독이나 약물, 흡연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 1 | 2 | 3 | 4 | 5 |

| | | | | | |
|--|-------------------|----------------|------------|------------|---------------|
| 42. 지적장애(경계선 지능 포함) 및 신체장애 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43. 성폭력, 성매매 등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1 | 2 | 3 | 4 | 5 |
| ● 기타 의견 : | | | | | |
| X. 직업준비 및 취업지원 시스템 강화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보통임 | 동의함 | 매우 동의함 |
| 44. 직업기술훈련 관련 정보가 수시로 제공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45. 건전한 아르바이트 및 취업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46. 창업시스템 구축을 통해 창업자금지원과 창업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47. 취업 후 실직·전직 시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 1 | 2 | 3 | 4 | 5 |
| 48. 직업체험, 훈련, 인턴십, 취업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취업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 1 | 2 | 3 | 4 | 5 |
| 49. 대학 미진학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시스템(조기 기술교육, 자격증 취득 등)이 필요하다. | 1 | 2 | 3 | 4 | 5 |
| 50. 취약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이 확대되고,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 기타 의견 : | | | | | |
| XI. 주거공간 지원의 확대 및 개선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보통임 | 동의함 | 매우 동의함 |
| 51. 자립지원시설(舊 자립생활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 1 | 2 | 3 | 4 | 5 |
| 52. 직업교육을 받는 동안 시설 청소년의 입소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 1 | 2 | 3 | 4 | 5 |
| 53. 대학졸업 전 군입대 시 퇴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군전역 후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 | 1 | 2 | 3 | 4 | 5 |

| | | | | | |
|--|-------------------|----------------|------------|------------|---------------|
| 54. 전세주택 지원이 대학 졸업 시(만24세)까지도 가능해야 한다. | 1 | 2 | 3 | 4 | 5 |
| 55. 청소년 시설(예, 쉼터) 퇴소 청소년들에게도 2~3년 정도의 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 1 | 2 | 3 | 4 | 5 |
| 56. 퇴소 전 자립을 체험할 수 있는 중간 형태의 시설 및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57. 취약 청소년들에게 현실적 수준의 전세자금 지원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58. 취약 청소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의무 비율 도입이 필요하다. | 1 | 2 | 3 | 4 | 5 |
| 59. 저렴하면서도 청소년들의 기호에 맞는(예, 원룸 형태) 임대주택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 1 | 2 | 3 | 4 | 5 |
| 60. 취약 청소년을 위한 전세주택 서비스 체계(복잡한 계약과정, 거주지 변경에 따른 재신청 문제 등)가 개선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61. 취약 청소년을 위한 주거지원 관련 정보(주택 정보, 신청 방법 등) 제공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62. 취약 청소년을 위한 부동산 계약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 1 | 2 | 3 | 4 | 5 |
| ● 기타의견 : | | | | | |
| Ⅷ. 자립정착금 지원의 개선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보통임 | 동의함 | 매우 동의함 |
| 63. 보호유형에 따른 자립지원 서비스 차등화를 해소하여야 한다. | 1 | 2 | 3 | 4 | 5 |
| 64. 자립정착금을 현재수준보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 1 | 2 | 3 | 4 | 5 |
| 65. 자립정착금 지원이 아동시설뿐 아니라 청소년 시설(예, 쉼터)의 청소년들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66. 아동발달계좌(CDA) 사업 강화 및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후원자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 1 | 2 | 3 | 4 | 5 |
| 67. 자립정착금 지원 시,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지급방법을 다양화(일시지급, 일정기간 단계별 지급 등)해 | 1 | 2 | 3 | 4 | 5 |

| | | | | | |
|---|-------------------|----------------|------------|------------|---------------|
| 야 한다. | | | | | |
| 68. 자립정착금 사용과 관련된 지속적인 사전교육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 1 | 2 | 3 | 4 | 5 |
| 69. 자립정착금 지급 시, 자립전담요원의 적절한 지도와 개입이 필요하다. | 1 | 2 | 3 | 4 | 5 |
| ● 기타 의견 : | | | | | |
| XIII. 친부모 관련 대응 강화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보통임 | 동의함 | 매우 동의함 |
| 70. 청소년의 친부모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71. 청소년에 대한 친부모의 양육책임 강화가 법제화 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72. 친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재형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1 | 2 | 3 | 4 | 5 |
| 73. 퇴소 후 연고자(친부모 및 친인척)로부터의 피해가능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 기타의견 : | | | | | |
| XIV. 법률, 의료 지원 강화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보통임 | 동의함 | 매우 동의함 |
| 74. 퇴소 후 일정 기간 동안 법률 정보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 1 | 2 | 3 | 4 | 5 |
| 75. 퇴소 후 취업 시까지는 의료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5 |
| ● 기타 의견 : | | | | | |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모색」

델파이 3차 조사 설문지

1. 아래의 내용은 1,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개별 내용에 대한 중요도의 '평균값'을 제시하였고, 음영으로 처리한 부분은 많은 선생님들의 의견이 몰려 있는 범위입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각 항목에 중요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2. 체크하시려는 번호가 음영부분을 벗어난 경우 그 이유를 '의견'란에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영부분이 4~5인데 2에 체크할 경우 2에 체크한 이유 기입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중요함 | 매우 중요함 | 의견 |
|------------------|------------|----|-----|-----------|-------------------------|
| 1 | 2(√) | 3 | 4 | 5 | '중요하지 않음'에 체크한 이유 기입 |

| I. 자립지원 정책 강화 | 평균 | 중요도 | | | | | 의견 |
|--|------|----------------------|----------------|----|---------|---------------|----|
| | |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중요 하지 않음 | 보통 | 중요 함 | 매우 중요 함 | |
| 1. 청소년관련법에 자립지원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 4.55 | 1 | 2 | 3 | 4 | 5 | |
| 2. 자립준비지원을 위한 총괄 운영기관 설치가 필요하다. | 4.23 | 1 | 2 | 3 | 4 | 5 | |
| 3. 자립지원 유관기관(복지시설, 청소년 시설, 상담지원센터 등)간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 4.59 | 1 | 2 | 3 | 4 | 5 | |
| 4. 정부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자립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 4.69 | 1 | 2 | 3 | 4 | 5 | |
| 5. 자립준비지원을 위한 부처 내 자금 마련이 필요하다. | 4.59 | 1 | 2 | 3 | 4 | 5 | |
| 6. 체계적인 자립준비를 위한 장기적 자립지원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 4.73 | 1 | 2 | 3 | 4 | 5 | |
| 7. 기업에서의 취약 청소년의 채용비율 의무화, 이에 따른 세제혜택 등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 | 4.20 | 1 | 2 | 3 | 4 | 5 | |

| | | | | | | | |
|--|------|------------|---------|----|-----|--------|----|
| 8. 자립지원 정책 홍보를 통한 일반인들의 자립지원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 4.15 | 1 | 2 | 3 | 4 | 5 | |
| 9. 취약 청소년의 자립지원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 4.44 | 1 | 2 | 3 | 4 | 5 | |
| II.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후관리 | 평균 | 중요도 | | | | | 의견 |
| |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중요함 | 매우 중요함 | |
| 10. 자립지원과 관련된 통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 4.34 | 1 | 2 | 3 | 4 | 5 | |
| 11. 시설 퇴소 이후, '사례관리 의무화' 법령이 추가되어야 한다. | 3.48 | 1 | 2 | 3 | 4 | 5 | |
| 12. 퇴소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 4.11 | 1 | 2 | 3 | 4 | 5 | |
| III. 자립지원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 평균 | 중요도 | | | | | 의견 |
| |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중요함 | 매우 중요함 | |
| 13. 자립준비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진로 및 상담 전문가)의 확대 및 충원이 필요하다. | 4.55 | 1 | 2 | 3 | 4 | 5 | |
| 14. 자립전담요원(아동양육시설)의 업무 집중화가 필요하다. | 4.25 | 1 | 2 | 3 | 4 | 5 | |
| 15. 자립지원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급여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 4.56 | 1 | 2 | 3 | 4 | 5 | |
| IV. 자립준비 프로그램 체계 구축 및 운영 | 평균 | 중요도 | | | | | 의견 |
| |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중요함 | 매우 중요함 | |
| 16. 실질적인 자립교육 프로그램 메뉴얼이 확충되어야 한다. | 4.52 | 1 | 2 | 3 | 4 | 5 | |
| 17. 취약 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 시부 | 3.79 | 1 | 2 | 3 | 4 | 5 | |

| | | | | | | | |
|---|------|------------|---------|----|-----|--------|----|
| 터 자립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 | | | | | | |
| 18. 취약 청소년에게 목표와 비전을 심어주어 자립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 4.61 | 1 | 2 | 3 | 4 | 5 | |
| 19. 취약 청소년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 4.56 | 1 | 2 | 3 | 4 | 5 | |
| 20. 자립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욕구 파악이 중요하다. | 4.59 | 1 | 2 | 3 | 4 | 5 | |
| 21. 각 대상의 특성이나 목표를 고려한 개별화된 자립준비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 4.58 | 1 | 2 | 3 | 4 | 5 | |
| 22. 자립준비 프로그램 운영 시 재정적 지원(운영비, 교통비, 식비)이 필요하다. | 4.65 | 1 | 2 | 3 | 4 | 5 | |
| V.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서비스 강화 | 평균 | 중요도 | | | | | 의견 |
| |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중요함 | 매우 중요함 | |
| 23. 욕구파악 및 목표설정을 위한 진로탐색·진로발달검사,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의 진로설계서비스가 필요하다. | 4.61 | 1 | 2 | 3 | 4 | 5 | |
| 24.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 4.58 | 1 | 2 | 3 | 4 | 5 | |
| VI. 학업 지원 강화 | 평균 | 중요도 | | | | | 의견 |
| |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중요함 | 매우 중요함 | |
| 25.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학력(인가)형 특성화 대안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 | 3.94 | 1 | 2 | 3 | 4 | 5 | |
| 26. 검정고시 학원과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 4.03 | 1 | 2 | 3 | 4 | 5 | |

| | | | | | | | |
|--|------|------------|---------|----|-----|--------|----|
| 27. 취약 청소년의 욕구(학원, 예체능교육, 자격증)에 맞는 교육 바우처가 마련되어야 한다. | 4.52 | 1 | 2 | 3 | 4 | 5 | |
| 28. 비진학 청소년에 특화된 기초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4.37 | 1 | 2 | 3 | 4 | 5 | |
| 29. 장기 학습지원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1 학습이 제공되어야 한다. | 4.23 | 1 | 2 | 3 | 4 | 5 | |
| 30. 대학등록금 지원이 청소년시설(예, 쉼터) 청소년들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 4.41 | 1 | 2 | 3 | 4 | 5 | |
| 31. 개별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서비스(역사탐방, 유적지 여행, 박물관 및 도서관 견학 등)가 확대되어야 한다. | 3.99 | 1 | 2 | 3 | 4 | 5 | |
| Ⅶ. 사회기술 역량 함양 | 평균 | 중요도 | | | | | 의견 |
| |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중요함 | 매우 중요함 | |
| 32. 생활 속에서 체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기술훈련(신체청결, 청소, 세탁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4.32 | 1 | 2 | 3 | 4 | 5 | |
| 33. 또래관계와 집단생활(예, 보이스카웃)을 통한 사회적 학습이 필요하다. | 4.07 | 1 | 2 | 3 | 4 | 5 | |
| 34. 사회생활에 필요한 대인관계(직장 상사 및 동료) 기본 예절 및 규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4.38 | 1 | 2 | 3 | 4 | 5 | |
| 35.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및 갈등상황 대처, 분노조절 등과 관련된 사회 기술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 4.63 | 1 | 2 | 3 | 4 | 5 | |
| 36. 1:1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생활 적응을 도와야 한다. | 4.08 | 1 | 2 | 3 | 4 | 5 | |
| Ⅷ. 경제교육 강화 | 평균 | 중요도 | | | | | 의견 |
| |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중요함 | 매우 중요함 | |

| | | | | | | | |
|--|-----------|------------|---------|----|-----|--------|-----------|
| 37. 단계별 경제교육(초등·중등·고등)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행동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 4.42 | 1 | 2 | 3 | 4 | 5 | |
| 38. 저축, 가계부 작성, 은행업무(통장, 적금, 공과금 납부)등 실생활 속의 경제교육과 체험이 필요하다. | 4.46 | 1 | 2 | 3 | 4 | 5 | |
| Ⅸ.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 평균 | 중요도 | | | | | 의견 |
| |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중요함 | 매우 중요함 | |
| 39. 소규모시설, 그룹홈, 쉼터 등 서비스 사각지대에 심리치료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 4.51 | 1 | 2 | 3 | 4 | 5 | |
| 40. 심리정서적 문제해결을 위한 치료비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4.58 | 1 | 2 | 3 | 4 | 5 | |
| 41. 게임중독이나 약물, 흡연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 4.46 | 1 | 2 | 3 | 4 | 5 | |
| 42. 지적장애(경계선 지능 포함) 및 신체장애 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 4.46 | 1 | 2 | 3 | 4 | 5 | |
| 43. 성폭력, 성매매 등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4.62 | 1 | 2 | 3 | 4 | 5 | |
| Ⅹ. 직업준비 및 취업지원 시스템 강화 | 평균 | 중요도 | | | | | 의견 |
| |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중요함 | 매우 중요함 | |
| 44. 직업기술훈련 관련 정보가 수시로 제공되어야 한다. | 4.54 | 1 | 2 | 3 | 4 | 5 | |
| 45. 건전한 아르바이트 및 취업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4.47 | 1 | 2 | 3 | 4 | 5 | |
| 46. 창업시스템 구축을 통해 창업자금 지원과 창업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 4.14 | 1 | 2 | 3 | 4 | 5 | |

| | | | | | | | |
|--|-----------|------------|---------|----|-----|--------|-----------|
| 47. 취업 후 실직·전직 시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 4.33 | 1 | 2 | 3 | 4 | 5 | |
| 48. 직업체험, 훈련, 인턴십, 취업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취업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 4.56 | 1 | 2 | 3 | 4 | 5 | |
| 49. 대학 미진학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시스템(조기 기술교육, 자격증 취득 등)이 필요하다. | 4.70 | 1 | 2 | 3 | 4 | 5 | |
| 50. 취약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이 확대되고,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 | 4.61 | 1 | 2 | 3 | 4 | 5 | |
| XI. 주거공간 지원의 확대 및 개선 | 평균 | 중요도 | | | | | 의견 |
| |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중요함 | 매우 중요함 | |
| 51. 자립지원시설(舊 자립생활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 4.34 | 1 | 2 | 3 | 4 | 5 | |
| 52. 직업교육을 받는 동안 시설 청소년의 입소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 4.54 | 1 | 2 | 3 | 4 | 5 | |
| 53. 대학졸업 전 군입대 시 퇴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군전역 후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 | 4.30 | 1 | 2 | 3 | 4 | 5 | |
| 54. 전세주택 지원이 대학 졸업 시(만 24세)까지도 가능해야 한다. | 4.51 | 1 | 2 | 3 | 4 | 5 | |
| 55. 청소년 시설(예, 쉼터) 퇴소 청소년들에게도 2~3년 정도의 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 4.23 | 1 | 2 | 3 | 4 | 5 | |
| 56. 퇴소 전 자립을 체험할 수 있는 중간 형태의 시설 및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 4.46 | 1 | 2 | 3 | 4 | 5 | |
| 57. 취약 청소년들에게 현실적 수준의 전세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 | 4.41 | 1 | 2 | 3 | 4 | 5 | |
| 58. 취약 청소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의무 비율 도입이 필요하다. | 4.30 | 1 | 2 | 3 | 4 | 5 | |

| | | | | | | | |
|--|------|------------|---------|----|-----|--------|----|
| 59. 저렴한면서도 청소년들의 기호에 맞는(예, 원룸 형태) 임대주택을 더 많이 제공해야한다. | 4.49 | 1 | 2 | 3 | 4 | 5 | |
| 60. 취약 청소년을 위한 전세주택 서비스 체계(복잡한 계약과정, 거주지 변경에 따른 재신청 문제 등)가 개선되어야 한다. | 4.41 | 1 | 2 | 3 | 4 | 5 | |
| 61. 취약 청소년을 위한 주거지원 관련 정보(주택 정보, 신청 방법 등) 제공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 | 4.39 | 1 | 2 | 3 | 4 | 5 | |
| 62. 취약 청소년을 위한 부동산 계약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 4.20 | 1 | 2 | 3 | 4 | 5 | |
| ⅩII. 자립정착금 지원의 개선 | 평균 | 중요도 | | | | | 의견 |
| |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중요함 | 매우 중요함 | |
| 63. 보호유형에 따른 자립지원 서비스 차등화를 해소하여야 한다. | 4.44 | 1 | 2 | 3 | 4 | 5 | |
| 64. 자립정착금을 현재수준보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 4.42 | 1 | 2 | 3 | 4 | 5 | |
| 65. 자립정착금 지원이 아동시설뿐 아니라 청소년 시설(예, 쉼터)의 청소년들에게도 확대되어야한다. | 4.24 | 1 | 2 | 3 | 4 | 5 | |
| 66. 아동발달계좌(CDA) 사업 강화 및 확대를 위한 적극적 홍보와 후원자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 4.42 | 1 | 2 | 3 | 4 | 5 | |
| 67. 자립정착금 지원 시,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지급방법을 다양화(일시지급, 일정기간 단계별 지급 등)해야 한다. | 4.48 | 1 | 2 | 3 | 4 | 5 | |
| 68. 자립정착금 사용과 관련된 지속적인 사전교육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 4.50 | 1 | 2 | 3 | 4 | 5 | |
| 69. 자립정착금 지급 시, 자립전담요원의 적절한 지도와 개입이 필요하다. | 4.46 | 1 | 2 | 3 | 4 | 5 | |

| XIII. 친부모 관련 대응 강화 | 평균 | 중요도 | | | | | 의견 |
|---|------|----------------------|----------------|----|---------|---------------|----|
| | |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중요 하지 않음 | 보통 | 중요 함 | 매우 중요 함 | |
| 70. 청소년의 친부모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 4.27 | 1 | 2 | 3 | 4 | 5 | |
| 71. 청소년에 대한 친부모의 양육책임 강화가 법제화 되어야 한다. | 4.08 | 1 | 2 | 3 | 4 | 5 | |
| 72. 친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재형성하기 위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 4.37 | 1 | 2 | 3 | 4 | 5 | |
| 73. 퇴소 후 연고자(친부모 및 친인척)로부터의 피해가능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4.48 | 1 | 2 | 3 | 4 | 5 | |
| XIV. 법률, 의료 지원 강화 | 평균 | 중요도 | | | | | 의견 |
| | |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중요 하지 않음 | 보통 | 중요 함 | 매우 중요 함 | |
| 74. 퇴소 후 일정 기간 동안 법률 정보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 4.44 | 1 | 2 | 3 | 4 | 5 | |
| 75. 퇴소 후 취업 시까지는 의료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 4.52 | 1 | 2 | 3 | 4 | 5 | |

부록 4. 취약 청소년 특성조사 설문지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정책 및 상담기관으로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을 돕기 위해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각종 연구와 교육,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청소년의 생각과 경험을 파악하여 청소년을 위한 제도나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되므로 여러분들은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고, 여러분의 개별응답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전체응답은 한꺼번에 통계처리 할 것이며, 조사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답해주시는 이 자료는 청소년을 위한 제도나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매우 소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므로, 힘드시더라도 **한 문장도 빠뜨리지 말고, 솔직하게 성실히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상담원 프로그램개발팀 드림

※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의 () 속에 V표시를 해 주세요.

1. 성별 : ① 남자 () ② 여자 ()

2. 생년월일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3. 재학 중인 학교 및 기관은 어디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인문계 고등학교 () ②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 ③ 대안학교 ()
 ④ 검정고시 학원 () ⑤ 직업학교 () ⑥ 직업훈련기관 ()
 ⑦ 소년원 학교 () ⑧ 학교나 검정고시에 다니지 않음 ()

4. 재학 중인 학년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고등학교 1학년 () ② 고등학교 2학년 ()
 ③ 고등학교 3학년 () ④ 해당 없음 ()

5.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서울특별시 () ② 부산광역시 () ③ 인천광역시 ()
 ④ 대구광역시 () ⑤ 대전광역시 () ⑥ 광주광역시 ()
 ⑦ 울산광역시 () ⑧ 강원도 () ⑨ 경기도 ()
 ⑩ 경상남도 () ⑪ 경상북도 () ⑫ 전라남도 ()
 ⑬ 전라북도 () ⑭ 충청남도 () ⑮ 충청북도 ()
 ⑯ 제주특별자치도 ()

6.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모두 체크 V 하세요)

- ① 친아버지 () ② 친어머니 ()
 ③ 새어머니 () ④ 새아버지 ()
 ⑤ 할머니나 할아버지 () ⑥ 친척 ()
 ⑦ 형제자매 () ⑧ 친구 또는 선후배 ()
 ⑨ 양육시설 () ⑩ 그룹홈 ()
 ⑪ 쉼터 () ⑫ 가정위탁 ()
 ⑬ 혼자 살고 있다 () ⑭ 기타(구체적으로 누구와? _____)

7. 가정의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에 해당합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매우 어려운 편이다 () ② 어려운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사는 편이다 ()

⑤ 매우 잘사는 편이다 ()

8. 국가나 단체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모두 체크V 하세요)

- ① 없다 () ② 기초수급대상자 ()
 ③ 의료비 지원 () ④ 급식비 지원 ()
 ⑤ 긴급복지지원 (가장의 사망, 질병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지원받는 경우) ()
 ⑥ 기타 ()

9. 자립준비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 다음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식과 기술에 대해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 문 항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편 이다 | 다소 그런편 이다 | 아주 그렇다 |
|----------------------------------|-----------------|------------------|-----------------|-----------|
| 1. 필요한 물건을 경제적으로 쇼핑하는 방법을 안다. | 1 | 2 | 3 | 4 |
| 2. 필요한 음식만들기와 조리기구의 사용법을 안다. | 1 | 2 | 3 | 4 |
| 3. 전기코드나 전등의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한다. | 1 | 2 | 3 | 4 |
| 4. 세탁기 사용 때 옷 주의 사항을 점검한다. | 1 | 2 | 3 | 4 |
| 5. 감기나 간단한 상처의 대처방법을 알고 있다. | 1 | 2 | 3 | 4 |
| 6. 스트레스의 해결방법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 | 1 | 2 | 3 | 4 |
| 7. 술·담배의 중독이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을 안다. | 1 | 2 | 3 | 4 |
| 8. 임신예방과 임신의 증후에 대해 알고 있다. | 1 | 2 | 3 | 4 |
| 9.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기계획을 가지고 실행한다. | 1 | 2 | 3 | 4 |
| 10. 소득공제를 위한 면세, 감세 등의 저축방법을 안다. | 1 | 2 | 3 | 4 |
| 11. 개인신용의 중요성과 신용카드 사용 원칙을 안다. | 1 | 2 | 3 | 4 |

| | | | | | |
|-----|---|---|---|---|---|
| 12. | 나의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 1 | 2 | 3 | 4 |
| 13. | 임대계약을 작성하고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을 사전점검할 수 있다. | 1 | 2 | 3 | 4 |
| 14. | 집을 이사하면 이후의 행정절차(전입신고, 확정일자받기 등)에 대해 알고 있다. | 1 | 2 | 3 | 4 |
| 15. | 인터넷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 내 정보를 알 수 있다. | 1 | 2 | 3 | 4 |
| 16. | 긴급 사고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을 파악하고 있다. | 1 | 2 | 3 | 4 |
| 17. | 결혼의 의미와 배우자의 책임에 대해 알고 있다. | 1 | 2 | 3 | 4 |
| 18. | 부모의 책임과 부모역할에 대해 알고 있다. | 1 | 2 | 3 | 4 |
| 19. | 화를 내지 않고 나에게 대한 충고를 들을 수 있다. | 1 | 2 | 3 | 4 |
| 20. |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할 때 신중하게 결정한다. | 1 | 2 | 3 | 4 |
| 21. | 취업면접시의 행동이나 기준을 잘 알고 있다. | 1 | 2 | 3 | 4 |
| 22. | 직장인으로서 비전(목표)을 가지고 일한다. | 1 | 2 | 3 | 4 |
| 23. | 친구, 직장동료 등과의 갈등을 다루는 방법을 안다. | 1 | 2 | 3 | 4 |
| 24. | 나의 기술영역이나 특정영역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찾고 공부한다. | 1 | 2 | 3 | 4 |

※ 다음은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 문 항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다소 그런 편이다 | 아주 그렇다 |
|--|-----------|------------|-----------|--------|
| 25. 나는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어려워한다. | 1 | 2 | 3 | 4 |
| 26. 나는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한다. | 1 | 2 | 3 | 4 |
| 27. 나는 내 자신과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 1 | 2 | 3 | 4 |
| 28. 나는 어떤 것을 결정하고 난 후에 그 결정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 1 | 2 | 3 | 4 |
| 29. 나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피하고 싶다. | 1 | 2 | 3 | 4 |
| 30. 나는 인간관계가 좁은 편이기 때문에 직장(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 1 | 2 | 3 | 4 |
| 31. 나는 직장(학교)생활에서 일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더 클 것이다. | 1 | 2 | 3 | 4 |
| 32.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직장(학교)생활이 쉬울 것이다. | 1 | 2 | 3 | 4 |
| 33. 나는 앞으로 직장(학교)생활을 할 때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 1 | 2 | 3 | 4 |

| | | | | | |
|-----|---|---|---|---|---|
| 34. | 앞으로 나의 진로는 부모님의 반대나 간섭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 1 | 2 | 3 | 4 |
| 35. | 나는 부모님이나 이성 친구가 나의 진로 선택을 좋아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된다. | 1 | 2 | 3 | 4 |
| 36. |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진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 1 | 2 | 3 | 4 |
| 37. | 나는 부모님이나 집안의 기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 1 | 2 | 3 | 4 |
| 38. | 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 1 | 2 | 3 | 4 |
| 39. |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 1 | 2 | 3 | 4 |
| 40. |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 1 | 2 | 3 | 4 |
| 41. |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 1 | 2 | 3 | 4 |
| 42. |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 1 | 2 | 3 | 4 |
| 43. | 앞으로 내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할 때 그 일이 점차 지루해질 것이다. | 1 | 2 | 3 | 4 |
| 44. | 내가 지금 흥미를 갖고 있는 일은 시간이 흐르면 바뀔 것이다. | 1 | 2 | 3 | 4 |
| 45. | 앞으로 내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할 때, 그 일에 흥미가 점점 없어질 것이다. | 1 | 2 | 3 | 4 |
| 46. | 나는 흥미 있는 일이나 선택하고 싶은 직업이 없다. | 1 | 2 | 3 | 4 |
| 47. |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나의 진로는 영향을 많이 받는다. | 1 | 2 | 3 | 4 |
| 48. |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 1 | 2 | 3 | 4 |
| 49. | 시대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 1 | 2 | 3 | 4 |
| 50. |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진로에 영향을 준다. | 1 | 2 | 3 | 4 |
| 51. | 나는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 1 | 2 | 3 | 4 |
| 52. |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 | 1 | 2 | 3 | 4 |
| 53. |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나를 뒷받침 해 줄 수 없다. | 1 | 2 | 3 | 4 |
| 54. |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른 | 1 | 2 | 3 | 4 |

| | | | | | |
|-----|---|---|---|---|---|
| 55. | 다. 가정 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로로 선택하기 어렵다. | 1 | 2 | 3 | 4 |
| 56. |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는 나의 신체적 조건이 좋지 않다. | 1 | 2 | 3 | 4 |
| 57. | 나는 건강 때문에 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 1 | 2 | 3 | 4 |
| 58. | 신체적인 열등감이 나의 진로 선택이나 계획에 영향을 준다. | 1 | 2 | 3 | 4 |
| 59. | 나는 신체적인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 1 | 2 | 3 | 4 |
| 60. | 나는 나이 때문에 진로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 | 1 | 2 | 3 | 4 |
| 61. | 나는 나이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 62. | 나는 나이 때문에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지장을 받을 것이다. | 1 | 2 | 3 | 4 |
| 63. | 나는 나이 때문에 진로에 있어서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걱정이 된다. | 1 | 2 | 3 | 4 |
| 64. | 나는 좋지 않은 성적 때문에 취업(진학)하기 어려울 것이다. | 1 | 2 | 3 | 4 |
| 65. |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능력이 부족하다. | 1 | 2 | 3 | 4 |
| 66. |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능력(자격증, 어학능력, 컴퓨터 능력 등)이 부족하다. | 1 | 2 | 3 | 4 |
| 67. | 나는 취업(진학)에 필요한 자격이 부족하다. | 1 | 2 | 3 | 4 |

※ 다음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 문 항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다소 그런 편이다 | 아주 그렇다 |
|----------------------------------|-----------|------------|-----------|--------|
| 68.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 69.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 70.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 71.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 1 | 2 | 3 | 4 |
| 72.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 1 | 2 | 3 | 4 |
| 73.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 1 | 2 | 3 | 4 |

| | | | | |
|------------------------------------|---|---|---|---|
| 74.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 1 | 2 | 3 | 4 |
| 75.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 1 | 2 | 3 | 4 |
| 76.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 1 | 2 | 3 | 4 |
| 77.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 다음은 “여러분이 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 문 항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편 이다 | 다소 그런편 이다 | 아주 그렇다 |
|--|-----------------|------------------|-----------------|-----------|
| 78.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 1 | 2 | 3 | 4 |
| 79. 나는 사회가 나를 열등하게 본다고 느낀다. | 1 | 2 | 3 | 4 |
| 80.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고 느낀다. | 1 | 2 | 3 | 4 |
| 81. 나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 1 | 2 | 3 | 4 |
| 82. 나는 사회적인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느낀다. | 1 | 2 | 3 | 4 |
| 83. 나는 사회가 나를 문제 있는 존재로 본다고 느낀다. | 1 | 2 | 3 | 4 |
| 84. 나는 사회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 1 | 2 | 3 | 4 |
| 85. 나는 사회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느낀다. | 1 | 2 | 3 | 4 |
| 86. 사회는 나를 편견을 가지고 본다. | 1 | 2 | 3 | 4 |
| 87. 나는 유용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 1 | 2 | 3 | 4 |

※ 다음은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 문 항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편 이다 | 다소 그런편 이다 | 아주 그렇다 |
|---|-----------------|------------------|-----------------|-----------|
| 88. 자립에 대한 목표의식을 갖기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1 | 2 | 3 | 4 |
| 89. 자립준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 90. 자립을 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담당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 1 | 2 | 3 | 4 |

| | | | | | |
|------|--|---|---|---|---|
| 91. |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학업준비가 필요하다. | 1 | 2 | 3 | 4 |
| 92. | 직업기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회가 늘어야 한다. | 1 | 2 | 3 | 4 |
| 93. | 관심있는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중심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1 | 2 | 3 | 4 |
| 94. | 자립후에 일정기간 동안 주거공간 지원이 필요하다. | 1 | 2 | 3 | 4 |
| 95. | 자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 96. | 취업 및 대학진학과 관련한 진로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 1 | 2 | 3 | 4 |
| 97. |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상식과 기술이 제공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 98. |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갈등상황 해결, 분노조절 등의 사회기술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 99. | 저축, 돈관리, 공과금 납부 등 실생활 속의 경제교육과 체험이 필요하다. | 1 | 2 | 3 | 4 |
| 100. | 취업때까지 의료비 보조, 의료보험 제공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 | 1 | 2 | 3 | 4 |

※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음의 질문을 읽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느끼는 도움에 대해 항목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자신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 문 항 내 용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편이다 | 다소 그런편이다 | 아주 그렇다 |
|---------|--|-----------|-----------|----------|--------|
| 101. | 그들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 1 | 2 | 3 | 4 |
| 102. | 그들은 내가 필요로 하면 아무리 큰 돈이라도 마련해준다. | 1 | 2 | 3 | 4 |
| 103. | 그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 1 | 2 | 3 | 4 |
| 104. | 그들은 배울 점이 많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다. | 1 | 2 | 3 | 4 |
| 105. | 그들은 자신이 직접 도움을 줄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나를 돕는다. | 1 | 2 | 3 | 4 |
| 106. | 그들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 1 | 2 | 3 | 4 |
| 107. | 그들은 내가 잘 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 1 | 2 | 3 | 4 |
| 108. | 그들은 무슨 일 이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 1 | 2 | 3 | 4 |

| | | | | | |
|------|--|---|---|---|---|
| | 나를 돕는다. | | | | |
| 109. | 그들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1 | 2 | 3 | 4 |
| 110. | 그들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준다. | 1 | 2 | 3 | 4 |
| 111. | 그들은 내가 결단을 못 내리고 망설일 때, 결단을 내리게 자극, 용기를 준다. | 1 | 2 | 3 | 4 |
| 112. | 그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충고해준다. | 1 | 2 | 3 | 4 |
| 113. | 그들은 내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데도 도움 되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 1 | 2 | 3 | 4 |
| 114. | 그들은 내가 몸져누워 있을 때, 일을 대신 해준다. | 1 | 2 | 3 | 4 |
| 115. | 그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조언해준다. | 1 | 2 | 3 | 4 |
| 116. | 그들은 내가 기분 언짢아 할 때, 내 감정을 이해하고 기분을 전환시켜주려고 노력한다. | 1 | 2 | 3 | 4 |

※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 문 항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편이다 | 그런편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17. 내가 원하는 직업(전공)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 1 | 2 | 3 | 4 | 5 | 6 |
| 118.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 1 | 2 | 3 | 4 | 5 | 6 |
| 119. 나는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계획을 세운다. | 1 | 2 | 3 | 4 | 5 | 6 |
| 120.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 1 | 2 | 3 | 4 | 5 | 6 |
| 121. 나는 내 또래에 비해서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 1 | 2 | 3 | 4 | 5 | 6 |
| 122. 직업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일뿐이다. | 1 | 2 | 3 | 4 | 5 | 6 |
| 123. 직업 자체가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은 아니다. | 1 | 2 | 3 | 4 | 5 | 6 |
| 124. 돈을 많이 벌수만 있다면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다. | 1 | 2 | 3 | 4 | 5 | 6 |
| 125. 힘든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 1 | 2 | 3 | 4 | 5 | 6 |

| | | | | | | | |
|------|--|---|---|---|---|---|---|
| 126. | 선택할 것이다. 어떤 직업을 가지는가가 미래의 나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1 | 2 | 3 | 4 | 5 | 6 |
| 127. | 내가 잘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 1 | 2 | 3 | 4 | 5 | 6 |
| 128. |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 1 | 2 | 3 | 4 | 5 | 6 |
| 129. | 내가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 1 | 2 | 3 | 4 | 5 | 6 |
| 130. | 나의 성격에서 나쁜 점이 무엇인지 안다. | 1 | 2 | 3 | 4 | 5 | 6 |
| 131. | 나의 성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안다. | 1 | 2 | 3 | 4 | 5 | 6 |
| 132. | 내가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 1 | 2 | 3 | 4 | 5 | 6 |
| 133. | 내가 관심 있는 진로나 전공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6 |
| 134. |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이메일, 전화 등)해 본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6 |
| 135. |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 | 1 | 2 | 3 | 4 | 5 | 6 |
| 136. |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6 |
| 137. | 내가 알고 있는 진로지식이 정확한 지 알아본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6 |
| 138. | 나의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 1 | 2 | 3 | 4 | 5 | 6 |
| 139. | 부모님이 반대하시더라도 내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 1 | 2 | 3 | 4 | 5 | 6 |
| 140. | 나의 진로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 1 | 2 | 3 | 4 | 5 | 6 |
| 141. | 진로선택은 어른들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다. | 1 | 2 | 3 | 4 | 5 | 6 |
| 142. | 진로 선택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 | 1 | 2 | 3 | 4 | 5 | 6 |
| 143. | 나는 어른들의 결정보다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택할 것이다. | 1 | 2 | 3 | 4 | 5 | 6 |

※ 다음은 여러 가지 행동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 가면서 만약 현재나 지난 6개월 내에 자신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시를 하세요.

| 문항내용 | 해당 되지 않는다 | 가끔 혹은 좀 그렇다 | 자주 있었다. |
|-----------------------------|-----------|-------------|---------|
| 144.. 나는 부모님의 허락 없이 술을 마신다. | 0 | 1 | 2 |

| | | | |
|--|---|---|---|
| 145. 말다툼을 많이 한다. | 0 | 1 | 2 |
| 146. 즐기는 것이 매우 적다. | 0 | 1 | 2 |
| 147. 잘 운다. | 0 | 1 | 2 |
| 148. 남에게 못되게 군다. | 0 | 1 | 2 |
| 149. 관심을 많이 끌려고 노력한다. | 0 | 1 | 2 |
| 150. 내 물건을 부순다. | 0 | 1 | 2 |
| 151.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순다. | 0 | 1 | 2 |
| 152.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다. | 0 | 1 | 2 |
| 153. 학교에서 말을 안 듣는다. | 0 | 1 | 2 |
| 154.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도 잘못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 0 | 1 | 2 |
| 155. 나는 집이나 학교 또는 다른 장소에서 규율을 어긴다. | 0 | 1 | 2 |
| 156. 특정한 동물이나 상황, 장소(학교는 제외)를 두려워한다. | 0 | 1 | 2 |
| 157. 학교에 가는 것이 겁난다. | 0 | 1 | 2 |
| 158. 나는 내가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렵다. | 0 | 1 | 2 |
| 159. 나는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느낀다. | 0 | 1 | 2 |
| 160.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 0 | 1 | 2 |
| 161. 나는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느낀다. | 0 | 1 | 2 |
| 162. 나는 싸움을 많이 한다. | 0 | 1 | 2 |
| 163.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과 어울려 다닌다. | 0 | 1 | 2 |
| 164. 다른 사람들과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 0 | 1 | 2 |
| 165.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을 속인다. | 0 | 1 | 2 |
| 166. 나는 신경이 날카롭고 긴장되어 있다. | 0 | 1 | 2 |
| 167. 나는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 0 | 1 | 2 |
| 168. 나는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 0 | 1 | 2 |
| 169. 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 0 | 1 | 2 |
| 170. 내 또래보다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과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 0 | 1 | 2 |
| 171.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 0 | 1 | 2 |

| | | | |
|---|---|---|---|
| 172. 가출한다. | 0 | 1 | 2 |
| 173. 고향을 많이 지른다. | 0 | 1 | 2 |
| 174. 나는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놓지 않는다. | 0 | 1 | 2 |
| 175. 나는 남의 이목을 많이 의식하거나 쉽게 무안해한다. | 0 | 1 | 2 |
| 176. 불을 지른다. | 0 | 1 | 2 |
| 177. 나는 지나치게 수줍어하거나 소심하다. | 0 | 1 | 2 |
| 178. 우리집에서 물건이나 돈을 훔친다. | 0 | 1 | 2 |
| 179. 우리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물건이나 돈을 훔친다. | 0 | 1 | 2 |
| 180. 고집이 세다. | 0 | 1 | 2 |
| 181. 내 기분이나 감정은 갑자기 변하곤 한다. | 0 | 1 | 2 |
| 182. 나는 의심이 많다. | 0 | 1 | 2 |
| 183.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쓴다. | 0 | 1 | 2 |
| 184. 자살에 대해 생각한다. | 0 | 1 | 2 |
| 185. 남을 잘 놀린다. | 0 | 1 | 2 |
| 186. 나는 성미가 급하다. | 0 | 1 | 2 |
| 187. 성(Sex)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한다. | 0 | 1 | 2 |
| 188. 남을 해치겠다고 위협한다. | 0 | 1 | 2 |
| 189. 나는 담배를 피운다. | 0 | 1 | 2 |
| 190. 수업을 빼먹거나 학교에 무단결석하기도 한다. | 0 | 1 | 2 |
| 191. 기운이 별로 없다. | 0 | 1 | 2 |
| 192. 나는 불행하거나 슬프고 우울하다. | 0 | 1 | 2 |
| 193. 다른 아이들보다 소란스럽다. | 0 | 1 | 2 |
| 194.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한다.(술이나 담배는 제외) | 0 | 1 | 2 |
| 195. 남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 0 | 1 | 2 |
| 196. 나는 걱정이 많다. | 0 | 1 | 2 |

※ 다음은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부모님과 같이 사는 동안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사건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 문 항 내 용 | 발생 여부 | |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 | | | |
|---|-------|----|---------------------------|--------|-----|-----|
| | 있다 | 없다 | 전혀 | 거의 | 그런 | 매우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편이다 | 그렇다 |
| 197. 부모님과 떨어져서 다른 사람(예, 친척, 이웃 등)의 집에서 생활하였다 | 0 | 1 | 1 | 2 | 3 | 4 |
| 198. 부모님과 떨어져서 다른 사람(예, 친척, 이웃 등)의 집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였다. | 0 | 1 | 1 | 2 | 3 | 4 |
| 199. 친형제와 떨어져서 생활하였다 (친형제가 없는 경우는 V표 하지 마세요) | 0 | 1 | 1 | 2 | 3 | 4 |
| 200.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다 | 0 | 1 | 1 | 2 | 3 | 4 |
| 201.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 | 0 | 1 | 1 | 2 | 3 | 4 |
| 202. 부모님이 이혼(별거)하셨다 | 0 | 1 | 1 | 2 | 3 | 4 |
| 203. 부모님 중 한 분이 실직하셨다 | 0 | 1 | 1 | 2 | 3 | 4 |
| 204. 부모님 중 한 분이 사업에 실패하셨다(카드빚이 많았다) | 0 | 1 | 1 | 2 | 3 | 4 |
| 205. 부모님 중 한 분이 교도소에 수감되셨다 | 0 | 1 | 1 | 2 | 3 | 4 |
| 206. 부모님 중 한 분이 알코올중독이셨다 | 0 | 1 | 1 | 2 | 3 | 4 |
| 207. 부모님 중 한 분이 약물중독이셨다. | 0 | 1 | 1 | 2 | 3 | 4 |
| 208. 부모님 중 한 분이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요양원, 기도원 등)에 오랫동안 계셨다 | 0 | 1 | 1 | 2 | 3 | 4 |
| 209. 부모님 중 한 분이 가출하고 집에 안 계셨다 | 0 | 1 | 1 | 2 | 3 | 4 |
| 210. 아버지는 어머니를 심하게 때리셨다. | 0 | 1 | 1 | 2 | 3 | 4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5. 지립지원영역별 지원 현황

| 영역 | 대상 | 양육시설 | 가정위탁 | 그룹홈 | 중장기청소년쉼터 | 학업중단 |
|------------------|----|---|----------------------------------|-------------------------------|----------------------|-------------------|
| 주거 | | 자립준비프로그램 두드림존 프로그램 숙식제공 전세자금 지원 자립지원시설 입소제공 대학입학시, 기숙사 제공 임대주택 지원 | 두드림존 프로그램 숙식제공 | 두드림존 프로그램 숙식제공 | 두드림존 프로그램 숙식제공 | 두드림존 프로그램 |
| 일상생활기술 및 건강관리 | | 자립준비프로그램 두드림존 프로그램 의료보호 | 두드림존 프로그램 의료보호 | 두드림존 프로그램 | 두드림존 프로그램 | 두드림존 프로그램 |
| 심리 / 정서 | | 자립준비프로그램 두드림존 프로그램 | 두드림존 프로그램 | 두드림존 프로그램 | 두드림존 프로그램 | 두드림존 프로그램 |
| 사회성발달 | | 자립준비프로그램 두드림존 프로그램 | 두드림존 프로그램 | 두드림존 프로그램 | 두드림존 프로그램 | 두드림존 프로그램 |
| 학업 | | 자립준비프로그램 두드림존 프로그램 학업지속 제공 대학입학금 제공 | 두드림존 프로그램 학업지속 제공 대학입학금 제공 | 두드림존 프로그램 학업지속 제공 | 두드림존 프로그램 학업지속 제공 | 두드림존 프로그램 |
| 진료(취업) | | 자립준비프로그램 두드림존 프로그램 직업훈련 | 두드림존 프로그램 직업훈련 | 두드림존 프로그램 직업훈련 | 두드림존 프로그램 직업훈련 | 두드림존 프로그램 직업훈련 |
| 경제 기술 | | 자립준비프로그램 두드림존 프로그램 CDA 자립정착금 | 두드림존 프로그램 CDA 사회적응자립지원비 | 두드림존 프로그램 CDA 사회적응자립지원비 | 두드림존 프로그램 | 두드림존 프로그램 |
| 자원 활용 | | 자립준비프로그램 두드림존 프로그램 | 두드림존 프로그램 | 두드림존 프로그램 | 두드림존 프로그램 | 두드림존 프로그램 |

Development Independent Living Supporting Models for Disadvantaged Youth

Abstract

Growing concern about establishing adolescent's policies from long-term perspectives leads to focus on independent living of youth. In particular,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disadvantaged youth are less prepared than normal adolescents and in dangerous conditions due to their environmental and psychological vulnerability. Thus, this study aimed to develop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odels for supporting self-reliance living of disadvantaged youth. In this study, disadvantaged youth refers to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 group home care and foster car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nd out-of-school youth.

This research was performed by following procedures. First, to clarify the components of models, current youth independent living policies and programs in Korea, U.S.A., U.K., Germany and Japan were analyzed. Also, important service domains and related factors of self-sufficient living were organized with the literature review.

Then, the survey was conducted to examine readiness for independence of disadvantaged youth and to compare the condition among different disadvantaged youth groups. To achieve this purpose, 631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and 580 disadvantaged youth were participated in the survey. Life Skills Assessment, Career Maturity Scale, Career Barrier Inventory, Self-Esteem Scale, Stigmatization Scale Shorted Version, Youth Self Report,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Scale of Negative Life Events were conducted to measure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The result of the survey revealed that the normal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youth in residential care group were more prepared and stable than other youth groups in various areas such as life skills, career development,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condition. The result especially indicated that the runaway youth group and the out-of-school youth group were under the greater dangerous psychological condition with the lower life skills and higher anxiety and depression.

In addition, to gather information about necessary independent living policies and social services, Delphi research was conducted. Seventy two experts from residential care, group home, foster care, shelter, local counseling center and alternative school reported their ideas about necessary policy and service to support independent living of the disadvantaged youth. The result showed important suggestions; 1) to strengthen the adolescents' policy related to independent living, 2) to develop the database system including self-reliance information, 3) to enhance follow-up service, 4) to develop expertise care givers, 5) to improve the independent living financial support system, 6) to supply more residential space, 7) to afford legal and medical support, 8) to deal with the problem with biological parents, 9) to establish systematic self-reliance preparation programs, 10) to provide intensive psychological intervention, 11) to enhance comprehensive system for career development, 12) to support improvement of academic ability, 13) to shore up social skills development, 14) to educate money management skills.

Finally, the important ideas from literature review, the survey and Delphi research were organized into independent living supporting models. As a result, independent living supporting models consisted of nine service domains; 1) Housing, 2) Life Skills and Health, 3) Psychological well-being, 4) Social Development, 5) Academic Ability, 6) Career Development, 7) Money Management, 8) Resource Utilization, 9) Cooperation with Biological Parents. These service domains were applicable to all disadvantaged youth

groups. However, the service delivery process was varied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disadvantaged youth groups. In this study, supporting model 1 for youth in residential care, group home, foster family were compose of five steps; 1) Preparation stage, 2) Advanced stage, 3) Transition stage, 4) Pre-Independent Living stage, 5) Independent Living Stage. Model 2 for the runaway youth were developed as four stages model and Model 3 for the out-of-school youth were adjusted to three stages model based on their different condit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result suggests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pproach dealing with independent living of disadvantaged youth. Second, the empirical results from the youth survey and Delphi research will contribute to provide objective standard to establish adolescents' policy. Lastly, this research proposes that different procedures will be necessary for different youth groups based on their situation. In order to verify and apply this study, follow-up research should be performed and huge efforts to realize more practical models are inevitable.